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6. 12.



- ▶ 본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표준지침·고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은 행정자치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Contents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3
【제2조】 정의	7
【제3조】 개인정보보호 원칙	27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30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34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5

제2장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41
【제8조】 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46
【제8조의2】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49
【제9조】 기본계획	51
【제10조】 시행계획	53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54
【제12조】 개인정보보호지침	57
【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60
【제14조】 국제협력	64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69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86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90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100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의 이용·제공 제한	114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116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120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127

목 차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137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44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148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152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79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190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195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9조] 안전조치의무	201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218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225
[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232
[제32조의2] 개인정보보호 인증	245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262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289
[제34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	297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303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311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316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등	320
[제39조] 손해배상책임	327
[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334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40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341
[제41조, 제42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346
[제43조~제48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효력 등	348

【제49조】 집단분쟁조정	353
【제50조】 조정절차 등	358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51조~제53조】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 관할	363
【제54조, 제55조】 소송허가신청 및 허가요건 등	367
【제56조】 확정판결의 효력	370
【제57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371

제8장 보칙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377
【제59조】 금지행위	384
【제60조】 비밀유지 등	387
【제6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390
【제62조】 침해사실의 신고 등	392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394
【제64조~제66조】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권고 등	399
【제67조】 연차보고	405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406
【제69조】 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408

제9장 별칙

【제70조~제73조】 별칙	411
【제74조】 양벌규정	415
【제74조의2】 몰수·추징 등	417
【제75조】 과태료	418
【제7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425

제1장 총 칙

-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개인정보보호 원칙
 -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조 | 목 적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지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시	<p>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p> <p>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p>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 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1. 법 제정 배경 및 연혁

가 법 제정 배경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나 법의 연혁



2011.3.29., 법의 제정(법률 제10465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포섭하는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17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안(민노당, 04.11), 이은영 의원안(우리당, 05.7), 이해훈 의원안(한나라당, 05.12) 등 3개 '개인정보 보호법(안)'이 의원 발의되었으나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 이해훈 의원안(08.8.8), 변재일 의원안(08.10.27) 등 2개 개인정보 보호법(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08년 11월 28일 개인정보 보호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09년 2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개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하여 상정하였고 이후 공청회, 법안심사소위 등을 거쳐 '11년 3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같은 해 9월 30일 시행되었다.



2014.3.24., 일부개정(법률 제12504호)

제1조(목적)를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다.

제2조 제2호 "처리"에 대한 정의에서 "연계, 연동"을 추가하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였다.



2013.8.6., 일부개정(법률 제11990호)

대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악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대기업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를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 또는 책임 있는 임원을 징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기업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24조 제2항과 제4항을 삭제하는 대신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를 신설하였다.



2015.7.24. 일부개정(법률 제13423호)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 인증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였다.



2016.3.29. 일부개정(법률 제14107호)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범령의 범위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하고, 해당 법률 등의 제·개정 현황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통제하도록 하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관련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였다.

2. 법의 목적

이 법의 입법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 규정으로 하여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통제·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참고 2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조 | 정의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사람·장소·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규율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절한 수준에서 보호대상과 규율범위를 정하고자 하였다.

제1호 | 개인정보

법률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개인정보(제2조제1호)

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나 ‘개인에 관한’ 정보이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 연락처(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납세액 등은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사진 등 그 자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별 상황 또는 맥락에 따라 법인 등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로 취급 될 수 있다.

사람이 아닌 사물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사물 등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나타내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특정 건물이나 아파트의 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건물이나 아파트의 주소가 특정 소유자를 알아보는데 이용된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특정 1인만에 관한 정보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직·간접적으로 2인 이상에 관한 정보는 각자의 정보에 해당한다. SNS에 단체 사진을 올린다면 사진의 영상정보는 사진에 있는 인물 모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의사가 특정 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해 진료 기록을 작성하면서 아동의 부모 행태 등을 포함하였다면 그 진료기록은 아동과 부모 모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다만,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통계적으로 변환된 ‘○○기업 평균 연봉’, ‘○○대학 졸업생 취업률’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개인정보 해당성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 전화번호 뒤 4자리’를 개인정보라고 본 판례가 있으나, 이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 식별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로 본 것이다. 만약 다른 결합 가능 정보가 일체 없이 오로지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만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

대전지법 논산지원(2013고단17 판결)은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대하여,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욱 그려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 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정보’의 내용·형태 등은 제한이 없다 —

정보의 내용·형태 등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즉, 디지털 형태나 수기 형태, 자동 처리나 수동 처리 등 그 형태 또는 처리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주체와 관련되어 있으면 키, 나이, 몸무게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나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등 ‘주관적 평가’ 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반드시 ‘사실’이거나 ‘증명된 것’이 아닌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라도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이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여야 한다 —

‘알아볼 수 있는’의 의미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현재 처리하는 자 외에도 제공 등에 따라 향후 처리가 예정된 자도 포함된다. 여기서 ‘처리’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한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도 정보주체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지만, 생년월일의 경우에는 같은 날 태어난 사람이 여러 사람일 수 있으므로 다른 정보 없이 생년월일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

‘쉽게 결합하여’의 의미는 결합 대상이 될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한다.

‘입수 가능성’은 두 종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결합에 필요한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입수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합 가능성’은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비용이나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수반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현재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결합하는데 비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이나 노력이 수반된다면 이는 결합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유·공개될 가능성이 희박한 정보는 합법적 입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라면 ‘쉽게 결합’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 1 EU 개인정보 보호법(GDPR)

‘개인정보’를 ‘식별되었거나 식별가능한 자연인 즉 정보주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article4(1) ‘personal data’ means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data).

GDPR 제안이유서(recital) 23(a)는 ‘식별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개인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처리하는 시점의 가능한 기술 수준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과 같은 모든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 2 폴란드 개인정보 보호법

폴란드 개인정보 보호법은 ‘식별을 위해서 불합리한 정도의 시간, 비용 및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다.

판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성 여부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03.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2. 관련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식별정보의 개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의 개념은 법률상 표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으나, 법률 해석상 그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 두 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한편, 신용정보법 상의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개념과 다르지 않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일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신용정보는 개인신용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리적이다. 또한, 개인식별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6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용정보법	<p>제2조제1호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정보 <p>제2조제2호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p> <p>제34조제1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p> <p>「신용정보법 시행령」제29조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다음 각 호의 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제2호 | 처리

법률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표준지침	1.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1. 처리(제2조제2호)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집, 생성에서부터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다양한 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처리는 정의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가 포함되는데, 이에는 개인정보의 전송, 전달, 이전, 열람, 조회, 수정, 보완, 삭제, 공유, 보전, 파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 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우편배달사업자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 또는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게 되는데 이 때 우편배달사업자 등의 전달 또는 전송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로 보지 않는다.

2.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법」은 정의 조항이 아닌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용정보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신용정보의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출력 외에 신용정보의 배달·우송·전송 등의 방법을 통한 제공도 ‘처리’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5조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하 생략)
신용정보법	제2조제13호 “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 또는 출력하는 행위 나. 신용정보를 배달·우송 또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비슷한 행위

제3호 | 정보주체

법률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정보주체(제2조제3호)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 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주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정보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셋째,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이어야 한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인 한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주체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될 수 있고, 소비자, 근로자, 학생, 교사, 군인, 공무원, 환자, 피의자, 죄수, 행정조치 대상자 등 누구든지 공평하게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은 정보주체가 될 수 있다.

2. 관련 현행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해당 정보에 의해서 식별되는 자로서 해당 정보의 주체를 ‘정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보호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용자)로 규정하고 있어 서비스의 이용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4호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용정보법	제2조제3호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4호 | 개인정보파일

법률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이름이나 고유식별정보, ID 등을 색인(index)이나 검색 값으로 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한 집합물을 말한다.

개인정보파일은 일반적으로 전자적 형태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 체계적인 검색·열람을 위한 색인이 되어 있는 수기(手記) 문서 자료 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고객의 성명, ID 등으로 검색·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병원에서 환자에 대해 작성된 진료기록부 파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각종 행정처분 내역 파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의 단순한 집합물에 불과하고 체계적으로 배열·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제5호 | 개인정보처리자

법률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표준지침

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영리목적의 사업자,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기관·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제2조제5호)

이 법의 수범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이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와 구분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기관이나 사업자·단체 등을 의미하지만,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가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순수한 개인적인 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친분관계를 위하여 휴대폰에 연락처 정보, 이메일 주소록 등을 저장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란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 유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볼 수 있다.

한편, 업무란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야 하므로 지인들에게 모임을 안내하기 위해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나 결혼을 알리기 위해 청첩장을 돌리는 행위 등은 업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참고 판례상 ‘업무’의 개념

-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등 참조).
- 업무상 횡령죄에서 ‘업무’란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도 모든 개인정보가 아니라 특정한 파일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거나, 구성하도록 예정되어 있거나, 그런 의도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한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회성 메모나 문서작성 행위까지 개인정보 처리로 본다면 법이 개인의 사소한 행위에까지 규제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하여 규제의 합목적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다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 편집, 이용, 제공, 전송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예컨대 수탁자, 대리인, 이행보조자 등을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라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이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이므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였다. 적용대상을 특정 목적이나 업종으로 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라는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 영리·비영리 법인, 영리·비영리 단체,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기준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과는 달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포함되며,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기업은 물론 동창회·동호회와 같은 비영리단체도 포함된다. 개인에는 1인 사업자, 개인활동가 등 본인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은 ‘본인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공공기관, 영리·비영리 법인, 영리·비영리 단체,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 제28조제1항은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라 정의하고 있다.

2.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법」은 법 수법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 또는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영리·비영리를 구분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와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

「신용정보법」은 법 수법자로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므로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와는 차이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신용정보법	제2조제7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질의응답

Q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처리(저장, 정정, 복구 등)하는 자는 개인정보처리자(해외소재 회사 포함)인지?

A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된다.

제6호 | 공공기관

법률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현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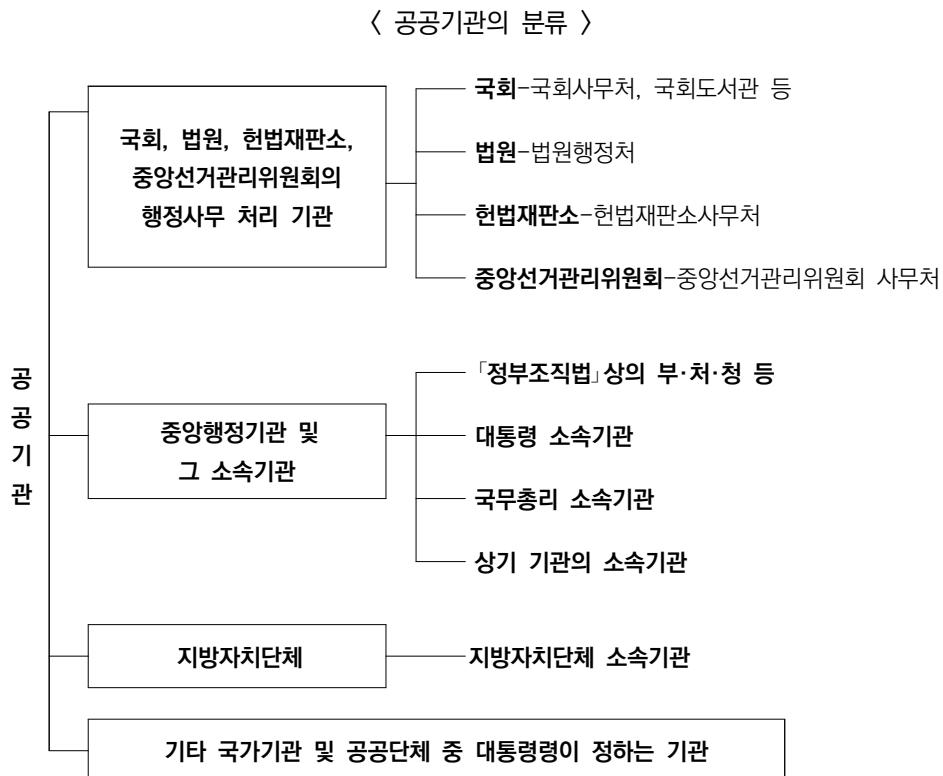
시행령	<p>제2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표준지침	<p>3.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p>

1. 공공기관(제2조제6호)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입법례를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적용하는 단일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달리 정하는 바가 있다.

〈 공공기관에 대하여 달리 정한 규정 〉

의무가 강화된 조항	의무가 완화된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의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 공개의무 (제18조제4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시 공청회·설명회 등 의견수렴 의무(제25조제3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위탁 절차·요건 강화(제25조제8항) ■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제32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의무(제33조) ■ 개인정보열람 요구권 행사 편의를 위한 별도의 단일창구 마련(제35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유 확대 (제15조제1항제3호)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의 확대 (제18조제2항단서) ■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공개 의무 완화 (제30조제1항) ■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제한·거절 사유 확대 (제35조제4항제3호) ■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권 거절 사유 확대 (제37조제2항제3호) ■ 통계법에 따라 처리된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 적용의 일부 제외(제58조제1항제1호)



가 현법기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라 함은 각각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등을 말한다. 기존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정의에서 헌법기관이 제외되어 있었으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빈도가 적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에 헌법기관도 추가하였다.

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중앙행정기관에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동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이 포함된다.

중앙행정기관에는 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도 포함된다. 대통령 소속기관으로는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고,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는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도 공공기관에 해당되므로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의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체신청, 지방국세청 등)과 제4조의 부속기관(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 등)도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는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그 밖의 국가 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포함된다.

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란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범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이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법인(公法人)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는 우선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가 있으며,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조합)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기관,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의 직속기관이 있고(「지방자치법」 제113조), 그 밖에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14조),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15조), 합의제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16조),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에 포함된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 읍, 면, 동이 있다(「지방자치법」 제117조).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위원회(제4조), 교육감(제18조), 하급교육행정기관(제34조) 등의 별도기관이 있다.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하며, 공기업(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동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www.alio.go.kr’ 참고).

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유료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제49조)와 지방공단(제76조)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들도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특수법인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국가적 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민법·상법 이외의 특별법이나 특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당해 법인의 설치 및 규율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뿐만 아니라 민법·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

당해 법인의 설치 및 규율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공익적인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상의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사실상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배력 하에 있어야 한다.

이처럼 특별법에 근거해서 설립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인이 특수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설립 목적,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특수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특별법에 의한 설치, 국가·자자체등으로부터의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자체 사무의 수탁처리, 사실상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배, 공공 또는 공익 기능 수행 등의 본질적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사 각급 학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들도 공공기관으로 취급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로는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등이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로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대학원대학, 각종학교 등이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대학교(「국방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경찰대학(「경찰대학 설치법」), 울산과학기술대학교(「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농수산대학(「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기능대학법, 국가정보대학원(「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소속으로 되어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인지, 아니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인지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생 선발, 교무행정, 졸업생 사정 및 학사업무 등이 대학의 통제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은 비록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이지만 독립된 개인정보처리자이기 보다는 해당 대학이 개인정보 처리자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7호 영상정보 처리기기

법률	<p>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p>
시행령	<p>제3조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표준지침	<p>8.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영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p> <p>9.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p> <p>10.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p> <p>11.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p>

1. 영상정보처리기기(제2조제7호)

영상을 촬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기의 용도와 종류는 매우 다양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규제의 실익이 있는 범위를 한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법 제2조제7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예컨대 건물 실내, 도로, 공원 등 일정한 공간에 기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을 포함하므로, 그 촬영 범위도 일정한 공간이나 구역을 촬영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또한 이 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속적 설치의 의미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어느 정도 고정적·항구적(恒久的)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촬영 공간과 촬영 대상범위를 바꾸어 가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개인용 영상기를 일정한 공간에 설치해 두고 영상을 촬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정적·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이 아닌 이상은 역시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아니다.

다만, ‘일정한 공간’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동성이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촬영기기의 설치 위치와 촬영 범위가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다면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버스, 택시 등 영업용 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차량 내부라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일정한 승객 탑승공간을 촬영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된다.

반면, 이른바 ‘차량 블랙박스’와 같이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차량 주행에 따라 외부를 촬영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촬영 대상·범위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아닌 장치를 통하여 개인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 법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는 적용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 이 법의 다른 개인정보보호 조항이나 타 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참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

사회 통념상 ‘영상을 촬영’한다는 개념에는 음성·음향 녹음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그 촬영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전부 촬영하므로, 만약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음성·음향까지 녹음된다면 예기치 않게 타인간의 대화 등이 녹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은 순수하게 영상만을 촬영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음성·음향을 녹음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여기에서 ‘사물’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천문대에 설치된 망원경은 비록 일정한 공간에 지속 설치되어 우주 공간(사물)을 촬영하고는 있으나 그 촬영대상이 사람과 일정한 생활 관계에 놓여져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촬영된 정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

사람·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된 정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에 포함된다. 사실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단순히 영상만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촬영 화면을 전송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열람·활용하는 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같이 촬영 화면을 폐쇄망을 통해 전송하여 모니터링하는 경우, 네트워크카메라 등과 같이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영상을 전송하고 열람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

사람·사물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매우 다양하다. 이 같은 기기들의 사용을 모두 엄격하게 규제할 경우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만을 인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류 〉

종 류	내 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해 전송 또는 저장매체에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신·조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3조 | 개인정보보호 원칙

법률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 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표준지침

제4조(개인정보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 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익명에 의하여 업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를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3조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칙들을 반영하고 있다. 제3조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은 1980년 제정된 「OECD 프라이버시 8원칙」과 EU 회원국의 입법 기준이 되는 「EU 개인정보보호지침」(1995)을 참고하였고, 우리나라가 제정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APEC 프라이버시 원칙」(2004)도 고려하였다. 그 밖에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영국, 스웨덴, 캐나다,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도 참고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원칙은 선언적 규범이어서 그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행동의 지침을 제시해 주고, 정책담당자에게는 정책 수립 및 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해 주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해 줌과 동시에 입법의 공백을 막아 준다.

〈 OECD 프라이버시 8원칙과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비교 〉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개인정보보호 원칙
■ 수집제한의 원칙(1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에 필요한 최소정보의 수집(제1항) ■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6항) ■ 익명처리의 원칙(제7항)
■ 정보 정확성의 원칙(2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제3항)
■ 목적 명확화의 원칙(3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목적의 명확화(제1항)
■ 이용제한의 원칙(4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금지(제2항)
■ 안전성 확보의 원칙(5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제4항)
■ 처리방침 공개의 원칙(6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공개(제5항)
■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7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제5항)
■ 책임의 원칙(8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신뢰확보 노력(제8항)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집목적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특정된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처리하여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세탁서비스 제공자는 세탁완료를 알리거나 세탁물을 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으나,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수집·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확성, 안전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입력시

입력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구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오류정보를 발견한 경우 정정이나 삭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를 변경·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밖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막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데이터 기록에서 개인식별자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익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 정보주체의 권리

법률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 받을 권리

1. 연혁

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는 각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통해서 확립된 것이다.

「EU 개인정보보호지침」상 정보주체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 부정확한 정보의 수정·삭제·폐쇄요구권, 개인정보의 처리를 거부할 권리, 개인정보가 직접 판매에 이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자동처리정보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도 동의철회권, 열람요구권, 정정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舊)「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도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과 정정 및 삭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여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2005.05.26, 99헌마513, 판례집 제17권 1집, 668)

참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판결 :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공보 105, 666, 672)

또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군보안사령부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한 사례에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이렇듯,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독자적 기본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권원인 프라이버시권이나 행복추구권은 모두 인격밸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기본권이고, 사법의 영역에서는 인격권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제기된 개인정보의 침해에 관한 소송을 보더라도, 원고는 대부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가 인격권의 일종임을 전제로 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고, 법원도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경제·사회 활동 목적으로 유통되거나 이용되는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순수하게 인격적 이익만 보호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영리목적에 활용되지 않도록 제어한다는 의미에서 재산적 이익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특수한 인격권이라고 할 수 있다.

2. 권리의 내용

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처리 목적과 범위 등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범위 등의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공개 등의 의무를 진다.

나 동의 여부, 동의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는 것이다.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여부 및 동의범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면 정보주체의 권리가 형식화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동의를 금지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의 처리유무를 확인하고 열람을 요구할 권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용·제공·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열람 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처리자의 잘못된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처리정지·정정·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를 계속해서 보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파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마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은 입증책임의 전환, 분쟁조정제도 및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제도,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3. 권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권리는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는 국방, 경찰, 수사, 재판, 조세 등을 위한 공권력의 활동과 관련하거나,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되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공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조사, 저장, 제공, 공개 등은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에는 반드시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법률이 존재할지라도 그 법률은 반드시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명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 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입법으로는 「형사소송법」, 「국가정보원법」, 「통계법」, 「전자정부법」, 「공직자윤리법」, 「의료법」, 「도로교통법」, 「국민건강보험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제5조 | 국가 등의 책무

법률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간존엄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지원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

4. 이 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법령·조례 제·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 소관 부처 지침·고시 등을 제·개정할 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이라 하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준지침	제5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성격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이 법 이외에 다른 개별법이 있는 경우 이 법과 그 개별법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는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조문별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개별법은 두고 있는 사례가 많지 않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혼란을 주고 중복규제의 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론적으로는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대해서 이 법과 다른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한해서만 소관 법률에 예외규정이나 특칙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법률의 적용기준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법을 적용받는 자라고 해서 이 법의 적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해당 개별법에 이 법의 내용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개별법에서 이 법의 내용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개별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법의 목적, 취지,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의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 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 법과 개별법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불합리한 상황 또는 왜곡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만 개별법 규정이 적용된다.

일례로,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물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특정 인물 관련 정보주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는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관계를 규율할 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해당 사이트에 수록된 개인정보의 주체와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경제·사회의 공통적이고 평균적인 요구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보다 보호수준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이 법의 규정보다 더 보호수준을 완화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개별법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법률의 규정이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조례 등에 이 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행령 등은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그 시행령 등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일 경우에는 그 시행령 등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사례 상법 우선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회사가 근로자를 일괄하여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보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직원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법」은 타인의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제731조제1항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의 대표자가 그 단체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와 1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체보험의 경우 「상법」 제735조의3제1항에 따라 “단체의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상법」 제739조에 따라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체결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규약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서면동의가 없어도 된다.

따라서 단체보험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규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인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이 적용된다.

「상법」 제735조의3에서 말하는 규약의 의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단체내부의 협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까지 규정할 것을 요하지 않지만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는 담겨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4.27. 선고2003다60259판결). 예를 들어 취업규칙 등에 생명보험가입에 관한 조항을 두고, 보험금의 지급은 사망퇴직금이나 사망위로금의 지급에 충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가 서명날인 하였다면 피보험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약에 단체보험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퇴직금, 사망위로금 등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법으로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적용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관계,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사업자와 신용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당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른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영향평가,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집단분쟁조정제도, 권리침해행위 단체소송,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출처 고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같은 내용에 관하여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개별법을 적용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집·이용 시의 동의사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이 적용된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의 동의사항은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이다.

한편, 다른 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취지상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하면 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였거나,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 등

-
-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제8조 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 제8조의2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제9조 기본계획
 - 제10조 시행계획
 -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 제12조 개인정보보호지침
 - 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제14조 국제협력

제7조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보호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법률

시행령

제5조(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보호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사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직 및 정원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출석수당 등)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호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보호위원회의 설치배경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의사결정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안전장치이다.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있어서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강조되는 이유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정부기관이나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호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보호위원회의 구성

- 1) 구성 :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 2) 위원장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며,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 3) 상임위원 :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보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또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위원 :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 5) 임기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 6) 위원의 자격 : 각계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전문적인 경험·지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자,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나 보호위원회 사무국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다 보호위원회의 운영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공무원 등의 파견, 조직 및 정원, 출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라 전문위원회

보호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3. 보호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가 회의 소집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또한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위원장,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 의결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회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①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②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③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 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 1의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6.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8. 제64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
 9.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0. 제67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의2(정책·제도·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시행령

1. 보호위원회 기능

가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나라마다 강조하는 기능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각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들은 주로 옴부즈만(ombudsmen), 감사관(auditor), 상담사·자문관(consultant), 중재자(negotiator), 정책조언자(policy adviser), 법집행자(enforcer) 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보호위원회는 직접적으로 법령에 따른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은 많지 않으나, 주요 정책, 제도, 법령 등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지니고 있다.

〈 보호위원회·행정자치부·중앙행정기관 간 기능·역할 비교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기능)	행정자치부 (집행·총괄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정책·제도·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간 의견조정 사항 사항 ■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법령·조례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정지, 침해행위중지 권고에 관한 사항 ■ 징계, 고발,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 연차보고서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 대통령, 위원장,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 ■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시책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 협력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여부 정기 조사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의 제정·권고 ■ 개인정보파일 등록 접수 및 현황 공개 ■ 개인정보보호 인증 제도 운영 ■ 개인정보영향평가 관리·운영 ■ 개인정보유출신고제도 운영 ■ 개인정보열람창구 구축·운영 ■ 법위반행위 조사, 시정권고 및 명령,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조례, 처리실태 등에 관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제도 운영
중앙행정기관 (소관분야 및 개별법에 따른 집행업무)	

-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제출(→보호위)
- 소관분야 시행계획 수립·제출(→보호위)
- 소관분야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보호위)
- 소관분야 법령 등의 개선추진 평가
- 소관분야 자율규제 촉진·지원
- 법 위반행위 조사, 시정권고명령, 과태료 부과(개별법이 있는 경우)
- 법령·조례의 이 법 목적에 부합 노력 등

나 의견청취 및 자료등 제출요구

보호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련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정책·제도 개선권고 및 이행점검권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제8조제1항 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 등에 대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2015년 7월 24일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제8조의 2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법률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침해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법령안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제도의 도입·변경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자체 분석

3.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제도의 도입·변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대책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요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의 적정성

3.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4. 그 밖에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 권고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보호위원회가 이러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i)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ii)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의 적정성, iii)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iv) 그 밖에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요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권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 권고 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침해요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제9조 | 기본계획

법률

제9조(기본계획)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회, 법원, 현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중장기 계획과 시책 등을 반영한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시책을 법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기적 관점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1. 기본계획의 작성주체

2015년 7월 2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닌 보호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법제도 개선, 침해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들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기본계획의 작성절차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중장기 계획과 시책 등을 반영한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므로 해당 일까지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아울러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큰 틀에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 개인정보 침해방지대책,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방안,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방안, 전문인력 양성 및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중기적 관점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 시행계획

법률	<p>제10조(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p>

1. 시행계획의 작성주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매년 소관 분야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한다.

2. 시행계획의 작성절차

가 작성지침의 제정·배포

보호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다음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소관 분야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한을 2월 말일로 한 것은 시행계획이 다음연도 예산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시행계획이 보호위원회에 제출되면 보호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해 4월 30일까지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행계획은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제11조 | 자료제출 요구 등

법률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은 “법 제11조제3항”으로 본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을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현황, 개인정보 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자료제출·의견진술 등의 대상

가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필요한 자료 등의 요구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① 개인정보처리자,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한다. 관계 단체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개인정보 처리 또는 보호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협회나 소비자단체 등을 말한다. 이러한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시행계획 수립·추진에 필요한 자료 등의 요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현황과 개인정보 관련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정책추진·성과평가 등을 위한 조사 실시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① 개인정보처리자,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한다. 이러한 조사를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자료 등의 범위와 방법

보호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요구할 수 있는 자료·진술 등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 법 제63조에 따른

위법행위 조사 등과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의 요구가 행사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진술 등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의 요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의 요청은 i)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ii)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iii)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iv)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v) 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는 시행계획 수립시의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 제11조와 제63조의 구별 ❖

- **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정책 수립이나 제도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실태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현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여부와 관계없이 요구할 수 있는 처리실태 및 관리현황 등에 관한 자료 및 통계 등의 조사를 말한다.
- **법 제63조(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등)** : 위법사실이 발견되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사후적 집행·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조사를 의미한다.
※ 침해신고, 언론보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위법사실을 인지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규제를 위한 조사를 말함

제12조 | 개인정보보호지침

법률

제12조(개인정보보호지침)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표준 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소관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말한다.

1.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성격

개인정보보호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등에게 입법 보충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 모든 산업을 세세하게 규율할 수는 없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환경이나 위험도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방법, 요구되는 보호수준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이 법은 경제·사회의 공통적 요소와 요구들을 중심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처리기준, 보호조치 등은 분야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일반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 법 제12조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감독기구에게 지침, 가이드 등의 제정·배포를 통한 입법 보충권을 부여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 기술과 환경을 모두 법률로 규율할 경우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지침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로 인정받게 된다. 반대로 지침에 어긋난 개인정보처리는 이 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참고 표준지침의 적용대상, 위반시 벌칙,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표준지침의 적용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이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2.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정 및 권장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과 개별법에 의해서 부여된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용·보호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처리 절차와 방법에 따라 무슨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이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이다. 표준지침은 전 분야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지침 또는 공통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3. 소관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지침

가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제정 및 권장

분야별 지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헌법기관이 소관 분야별로 정해서 시행한다.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분야별 지침을 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정한 표준지침에 따르되, 개별법의 규정들도 고려해서 중복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명확하고 분야별 특성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또는 개별 조직법의 업무분장에 의거, 소관 분야가 2개 이상의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가 공동으로 지침을 정할 수도 있다.

표준지침은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한 실천적 행동규범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장려하고 법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자체 위법성을 해석·심사하는 기준이 될지언정 또다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추상적·다의적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한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들은 권력분립의 정신에 따라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분야별 지침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정한 표준지침을 참고해서 정할 수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지침의 내용

개인정보보호지침에는 개인정보처리 기준, 개인정보 침해유형, 개인정보 침해예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파기하는 경우에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사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구체적 조건과 상황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사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 할 보호조치나 이행 조치의 내용이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의 처리규모, 개인정보의 활용빈도,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용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위험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제13조 |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법률	<p>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홍보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3.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p>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법 제5조는 국가 등의 책무로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3조는 제5조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개인정보처리는 어느 한 분야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서 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만으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법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규제조치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할 때, 또한 정보주체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보호에 앞장설 때 개인정보는 보다 안전하게 이용되고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 피해사례, 이용 관행 및 환경 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홍보 및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육성·지원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 스스로의 권리보호 노력도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를 육성·지원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1호, 2016.8.9. 제정, 시행)」을 마련하였다. 동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단체의 지정, 자율규제 협의회 설치, 자율규제단체의 업무,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규제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i)자율규제 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심사, ii) 자율규제 규약에 대한 검토, iii)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계획 및 활동에 대한 검토, iv) 기타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

둘째,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지정취소, 지정추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확정한다. 자율규제단체는 소속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그밖에 개인정보 자율점검 및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i)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 파견, 자율점검 지원, ii)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인식제고 교육 실시, iii) 웹 취약점 점검, 보안 도구의 제공 등의 기술지원, iv)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하여 자율규제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되는 안전마크의 일종이다. 인증마크를 획득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마크는 기업이나 기관의 개인정보보호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인증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법 제32조의2).

4. 자율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 해당 업무처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장 적절한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위험은 무엇인지,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규약이나 행동강령을 정해 지키도록 한 것이다.

자율규약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혼자 또는 협회 차원에서 제정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보호단체 또는 소관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제정할 수도 있다. 일본도 2003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으로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認定個人情報保護團體)를 지정하여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5. 그 밖의 자율규제활동 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앞에서 열거한 사항 이외에 개인정보 침해정보공유, 개인정보누출 점검시스템 개발·보급,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개발 보급 지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6. 유사 입법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단체의 행동강령 제정·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다수의 법에서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규정을 두는 유사 입법례가 있다.

〈 현행법상 자율규제 관련 규정 〉

법 명	조문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 (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행동 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자율규약)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법 명	조문 내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p>제14조(표시·광고의 자율규약) ① 사업자들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규약이나 기준 등(이하 “자율 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p> <p>② 자율규약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들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의2(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① 사업자들의 표시·광고가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 등을 심의(그 명칭에 관계없이 표시·광고가 법령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자 등이 자율심의기구등이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시정한 경우라도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자율심의기구등의 시정만으로는 소비자나 경쟁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청소년보호법」	<p>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①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p>

제14조 | 국제협력

법률

- 제1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는 국가 간 무역 확대 및 인적자원의 교류 증가로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전·제공이 다반사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해외에서 처리되고 있거나 해외로 유출된 내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자국 수준 이상으로 개인정보보호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나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적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는 한-EU간 자유무역 협정(FTA)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 협정(안)에도 반영되어 있다. 향후 개인정보보호는 국제적으로 체결되는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정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해외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유치하여 국제적인 정보 저장·관리의 혜택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국제사회에 잘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①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증진, ②개인정보보호 국제 규범의 제·개정 추진, ③신규이슈의 발굴 및 공동 조사·연구 수행, ④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 표준화의 추진지원, ⑤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공유, ⑥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협력창구 또는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보호관련 국제 기구 및 단체 〉

기구·단체명	성격
국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 회의(ICDPP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국제협의회
국제 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 작업반(IWGDP,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Data Protection in Telecommunication)	국제협의회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정보 안전 및 프라이버시 작업반(WPISP,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국제기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 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	국제기구

기구·단체명	성격
EU 정보보호 감독기구(EDPS,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	국제기구
EU 개인정보보호 작업반(WP29, The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국제협의회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관 포럼(APPA, 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지역협의회(아태)
전자개인정보센터(EPIC,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민간단체
국제프라이버시 네트워크(GPEN, 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	국제기구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법률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표준지침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 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등”이라 함)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함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제14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 제1항제5호 및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표준지침 제6조).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신용평가기관 등

제3자로부터 수집하거나 인터넷, 신문·잡지, 전화번호부, 인명록 등과 같은 공개된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할 수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수집하지 않아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산되거나 생성된 경우도 적지 않다.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예시

- 명함을 받음으로써 부수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 본인 이외 제3자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 인터넷 검색이나 인명부, 전화번호부, 잡지, 신문기사 등 공개된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 정보주체 본인이나 제3자 또는 그 밖의 출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 이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 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너무 어렵게 할 경우 외관상으로는 사생활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생활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 위축과 비용 증가만 초래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반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무의미해 지게 된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이 가장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이 균형·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EU지침을 모델로 하고 있으나 EU지침보다는 전체적으로 요건이 강화되어 있다. 2016년 EU개인정보 보호법(GDPR)도 수집·이용에 관해서는 EU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동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서명날인, 구두, 홈페이지 동의 등) 동의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주체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가입신청서 등의 서면에 직접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방법 또는 자필 서명하거나, 인터넷 웹사이트 화면에서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등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전화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향후 입증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에는 어떤 개인정보를 왜 수집하는지를 정보주체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고, 제22조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는 명시적 동의를 의미한다.

※ 동의의 사례

- 영화관 멤버쉽카드 발급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에 기명捺印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체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미리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②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제2항). 보유 및 이용 기간은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알려야 하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 및 이용 기간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을 알려도 된다. 이 경우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알릴 수 없는 사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주체가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 여부를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명함을 주고받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등”이라 함)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함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표준지침 제6조제3항). 예를 들어 정보주체가 자동차 구매를 위해 자동차판매점을 방문하고 담당직원에게 명함을 준 경우, 그 직원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지만 자동차 구매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명함에 기재된 연락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위의 예시에서 자동차판매점의 직원은 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지 않은 목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장소 등에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해도 된다는 명시적인 동의의사를 표시하거나, 홈페이지의 성격, 게시물 내용에 비추어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다(표준지침 제6조 제4항).

예컨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 정보주체가 판매물품에 대한 설명과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경우, 이는 해당 상품의 거래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이용해도 된다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담당직원의 회사전화번호나 이메일이 기재된 경우, 이는 담당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한 목적을 위해서는 직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수집·이용 할 수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직장인 우대대출, 흥보성 이벤트 안내 등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판례 인터넷 인물정보 서비스와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다.

이때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 정보처리 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어야 한다. 수집·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대상·범위가 막연한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집·이용은 정보주체로부터 보다는 제3자로부터의 수집·이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률에서 수집·이용을 요구하거나 허용하기만 하고 상대방(제3자)에게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제3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대법원 2012다105482 판결, 2016.3.10. 선고). 그러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판례 통신자료의 제공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현행 제83조) 제3항, 제4항은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자료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서면요청만으로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상 신속과 다른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나 법관의 영장 없이도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서라는 서면요청에 의해 통신자료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예시〉

법률명	조문 내용
「정보통신망법」	<p>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p>
「신용정보법」	<p>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보험업법」	<p>제176조(보험요율산출기관) ⑩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제177조에서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p>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⑤ 보험회사등 또는 전문심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법률명	조문 내용
「병역법」	<p>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 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p> <p>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의료법」	<p>제21조(기록 열람 등) 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p> <p>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p> <p>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2)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에 의한 의무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의무도 포함된다.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자들에게 부과된 결합상품 리콜의무(「소비자기본법」), 각종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 또는 연령확인 의무(「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공직선거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선원법」, 「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법령상 의무 준수의 예에 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조작하거나 과장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가해운전자와 직접협상을 요구하면서 가해운전자가 가입한 손해배상보험회사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상법」 제719조에서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삼자에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피해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1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 「공작선거법」 제82조의6 :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실명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 「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법원경비관리대원은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청사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함
- 「선원법」에 따른 신원조사
- 그 밖에 공공기관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자를 확인하는 경우

참고 2 법령에 따라 연령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소년보호법」 제16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
- 「청소년보호법」 제26조 : 인터넷게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0시~오전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됨
- 「청소년보호법」 제29조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 그 연령을 확인해야 하며,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함
- 「민법」상 미성년자 보호제도 : 우리나라 법원은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만을 「사술」로 인정하고 사술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따라서 미성년자와 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신분증 확인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수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참고 3 법령상 보험자의 의무 이행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보상 책임 의무가 있다(「상법」 제719조). 따라서 보험계약상 보상 책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다.

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등에서 소관 업무를 정하고 있고 그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허용된다.

사실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상 의무 준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법령상 의무준수와 소관업무 수행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란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령·직제규칙, 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이외에,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등을 의미한다.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참고 공공기관의 소관업무 예시

- 인사혁신처가 「정부조직법」 제22조의3,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등 관리를 위해 공무원인사 관련파일을 수집·이용하거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보험급여관리 등을 위하여 진료내역 등을 수집·이용하는 경우

라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까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동의획득에 소요되는 비용만 증가시키게 되므로, 계약 체결이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약체결’에는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도 포함된다. 예컨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계약체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관계 등을 미리 조사·확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단, 계약 미체결시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참고 계약체결의 사례

- 보험회사가 계약체결을 위해 청약자의 자동차사고 이력, 다른 유사보험의 가입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거래 체결 전에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평가를 위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 회사가 취업지원자와 근로계약 체결 전에 지원자의 이력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계약이행’은 물건의 배송·전달이나 서비스의 이행과 같은 주된 의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부수의무 즉 경품배달, 포인트(마일리지) 관리, 애프터 서비스의무 등의 이행도 포함된다.

참고 계약이행 사례

-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주소,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경품을 발송하기 위해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쇼핑몰이 주문시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주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다(표준지침 제6조제5항). 일반적으로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함,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대리권 확인을 위한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계약체결 등 범률행위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단순히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수집이 제한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지급, 계약서에 명시된 복지제공 등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판례도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보유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은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해 갖는 자기정보통제권보다 제한적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전지방법원 2007. 6. 15. 자 2007카합527 결정).

그러나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약자의 지위에 처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더욱 중요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직원 개인정보 수집목적, 수집항목, 직원의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 등에 관한 사항, 보유기간, 퇴직 후 직원정보 처리절차 등).

마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

정신미약, 교통사고, 수술(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의료행위 포함) 등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태풍·홍수·화재 등 재난상태에 고립되어 있거나 납치·감금 등 범죄자들의 수중에 구금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의사를 물어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주소불명, 전화불통, 이메일 차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전화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화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멀리 떨어져 있어 동의를 받기 어렵다거나 단순히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해소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사후적으로 정보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표준지침 제7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급박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계속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명백히 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위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익이 되지만 동시에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문제는 제3자에게는 명백히 이익이 되지만 정보주체에게는 손해가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익이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월등한 경우에만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은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상 이익을 앞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이 급박해야 한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급박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고 급박한 이익의 사례

- 조난·홍수 등으로 실종되거나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연락처, 주소,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안에 있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 해당 자녀 또는 부모의 이동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 의식불명이나 중태에 빠진 환자의 수술등 의료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 고객이 전화 사기(보이스피싱)에 걸린 것으로 보여 은행이 임시로 자금이체를 중단시키고 고객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요금 징수 및 정산, 채권추심, 소 제기 및 진행 등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조사·확보하는 경우, 영업비밀 유출 및 도난방지,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사업장내 시설안전을 목적으로 한 CCTV 설치 등 법률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 사례 >

- 사업자가 요금정산·채권추심 등을 위하여 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역, 과금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생성·관리하는 경우
⇒ 요금정산을 위해서는 고객의 물품 주문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 등과 같이 요금을 산출하고 과금하기 위한 자료를 생성하게 되며, 계약이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수집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생성한 정보도 개인정보의 '수집' 행위에 해당됨
- 사업자가 고객과의 소송이나 분쟁에 대비하여 요금 정산자료, 고객의 민원제기 내용 및 대응자료 등을 수집·관리하는 경우
⇒ 이미 해결된 민원인데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기존의 민원제기 내역 및 대처기록 등의

자료를 기록·보관할 때, 요금정산 및 과금에 대한 불만 발생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생성·관리할 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한다면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됨

- 도난방지, 시설안전 등을 위해서 회사 출입구(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사무실과 달리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등은 근로자의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낮은 반면, 도난방지, 시설안전 등의 효과가 크므로 필요성도 있고 정당성도 있다고 할 수 있음

2)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이익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월등해야 한다. EU에서는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정보주체의 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이 허용된다.

참고 명백성 판단 예시

회사가 업무효율성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직원의 업무처리 내역 및 인터넷 접속내역 등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정보주체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경우는 노사 합의에 따라 처리하거나 직원에 대한 고지 또는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상당한 관련성과 합리적 범위 내의 수집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고, 그것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성이 낮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 친목단체의 운영을 위한 경우

친목단체는 친목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제58조제3항). 친목단체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전제로 단체를 이루는 구성원 상호간 친교하면서 화합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말한다.

친목단체는 내부구성원간의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외부적 단체의 사표시 내지 외부적 영향력 행사를 전제로 하는 정당, 종교단체 및 언론 등과는 구별된다. 친목단체의 운영을 위한 사항이란 ①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②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③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 제22조에 따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을 우선 적용하며,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나, 신용정보에 대한 수집·조사의 원칙(제15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등(제23조)의 예외가 따른다.

정보통신망법	<p>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법	<p>제15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2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활용범위, 활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삭제

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한국전력공사법」

6. 「주민등록법」

③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의 이용자는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열람료 또는 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

⑦ 신용정보회사들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상법」 제64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2. 금융거래계약의 만기 도래, 실효(失效),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처리절차,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른다.

3. 위반에 따른 벌칙

위반행위	벌칙
수집·이용기준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15조제1항 위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1항제1호)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제15조제2항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1호)

4. 질의 응답

Q | 이전에 경품 이벤트에 응모했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해 신상품 출시를 안내하는 홍보 이메일을 보내도 문제가 없는지?

A | 경품 이벤트를 통해 이벤트 활용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상품광고’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상품출시 안내 이메일 발송 등의 광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홍보 목적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Q | 정보주체로부터 제공받은 명함이나, 전화번호부,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A |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화번호부,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Q |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는 장래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주체가 동의할 시점에서 확정한 동의를 받아야 할 항목을 모두 열거하고 그 외 이에 준하거나 유사한 항목을 포섭하는 의미로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A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의 용어를 써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정보주체 동의시 수집할 구체적인 개인정보 항목을 나열하면서 ‘등’을 써서는 안 되며, 추후 업무상 새로운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Q

직원 채용시 이력서 등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직원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과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임금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는 바, 이는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타 정보의 경우에도 구직예정자의 개인정보 또한 그 수집, 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 의하여 구직 예정자의 동의가 면제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직원에 관한 정보는 계약체결 목적뿐만 아니라 복지, 노조관리, 위탁 등의 목적으로 활용 여지가 높고 민감정보를 수집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채용시에는 입사서류에 채용을 포함한 회사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대상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위해 은행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세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은행은 임대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A

은행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 i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iii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어려운 경우로써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iv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에 필요한 경우(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은행은 전세대출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세계약서를 통해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은행)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된다. 즉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의 허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은행의 정당한 이익(대출금 회수 등)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없으며, 임대인의 개인정보 역시 단순히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처리되므로 임대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적다.

따라서 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동의없이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제한된다.

제16조 |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법률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소수집 원칙

제15조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수집·저장하고 있으면 해킹 등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하여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보주체의 자발인 동의를 받으면 필요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정보도 수집·이용이 가능하나 필요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정보를 필요 최소한의 정보라고 하여 제공을 의무화하거나 필수적 동의 사항으로 하여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 최소정보의 예

- 쇼핑업체가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수집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주택 및 휴대전화번호) 등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직업, 생년월일 등 배송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 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 취업 희망자의 경력, 전공,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는 업무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 결혼유무, 본적(원적) 등에 관한 정보는 최소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2. 입증책임의 부담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패소하게 된다.

3. 동의 거부권의 고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알린다는 것은 어떤 정보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이고 필요 최소한의 정보가 아닌지를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구분해서 고지해야 하고, 필요 최소한의 정보가 아닌 정보에 대해서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 방해를 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홍보,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후자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재화 등 제공 거부 금지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 제공에는 회원 가입도 포함된다. 유료의 경우는 물론이고 무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강요된 동의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서 선택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5.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필수정보 이외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제16조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2호)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은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원칙 및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용정보법」은 서비스 제공 거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수집·조사 및 처리를 제한한다.

정보통신망법	<p>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p>
신용정보법	<p>제15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p> <p>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p>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p>

7. 질의 응답

Q |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의 범위란?

A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에 한한다.

예컨대,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계약의 성립과 상품 배송 및 대금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및 통장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Q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수집이 허용될 수 있는지?

A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는 선택정보로서 필수정보와 구분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수집이 가능하다. 다만, 필요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위반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제17조 | 개인정보의 제공

법률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준지침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의미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DB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허용하여 열람·복사가 가능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등도 ‘제공’에 포함된다.

한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따라야 한다.

2. 이용, 처리업무 위탁 및 영업양도와의 차이

가 이용과의 차이

개인정보의 이용이란 개인정보처리자(기관·단체·법인 등) 내에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 이전 없이 스스로의 목적으로 쓰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개인 정보 처리업무 수탁자 포함) 및 정보주체(정보주체의 대리인 포함)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같은 개인정보처리자 내의 다른 부서가 당초 수집 목적과 달리 이용하는 경우라면 제공이 아니라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

나 처리업무 위탁과의 차이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모두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공동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업무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제3자(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제공’은 제공받는 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가 제공된 이후에는 제3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못한다.

다 영업양도 등과의 차이

영업의 양도·합병(제27조)는 비록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제공’과 유사하다. 그러나 영업의 양도·합병은 그 개인정보를 이용한 업무의 형태는 변하지 않고 단지 개인정보의 관리주체만 변한다는 점에서 ‘제공’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영업의 양도·합병에 대해서는 이 법 제27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공과 관련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제공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미리 ①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②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동의 거부권이 존재하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알려야 할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변경 사실을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란 제공받는자의 이름 또는 상호를 의미하므로,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과 같이 정보주체가 제공받는자를 알기 어렵도록 포괄적으로 알려서는 아니 되며, 제공받는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각의 이름 또는 상호를 알리고 제공되는 목적, 항목, 기간 등이 다를 경우에는 제공받는자별로 그 목적, 항목, 기간 등을 각각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능한 제공받는자의 연락처도 함께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제공받는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아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해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판매·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최신의 상태로 업데이트시켜 주거나, 다른 사람의 상품 광고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은 금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관련 위반 사례 〉

- XX서점은 영업의 특성상 제휴업체가 빈번히 변경된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신청서 상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제휴업체명) 및 개인정보의 제공목적”을 고지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여러 제휴업체와 제공·공유함
- XX마트는 “개장 기념 경품이벤트”를 실시하면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정보가 제휴 생명보험사에 제공되어 「휴일 무료 상해보험」에 가입된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제휴업체에 제공함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하여 수집한 경우로서 그 수집 목적 범위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시·군·구의 장의 공직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인명부 교부(「공직선거법」 제46조),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계약자 교통법규위반

개인정보 제공(「보험업법」 제176조) 등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참고 공직선거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구·시·군의 장은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법령상 의무 준수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의무 이행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수집·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에 의한 의무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의무도 포함된다.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의 강사명단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소득 지급자의 소득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무(「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이 법령상 의무 준수의 예에 속한다.

참고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여 수집한 경우로서 그 수집 목적 범위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정해진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등에서 소관 업무를 정하고 있고 그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이 허용된다.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란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직제규칙, 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이외에,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소관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등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양한 인허가사무, 신고수리, 복지업무,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내부고발,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민원업무를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피민원이나 피민원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라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면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동사무소나 경찰관서가 시급히 수술 등의 의료조치가 필요한 교통사고 환자의 연락처를 의료기관에 알려주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기준과 제공기준의 비교 〉

기준	수집·이용(제15조)	제공(제17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이용 가능	제공 가능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수집·이용 가능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 가능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수집·이용 가능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 가능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	수집·이용 가능	제공 불가 (정보주체 동의 필요)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집·이용 가능	수집목적 범위 안에서 제공 가능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수집·이용 가능	제공 불가 (정보주체 동의 필요)

4. 국외 제공 및 이전 제한

가 개인정보의 국외 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①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②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동의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모두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3항 전단).

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하여 이 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국외 이전은 국외 제공보다 개념이 넓다.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처리를 국외의 제3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국외로 옮겨지는 경우도 국외 이전에 포함된다. 위탁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처리위탁에 관한 규정(제26조)에 따라야 한다.

참고 유형별 국외이전 사례

- 제3자 제공형 : 해외 여행업을 하는 사업자가 외국 협력사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가 수집한 고객정보를 미국 본사로 이전하는 경우
- 해외 위탁형 :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 자회사를 설치하고 국내 고객DB를 이용해 콜센터업무(고객대응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 직접 수집형 : 해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해외에서 직접 수집하는 경우

5.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은 자 (제17조제1항제1호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71조제1호)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제17조제2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1호)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하에서만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되, 요금정산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제24조의2). 한편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하여는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이전의 형태를 불문하고(제공, 위탁, 보관 등) 모두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제63조).

한편 「신용정보법」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신용 정보이용·제공자 등은 「신용정보법」에 따라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p>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p>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63조(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p>
신용정보법	<p>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p>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p> <p>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준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p> <p>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p> <p>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p>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p> <p>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p> <p>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p>
--	--

7. 질의 응답

Q 같은 그룹 내의 호텔, 여행, 쇼핑몰 사이트 등 회원정보 DB를 통합하고 1개의 ID로 로그인이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패밀리 사이트’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같은 그룹 내부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별도 동의는 필요 없는지?

A

- 제3자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해당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 단체 등을 의미하므로, 같은 그룹 내부의 계열사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다른 별도의 법인에 해당한다면 제3자에 해당한다.
- 따라서 그룹 계열사 간이라도 패밀리 사이트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제공·공유하기 위해서는 제3자 제공에 따른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법률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p>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p> <p>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시행령	<p>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시행규칙	<p>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 외 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 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외 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 외 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 외 이용등의 목적 4. 목적 외 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p>제3조(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① 법 제18조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p>

표준지침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범위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참고 1 목적 외 이용사례

-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발급한 이메일 계정 주소로 사전 동의절차 없이 교육 등 마케팅 홍보자료를 발송한 경우
- 조세 담당 공무원이 자신과 채권채무 관계로 소송 중인 사람에 관한 납세정보를 조회하여 소송에 이용한 경우
- 상품배송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받지 않은 자사의 별도 상품·서비스의 홍보에 이용
- 고객 만족도 조사, 판촉행사, 경품행사에 응모하기 위하여 입력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받지 않고 자사의 할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물 발송에 이용
- A/S센터에서 고객 불만 및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신상품 광고에 이용
-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과 공개 취지 등에 비추어 그 공개된 목적을 넘어 DB마케팅을 위하여 수집한 후 이용하는 행위

참고 2 목적 외 제공사례

- 주민센터 복지카드 담당 공무원이 복지카드 신청자의 개인정보(홍보 마케팅 등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설학습지 회사에 제공
- 홈쇼핑 회사가 주문상품을 배달하기 위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계열 콘도미니엄사에 제공하여 콘도미니엄 판매용 홍보자료 발송에 활용

2.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예외 사유(제2항)

이 법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한편,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제1호)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분리해서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된다.

‘법률’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시행규칙에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에 제공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는 허용된다. 또한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법령상 의무이행’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사례

-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조사, 질문
-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른 감사원의 자료 요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자료제공 요구
- 병역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자료제공 요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 등

다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제4호)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제공하는 사람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도 제공받는 사람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되었다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된다.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식별 가능성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정보에는 해당 한다. EU GDPR은 공익, 과학 및 역사 연구, 통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최소처리원칙에 따라 가명화를 포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및 자유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더 이상 정보주체를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EU GDPR 제89조).

제공 목적이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구를 위한 것이면 되고 그 결과물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는 제한이 없다. 즉 그 결과물은 공공기관의 공공정책 수립 목적은 물론 민간기업의 시장분석, 경영전략 수립, 신상품 개발,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 소관 업무 수행이라는 목적 하에 개인정보 이용·제공을 무조건 허용하게 되면 남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한다. 다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는 허용된다.

마 공공기관의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제6호)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이란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뜻하는데, 그 명칭이 조약이든, 조약 이외의 “협약, 협정, 규약, 선언, 의정서”이든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이면 조약이 된다.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 관련 규정이 상충할 때에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별법은 일정한 사람·시간·장소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조약의 체결시에는 조약의 체결 당사국이 조약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약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나 국제협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조약 등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

바 공공기관의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제7호)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는 비록 범죄 수사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따라서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범죄수사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경우의 예외 및 한계 필요성 〉

- 범죄수사,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등의 형사절차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수사기밀이 유출되거나 정보주체의 정보공개·정정요구 등으로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범죄예방과 처단이 불가능해 질 우려가 있다.
- 수사가 종결되어 공소가 제기되면 정보주체는 법원에서 자유롭게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불기소처분된 경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정보보호에 소홀한 점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만, 범죄수사 등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리)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는 주로 공소제기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도 허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제195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한다(제196조).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해 개시되는데, 수사개시의 원인인 수사의 단서는 고소, 고발, 자수, 진정, 범죄 신고,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기사, 소문 등이 있다.

수사는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임의수사에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피의자신문(「형사소송법」 제200조 및 제241조 이하), 피의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조사(「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제1문), 감정·통역·번역의 위촉(「형사소송법」 제221조제2항)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임의수사의 원칙은 임의수사 자유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의수사도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만 적법한 수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임의수사를 위해 공무소 등에 조회를 하거나 공공기관에게 요청하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를 더욱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가능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장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범죄의 형태나 경증,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이용이 없이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근거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두고 있으며,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급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이후에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고, 36시간 안에 영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해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제8호)

법원은 재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보정명령, 자료제출명령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아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제9호)

형, 감호(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처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3.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의 방법(제3항)

가 별도의 동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당초 동의와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 동의는 당초의 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이므로 통상 당초 동의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최초 동의 시에 함께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동의 획득시 고지사항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①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②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④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알려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이를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때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②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알려야 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이를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목적 외 이용·제공 공개(제4항)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목적 외 이용·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또는 제공 일자·목적·항목에 관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목적 외 제공시 보호조치(제5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이에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이용목적, 이용방법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표준지침 제8조제1항).

〈 개인정보의 단계별 규제수준 비교 〉

구분	수집·이용 및 제공기준	목적 외 이용·제공 기준
공통기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함
동의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수집·이용 및 제공 가능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법률규정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수집 및 해당 목적범위 안에서 이용·제공 가능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공공기관 소관업무 수행	•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수집 및 해당 목적범위 안에서 이용·제공 가능	•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공공기관만 적용)
계약이행	•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 ⇒ 수집 및 해당 목적범위 안에서 이용 가능(제공 불가)	

구분	수집·이용 및 제공기준	목적 외 이용·제공 기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 ⇒ 수집 및 해당 목적범위 안에서 이용·제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모든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자의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수집 및 해당 목적범위 안에서 이용 가능(제공 불가) 	
통계·학술 연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모든 개인정보처리자)
국제협정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만 적용)
범죄수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만 적용)
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만 적용)
형·감호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 및 감호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공기관만 적용)

한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규정인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가 특별한 규정으로 적용되므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 또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은 각각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수집한 목적을 넘어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신용정보이용·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의 정보,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보통신망법	<p>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용정보법	<p>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p>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p> <p>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p> <p>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p>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p>
--	---

7.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18조제1항·제2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2호)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제18조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1호)

8. 질의응답

Q | 성형외과에서 성형환자들의 성형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해 병원 홈페이지의 ‘성형 성공 사례’에 게시하는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A | 병원에서 환자의 성형수술결과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촬영한 사진을 병원의 홍보 목적’으로 게재한다는 사실을 정보주체(환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일 수집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고지·동의 절차 없이 홍보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한다면 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

Q | 학교 졸업앨범, 동창회 명부 등 공개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은 문제가 없는지?

A | 이른바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초 공개된 목적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동창회 명부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회원들의 상호 연락 및 친목 도모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으며,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마케팅 행위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Q

경찰서로부터 수사를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본인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야 되는지?

A

-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목적을 위해 해당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이 허용된다.
(예: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에 따른 절차)
- 그러나 범죄수사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법률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 입법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처리할 수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불법유통 등 정보주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아진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에 대해서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2.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문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과 제공받는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②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⑤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3. 예외사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수집·이용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용정보이용·제공자 등은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5.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19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2호)

제20조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법률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령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방법·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표준지침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제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전문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입법취지

제20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개인정보를 공개된 출처로부터 수집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등을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때 출처 등을 고지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출처로부터 수집되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수집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동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량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출처, 처리 목적 및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다.

2. 정보주체 이외의 의미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어 수집한 정보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인물DB 사업자가 학교·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생성된 정보는 제외한다.

3. 고지시기 및 고지사항

가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집출처 등의 고지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하면 된다.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① 수집 출처, ② 처리 목적, ③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즉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알려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나 대량의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i)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ii)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① 수집 출처, ② 처리 목적, ③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하고,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을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다)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정보통신망법 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또는 법령에 따라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4. 고지거부 사유

고지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표준지침 제9조제2항).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고지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예컨대 수사기관이 제보자 또는 참고인의 신분을 피의자에게 알릴 경우 생명·신체의 위험이 따를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출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수집출처 등의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6.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및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제20조제1항, 제2항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3호)

7. 질의 응답

Q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교수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물DB를 만들려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이른바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초 공개된 목적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동창회 명부라면 해당 회원들의 상호 연락 및 친목 도모에만 이용될 수 있으며,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마케팅 행위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교수의 개인정보는 학술연구와 자문, 저술활동, 기고 등에 쓰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만약 정보주체가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 개인정보의 파기

법률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표준지침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55조 및 제56조를 적용한다.

제11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계속해서 보유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용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더 이상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고지하고 동의 받는 경우 그 보유기간을 정할 때에는 그 보유목적이 명백히 영구히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구, 그렇지 않은 경우 필요 최소한으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간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1. 파기시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이 종료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해당 서비스 및 사업이 종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10조제1항). 개인정보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참고 불필요하게 된 때

-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던 보유기간의 경과
- 동의를 받거나 법령 등에서 인정된 수집·이용·제공 목적의 달성
- 회원탈퇴, 제명, 계약관계 종료, 동의철회 등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의 법적 근거 소멸
-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청산
- 대금 완제일이나 채권소멸시효기간의 만료

2. 파기방법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시 복원하거나 재생할 수 없는 형태로 완벽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하드디스크, CD/DVD, USB메모리 등의 매체에 전자기(電磁氣)적으로 기록된 개인정보는 다시 재생시킬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매체를 파괴하여 복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이와 같이 출력물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전자기적으로 기록된 개인정보는 비록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복원기술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정보가 복구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말 그대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표준지침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 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표준지침 제10조제2항).

3. 파기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보유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위반시 벌칙이 부과되는 사항이므로 파기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10조 제4항).

4. 파기의무의 예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채권소멸기간까지 개인정보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하여 이미 요금정산이 끝난 소비자의 개인정보까지 보존하여서는 안 된다. 신용카드 이용고객의 신용관리를 이유로 회원의 동의 없이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존하는 것도 파기의무 위반이다. 다른 법령에서 보존기간으로 정한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보유기간을 정할 때에는 필요최소한으로 보유기간을 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시행령 제6조	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③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④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및 동시행령 제41조	① 법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12개월 ② 위의 자료 중 시외·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인 통신사실확인자료 : 6개월 ③ 법 제2조제11호마목 및 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① 환자 명부 : 5년 ② 진료기록부 : 10년 ③ 처방전 : 2년 ④ 수술기록 : 10년 ⑤ 검사소견기록 : 5년 ⑥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⑦ 간호기록부 : 5년 ⑧ 조산기록부: 5년 ⑨ 진단서 등의 부분 (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	--

5. 법령상 의무보관 개인정보의 보존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미파기정보가 기존 개인정보와 혼재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메일 발송시에 탈퇴 회원에게도 같이 발송되는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유출, 오·남용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미파기 정보는 오로지 다른 법령에서 보존하도록 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으나,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파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보유정보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	--

	<p>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p> <p>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 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p> <p>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2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p>
신용정보법	<p>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유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p> <p>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 (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p> <p>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그 밖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 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관리기간, 삭제의 방법·절차 및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해석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15-0641, 2015.11.20., 민원인)

어떤 법령이나 규정을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또는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두 법령이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서로 모순·저촉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해석상 특정한 지역·사람·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정한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그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제2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해당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할 것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은 서로 중복하여 모순·저촉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며,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법령상 근거도 없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자의 개인정보까지도 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이 해지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해당 개인정보를 보관할 필요성이 없어진 자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자의 개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7.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개인정보 미파기 (제21조제1항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4호)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제3항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3항제1호)

8. 질의 응답

Q | 쇼핑몰에서 탈퇴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려고 하는데, 일부 회원들은 할부 요금이 아직 미납되었거나 제품 A/S 기간이 남아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에는 5일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대금결제 및 재화 공급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요금 미납, A/S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거 5년간 개인정보 보관이 가능하다.

Q

할인마트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추첨 이벤트를 실시하였는데, 이벤트 종료 후 이벤트 응모신청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

A

경품추첨 이벤트가 종료되고 당첨자발표 및 경품배송까지 모두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은 한 5일이내에 개인정보가 기재된 응모신청서를 파기하여야 한다.

Q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에는 별도의 회원탈퇴 메뉴가 없고, 게시판신청이나 메일을 통해서 탈퇴신청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어떤 회원이 게시판에 세번에 걸쳐 회원탈퇴를 요구하는 글을 남겼는데 다른 업무로 바빠 처리를 하지 못하였다. 어떤 문제가 되는가?

A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개인정보 등에 대한 열람·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질의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회원탈퇴 신청의 경우에는 탈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담당자가 즉시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번에 걸친 회원탈퇴 요구를 10일 이상 지연하였다면 이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제22조 | 동의를 받는 방법

법률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는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22조제3항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4.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5.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민감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표준지침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⑦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강제되는 경우가 많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의 방법을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다.

1. 동의 사항의 구분 : 포괄동의의 금지(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각각의 동의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수집·이용 동의(제15조제1항 제1호), 제3자 제공 동의(제17조제1항제1호), 국외 제3자 제공 동의(제17조제3항), 마케팅 목적 처리 동의(제22조제3항), 법정대리인의 동의(제22조제5항) 등이 있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특히 정보주체가 좀 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통상의 동의와 구분해서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동의와 구분해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제18조 제2항제1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의 이용·제공 제한(제19조제1호), 민감정보 처리 동의(제23조 제1항제1호),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제24조제1항제1호) 등이 해당된다. 예컨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할 때에는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건강정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건강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분리해서 목적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동의가 필요한 사항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구분(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개인정보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정보,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이 해당되며,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표준지침 제12조제1항).

반면에 상품 광고 및 판매에 필요한 정보, 고객성향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 민감정보, VIP회원 가입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는 개인정보와 동의가 필요 없는 개인정보로 나뉘어 있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후자에 관한 사항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처리에 동의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개인정보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완전한 정보만을 제공받지 않기 위함이다.

참고 약관 동의의 유효성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일괄하여 한 번의 서명을 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정보주체의 선택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약관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마케팅 광고에 대한 동의방법(제3항)

상품의 판매권유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는 정보주체에게 판매권유 또는 홍보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알린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재화, 서비스 등의 제공 거부 금지(제4항)

정보주체가 선택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제2항), 직접마케팅에 대한 동의(제3항),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제18조제2항제1호)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본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한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본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제16조제2항). 그러나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를 둔 거부는 가능하다.

참고 합리적 사유의 사례

- 계열사 고객정보DB를 통합하면서 정보 제공 및 공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불법이나, 정보 제공 및 공유에 동의한 고객들에 대하여 제공하는 5년간 무료 장기 주차권을 거부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 광고메일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신용카드 발급 또는 쇼핑몰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불법이나, 광고 메일 수신자들에게만 부여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주는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물품이나 서비스 구입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는 최소수집 원칙 위반이나 회원제로 하지 않으면 물품이나 서비스 판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위법이 아니다(인터넷뱅킹 등).

5. 아동을 대신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제5항)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의 중요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보 수집 목적의 진위를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로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09조, 제911조, 제916조, 제920조), 후견인(「민법」 제931조에서 제936조까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민법」 제22조, 제23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름과 연락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표준지침 제13조제1항). 또한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동의를 얻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동의에 대한 거부의사가 확인된 경우와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채 3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13조제2항).

6. 개인정보 수집매체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동의방법

정보주체의 동의는 특정한 일부 방법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실제로 정보주체가 동의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편의를 위해 일괄적으로 동의 여부를 묻는 전자우편을 발송한 후 거부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로 간주한다는 등의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동의획득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동의획득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세부적인 동의 획득 방법으로 ①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②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③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④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⑤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이라고 열거하고 있고, 그 밖에 상기 5가지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전자문서를 통해 동의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가 전자서명을 받는 방법, 개인명의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이용한 동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등도 해당된다.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동의 받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신용정보이용·제공자 등은 각각 해당 법령에 따라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관하여, 「신용정보법」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를 아동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따른다.

정보통신망법	<p>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p>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p> <p>『정보통신망법 시행령』</p> <p>제12조(동의획득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 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p>
신용정보법	<p>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면

	<p>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p> <p>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p> <p>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p> <p>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준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p> <p>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신용정보회사들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p> <p>⑤ 신용정보회사들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신용정보회사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p> <p>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p> <p>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p> <p>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p> <p>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p> <p>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자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자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p> <p>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p>
--	--

	<p>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p> <p>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p> <p>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p> <p>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p> <p>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p>
--	---

8.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동의획득 방법 위반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3항제2호)
선택적으로 동의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제22조제4항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2호)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제22조제5항 위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1항제2호)

9. 질의 응답

Q | PDA단말기를 이용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방법으로 고객이 PDA단말기에 직접 서명하는 것도 가능한가?

A | PDA단말기를 통하여 서명을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 수집시의 동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사항이 많으면 동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 주소 등)을 안내 하여야 한다.

Q

여행사에서는 주로 전화로 문의·예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고지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으려면 통화시간이 매우 길어진다. 이용자의 동의획득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가?

A

「개인정보 보호법」은 인터넷 사이트,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 각각의 서비스 유형에 따른 동의획득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전화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구두로 동의를 얻거나, 또는 고지사항이 기재된 인터넷 주소 등을 안내하고 추후 구두로 동의를 얻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Q

개인정보처리자가 마케팅 동의의 철회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주체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등 일정한 대가(이하 “경품 등”)를 지급하였는데, 정보주체가 경품을 수령한 뒤 마케팅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경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A

마케팅에 대해 동의하면서 그에 대한 일종의 대가로 경품 등을 수령한 뒤, 마케팅 동의만을 철회하게 되면 이는 사회 통념상 신의에 기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경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마케팅 동의 철회시 지급한 경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여 동의를 얻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법률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 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 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특히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거나 현저히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보다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정의

제23조는 민감정보에 대한 정의를 두는 대신에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이 법에서 민감정보란 ①사상·신념, ②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③정치적 견해, ④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⑤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이다.

- ‘사상·신념’이란 개인의 가치관에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유체계, 개인이 굳게 믿고 지키고자하는 믿음·생각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을 말한다.
- ‘정치적 견해’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에 관한 정보이다.
-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란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이다. 반드시 적법한 노동조합이거나 정당일 필요는 없다.
-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 (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 취향 등에 관한 정보이다. 혈액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를 수집·처리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민감정보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를 상황에 맞게 규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 시행령상 민감정보의 종류(영 제18조) 〉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물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등 범죄 경력에 관한 정보

다만 시행령에 따른 민감정보(유전정보,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이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의 별도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고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다. 선고유예의 실효
- 라. 집행유예의 취소
-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물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2. 민감정보의 처리금지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된다. 외국의 주요 입법례에서도 민감정보(특별한 범주의 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제23조도 외국의 입법례에 따라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제23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므로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분리해서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법정서식에 민감정보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도 포함)

참고 1 「의료법」 제21조제2항

제21조(기록 열람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참고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 서식

[10 3] < 2011.2.22>	
병력(病歴)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	
[] 10	
(1) (情動障碍) ? [] [] ()	
[]	
(2) () ? [] [] ()	
[]	
(3) ? [] [] ()	
[]	
[]	
[]	
가 5 13 가 []	
[]	

참고 3 「보안관찰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소전에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5부를 작성하여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장(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적·본적·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이하 같다)·성명·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교우관계
3. 입소전의 직업·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병역관계
7. 출소예정일
8.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9.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의 요지·판결법원·판결연월일·죄명·적용법조·형명·형기
10. 보안관찰해당범죄외의 전과관계
11. 법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소제공 결정일자와 제공된 사회복지시설등의 명칭 및 그 소재지

참고 4 「병역법」 제11조의2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의 경우 별도의 규정으로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상, 그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5조 제1항 각호, 제17조 제1항 각호 내지 제18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처리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상 허용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치적 사상 등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수집할 수 없다. 또한 보험료 산출 등을 위하여 개인의 질병 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p>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 관계, 학력(學歷)·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p> <p>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p>
신용정보법	<p>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p>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목적으로만</u>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p>

4.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민감정보 처리기준 위반 (제23조 제1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1항제2호)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 (제23조제2항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3조제1호)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제23조제2항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6호)

5. 질의 응답

Q | 법과 시행령이 정한 것 이외에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면 모두 민감정보가 될 수 있는가?

A | 법과 시행령은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Q | 장애우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장애등급 정보가 필요한데, 수집 할 수 있는지?

A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 제공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보편적 역무’ 중의 하나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법 제23조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서, 장애우 요금감면 혜택을 위한 장애등급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법률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 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

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
2.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 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자치부장관(제62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과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는 원래 공익목적으로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나 그 편리성 때문에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수집·이용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도용으로 인한 피해 등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원래의 목적에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처리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1. 고유식별정보의 정의(제1항)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법령에 의해서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어야 하므로 기업, 학교 등이 소속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사번, 학번 등은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없다. 또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는 민간 분야에서 DB매칭기 등으로 남용되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공공기관이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로 보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금지(제1항)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서는 제24조의2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분리해서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외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포함되며 이에 첨부된 별지 서식이나 양식도 포함된다.

참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 2 ~ 3. 생략
4. 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법 정책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신원확인 의무나 연령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이를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있다.

검토하건대, 다른 법령에서 단순히 신원·연령확인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원·연령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를 별도로 받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 1 「청소년보호법」 제16조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2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제1항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 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삭제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법률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 2017.3.30.]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암호화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7년 1월 1일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8년 1월 1일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번호의 원칙적 처리 금지(제24조의2)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하여서는 2013. 8. 6. 이 법의 개정(2014. 8. 7. 시행)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제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의 보호를 다른 고유식별정보 보다 더욱 강화함으로서 관행적 동의 절차에 따른 오·남용과 유출시 2차 피해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적용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따라서 위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저장·보유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고, 이는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개정 이전에는 다른 고유식별정보와 같이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 처리 가능하였으나, 이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1호에서 정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최소한 어느 하나에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2017. 3. 30. 부터는 시행규칙에 근거가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은 제외되고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로 제한되게 된다.

2호의 의미는 이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해설에 자세히 기술된 바와 같다. 단순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명백히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급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다른 수단에 의하여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급박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Q |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체보험 가입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A 「보험업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4호는 보험회사가 「상법」 제735조의3(단체 보험)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단체보험은 구성원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체가 보험계약자로서 피보험자인 구성원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일괄계약하는 보험으로서, 회사는 단체보험 가입 목적으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에 따른 회원가입 대체수단을 제공하면 된다.

정보통신망법

-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기준 위반 (제24조제1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4호)
고유식별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 (제24조제3항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3조제1호)
고유식별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제24조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6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24조의2제1항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4의2)
주민등록번호 보호를 위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4조의2제2항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4의3)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4조의2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5호)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법률

-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 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시행령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2.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 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상정보처리 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④ 법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을 말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 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으로 본다.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표준지침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35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3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37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8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9조(안내판의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
-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 기기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 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자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42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4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영 제2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 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46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44조 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다만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은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제4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①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영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 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 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가 적용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

이 법 제25조에 의하여 설치·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에 한정한다(제2조제7호). 구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에 속한다(시행령 제3조). 차량에 설치되어 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동성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적용대상 : 누구든지

이 법 제25조의 적용 대상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더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2.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운영 금지(제1항)

가 공개된 장소의 의미

이 법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공개된 장소’란 도로, 공원, 광장,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 즉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여기서 말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1 공개된 장소의 예시

- 도로, 공원, 공항, 항만, 주차장, 놀이터,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
- 백화점, 대형마트, 상가, 놀이공원(테마파크) 등 시설
- 버스, 택시 등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

참고 2 공개된 장소에 대한 판례

- 다른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별다른 통제가 없고 개방되어 누구나 차량으로 통행하는 아파트단지 또는 대학구내의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본다.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986 판결)
- 특정상가 건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관리인이 상주·관리하지 않고 출입차단장치가 없으며 무료로 운영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본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는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한다.

이 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만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비공개된 장소 및 순수한 사적(私的)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1) 비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 법 제25조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촬영) 및 이용 등에 대해 일일이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대신하여 안내판 설치, 사전 의견수렴 등의 보호조치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그 설치·운영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이 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구성원이나 출입·이용이 허가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거나(법 제15조제1항제1호), 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법 제15조제1항제6호) 등에 한하여 ‘비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내판 설치의무 등 이 법에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비공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는 규정상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정보주체가 직접 촬영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큰 만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을 분명히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이 법에서 정한 안내판 등 설치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원칙·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순수한 사적(私的)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의 주택 등 순수한 사적(私的)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이 배제된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의 대문, 현관 등에 범죄예방(방범) 목적으로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된 장소가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 등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쟁점 사례〉

사례 1 택시·버스 등의 CCTV

택시, 버스 등 영업용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탑승공간 및 승객을 촬영하는 CCTV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촬영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개된 장소’의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영업용 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이 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다.

사례 2 택시·버스 등에 설치된 블랙박스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외부(차량, 도로 등)를 촬영하는 이른바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일정한 공간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택시·버스 등의 운영 주체(버스회사, 개인택시 운전사 등)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의 다른 개인정보보호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버스·택시회사 등에서 교통사고 대응을 위하여,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사고일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에 따라 배열·구성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므로 이 법 적용을 받는다.

사례 3 개인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개인 소유의 차량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순수한 사적(私的) 공간으로서, 여기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례 4 관공서, 기업 등의 건물에 설치된 CCTV

관공서의 민원실, 기업 건물의 로비 등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 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내부 직원이나 허가를 받은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는 관공서 건물 내부 또는 기업 사옥의 내부 공간은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 관공서, 기업 등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즉 그 구성원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허용된다.

사례 5 사업장 내부에 설치된 CCTV

민간기업 등에서 근로자의 근무행태 모니터링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장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용자 측의 근로 관리권한과 근로자 측의 사생활 보호권이 서로 상충될 우려가 있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공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법 제25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외의 일반적 개인정보보호 원칙 적용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로부터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겠으나, 회사자산의 도난 방지, 시설안전의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법 제15조제1항제6호)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 감시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조치 등을 노사 협의에 따라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예외적 허용(제1항 각 호)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다른 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이 허용되고 있다. 이 법은 총 5가지의 설치·운영 허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제1호)

일부 법령에서는 장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거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

관련 법령	내 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함 (제6조제1항제11호)
「아동복지법」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 등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32조)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4조제2항)
「외국인보호규칙」	외국인보호시설의 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대책 확보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37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목욕장업자는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이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음(별표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여객선터미널의 여객 대기지역, 항만시설 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울타리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함(별표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 실험실 및 보관시설의 감시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하여야 함(별표 4)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중앙방재실은 자체 감시카메라(CCTV) 서비스를 갖추어야 함 (제12조)

②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범죄는 형법상의 범죄 이외에 각종 개별법이나 단속법상의 범죄도 포함된다. 예컨대 「경범죄처벌법」상의 각종 경범죄(도로 등에서의 물품강매·청객, 광고물 무단첩부등,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 등 오물방치, 노상방뇨등, 공원·명승지·유원지등의 자연훼손, 자릿세 징수등, 암표매매,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를 예방·수사하기 위해서도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우범지역의 도로나 골목길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은행 ATM 시설에 범죄방지용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백화점·편의점 등에서 도난방지용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회사의 자체창고에 도난방지용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각종 자연재해, 시설 노후화, 인위적 훼손·난동, 방화, 낙서 등으로부터 공공시설, 문화재, 사유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허용된다. 즉 지하철역 안전사고 예방, 공공건물의 전기·가스·수도 등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 문화재 시설 안전 및 보호를 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각종 차량 및 사람들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허용된다.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규정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5호)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량 분석,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허용된다. 즉 고속도로, 주요간선도로 등의 교통량을 수집하여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의 설치·운영 금지(제2항)

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2항 본문) —————

개인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예외적 허용(제2항 단서) —————

공익적 목적에 의해 사람을 구금·보호하는 시설의 목욕실, 화장실 등에는 그 안에서의 자해·자살, 폭력행위, 탈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교도소·구치소·외국인보호시설·소년원이나 정신보건시설 등과 같이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다.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예외적 설치·운영 허용 〉

관련 법령	내 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정시설 (제2조제4호) ※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정신보건법」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제3조제3호부터 제5호)

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정신의료기관 등)가 해당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영 제22조제2항).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절차·방법(제3항, 제4항)

가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제3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운영 및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운영시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① 공공기관의 경우(영 제23조제1항)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개인 사생활 침해우려 장소에 설치시 의견수렴 (영 제23조제2항)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교정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모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제4항)

① 안내판 설치(제4항 본문, 영 제24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촬영 대상자는 자기의 모습이 촬영되는지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그 촬영사실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를 통해 촬영 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내판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설치목적 및 장소
- ② 촬영범위 및 시간
- ③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백화점, 역사 등 규모가 큰 건물의 경우에는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기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판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영 제24조제1항 단서).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고, 이를 충족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안내판의 크기나 설치위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표준지침 제39조제2항).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연계를 위해 통합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39조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39조제3항).

②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영 제24조제2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현황에 따라서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의미가 없거나 정보주체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에서는 ①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사업장·영업소 등 게재(영 제24조제3항)

소규모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아예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사항을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신는 방법으로 게재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영 제24조제2항).

④ 안내판 설치의무 면제(제4항 단서, 영 제24조제4항)

국가안보 등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 설치가 오히려 그 목적달성을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안내판 설치의 면제가 필요하다. 즉 공공기관의 장이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②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③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안내판 설치 의무 면제 시설 〉

구 분	내 용
군사시설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 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
국가중요시설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보안시설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의무(제5항~제8항)

가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제5항)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만일 음성·음향을 녹음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본의 아니게 사람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제3조),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기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영자에 의한 임의조작을 가능하게 할 경우에도 역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진다.

따라서 이 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도록 하고, 녹음기능 역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5조제5항).

참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등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 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제6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영상정보는 비디오테이프나 메모리 등에 영상 파일로 생성·저장되므로 그 안전성 확보조치도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다르다. 이에 따라 표준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표준지침 제47조).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다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제2조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제7항, 영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제1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25조제7항).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도 있다(표준지침 제36조제2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3항(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방법)을 준용한다(영 제25조제2항). 즉,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원칙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표준지침 제47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책임자를 지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 개인정보 관리대장 작성 (표준지침 제42조, 제44조 제5항 및 제6항, 제4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아래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표준지침 제42조제1항).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시 기록사항〉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도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표준지침 42조제2항).

〈개인영상정보 파기시 기록사항〉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요구 또는 파기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44조제5항 및 제6항).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시 기록사항〉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위의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침 별지서식 제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 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 공 형태	기간
1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2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3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제8항, 영 제2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외부의 전문업체에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운영 현실을 감안하여, 이 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법 제25조제8항).

특히,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안내판에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영 제26조).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위탁시 문서 포함사항 〉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다만, 민간기업·단체·개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이 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의 규정이 적용된다.

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점검(표준지침 제48조)—————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된 이후에도 그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민간에 비해 더욱 엄격한 점검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 법 및 표준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포털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시 고려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공공기관 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6.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표준지침 제44조)

일반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촬영된 영상은 그 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열람·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영상정보를 활용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에서 물건 도난이나 기타 범죄 행위를 겪은 당사자가 그 범죄 수사 등을 위해 영상정보의 열람이나 존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지침에서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예를 들어 자신의 물건의 도난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촬영 화면을 열람 요구). 그러나 정보주체와 관련이 없는 개인 영상정보에 대해서도 열람등을 허용하면 그 영상에 촬영된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1)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2)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을 위해,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의 제정·권장(영 제27조)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으로 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8.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적용의 일부제외 (법 제58조제2항)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곤란하므로 이 법 제25조에서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7조제1항·제2항(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및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일부 적용제외(법 제58조제2항)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및 동의획득 의무
⇒ 안내판 설치 등의 의무로 대체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정보주체에게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알리고 개별적으로 동의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불특정 다수의 특성상 동의곤란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영업의 양도·합병시 통지의무
⇒ 불특정 다수의 특성상 통지곤란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 불특정 다수의 특성상 통지곤란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 요구 ⇒ 특정 정보주체만 처리정지 불가

9.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설치·운영기준을 위반한 자 (제25조제1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7호)
화장실, 목욕실 등에 설치·운영한 자 (제25조제2항 위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1항제3호)
안내판 설치 등 조치의무 위반 (제25조제4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3항제3호)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제25조제5항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2조제1호)

10. 질의 응답

Q | 안내판은 CCTV가 설치된 곳마다 설치해야 하는가?

A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마다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안에 다수의 CCTV를 운영하는 경우 출입구 등 정보주체가 출입하면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 조사 등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산불감시용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CCTV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게재할 수 있다.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등에 게시, 일반일간신문, 일반 주간 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에 실는 방법 가능)

Q | CCTV 촬영 화면을 공익 목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가?

A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화면을 공익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교통정보 CCTV 화면, 관광지·유적지의 CCTV 화면을 일반 시민에게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는, 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본래 설치·운영 목적이 법 제25조제1항각호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 촬영영상이 교통정보나 관광지 등의 전경(全景)이 비추어지는 정도에 그치고 개인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무방하다.

Q | 경찰청에서 교통영상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가?

A 경찰청이 교통영상정보를 외부기관에 연계·송출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정도로 CCTV를 제어한 경우라면 이 법 제18조 제1항에 저촉된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동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내지 제5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부기관에 연계·송출할 수 있다.

Q | 안내판의 규격이나 재질에 대한 기준은 어떠한가?

A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될 수 있게 설치되면 되며, 그 범위 안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안내판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안내판 및 홈페이지 게재 내용 예시〉

CCTV 설치 안내

- ◆ 설치목적 : 범죄예방
- ◆ 장 소 : 00동 00번지
- ◆ 촬영범위 : 100M 전방향
- ◆ 시 간 : 24시간 [종일]
- ◆ 관리책임자 : 00부 00과 과장
- ◆ 연 락 처 : 02-000-0000

Q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촬영된 경우, 불법투기자 인적사항을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해당 영상을 공개할 수 있는가?

A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불법 투기자의 영상 촬영, 즉 개인정보 수집의 직접적인 목적은 불법 투기행위의 증거자료 수집에 국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까지 수집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투기자의 인적사항 조회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경찰도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제26조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법률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신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신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④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⑤ 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⑥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표준지침

제16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최근 비용절감, 업무효율화,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목적으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들 조차 각종 업무를 외부 기업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업무위탁은 현대 사회의 분업화에 따라 나타난 자연스런 경영방식의 하나이나 대부분 고객의 개인정보도 함께 이전하게 되어 개인정보가 전전유동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업무위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유형 〉

- 판매실적 증대를 위한 무분별한 재위탁 등 개인정보의 전전제공
- 다른 회사의 상품·서비스를 동시 취급하면서 개인정보를 공유
-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부가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에 무단 가입
- 서비스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의 분실·유출
- 고객DB를 빼내어 판매
- 정보시스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1. 업무위탁의 유형

업무위탁의 유형은 크게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업무 그 자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과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이 수반되는 일반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취급업무 위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업무 위탁은 다시 홍보·판매권유 등 마케팅업무의 위탁과 상품배달·애프터서비스 등 계약이행업무의 위탁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2. 업무위탁과 제3자 제공의 차이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모두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개인정보 이전의 목적이 전혀 다르고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등 법률적 관계도 전혀 다르다.

업무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제3자 제공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제3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판례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그 제3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그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이지만, 개인정보 처리 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된다는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960 판결 참조)고 설시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되더라도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만,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일단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고 나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못한다.

〈 업무위탁과 제3자 제공의 비교 〉

구분	업무위탁	제3자 제공
관련조항	제26조	제17조
예시	• 배송업무 위탁, TM 위탁 등	• 사업제휴, 개인정보 판매 등
이전목적	•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수탁업무 처리)	•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
예측 가능성	•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가능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내)	•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곤란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밖)
이전 방법	• 원칙 : 위탁사실 공개 • 예외 : 위탁사실 고지(마케팅 업무위탁)	• 원칙 : 제공목적 등 고지 후 정보주체 동의 획득
관리·감독책임	위탁자 책임	제공받는 자 책임
손해배상책임	위탁자 부담(사용자 책임)	제공받는 자 부담

한편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목적에 따라 업무위탁과 제3자 제공의 성격을 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법에서 제3자 제공의 요건만 갖추어도 된다는 예외 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정보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요건을, 업무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정하는 방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업무위탁의 절차·방법

가 위탁 목적 등의 문서화(제1항, 영 제28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나 일반 위탁업무 내용 등의 공개(제2항, 영 제28조제2항, 제3항)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는 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②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영 제28조제2항).

위탁자가 위탁업무의 내용, 수탁자의 이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영 제28조제3항).

위탁업무 등의 공개방법(시행령 제28조제3항)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다 홍보, 판매권유 등 위탁업무 내용 등의 통지(제3항, 영 제28조제4항, 제5항)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②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영 제28조제4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탁자가 과실 없이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영 제28조제5항).

라 수탁자 선정시 고려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①인력, ②물적 시설, ③재정 부담능력, ④기술 보유의 정도, ⑤책임능력”과 그 밖에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16조).

사례 위탁업무가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위탁업무가 1회(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위탁기간이 매우 짧아 위탁기간 내 홈페이지 공개나 수탁업체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계약 체결시 수탁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계약서류 등을 통해 명확히 고지하고 수탁업체가 관련 직원에게 전달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

4.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가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제4항, 영 제28조제6항)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제4항).

또한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법 또는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위·수탁 계약(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내용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영 제28조제6항).

따라서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외에 수탁자의 개인정보처리 현황 및 실태, 목적 외 이용·제공, 재위탁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나 수탁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6항)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직원으로 본다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탁자의 사용자로 간주된다는 것인 바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책임(대위책임)을 부담한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이므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수탁자와 개인정보처리자 중 선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더라도 수탁자에 대해서도 독립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수탁자 자신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때 위탁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고, 수탁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수탁자의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이고 수탁자의 가해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위탁자가 수탁자의

선임 및 감독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만약 위탁자가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부진정 연대채무

부진정 연대채무란 연대채무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연대채무를 말한다.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서 그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다. 그러나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그중 한 사람에 대해 생긴 사유는 변제 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유 이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택시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 그 운전자는 불법행위자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으며 택시회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때 택시회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택시운전자와 연대책임 관계에 있게 되는데 이를 부진정 연대채무라 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인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운전자와 택시회사를 상대로 각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택시회사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는 재위탁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수탁자는 재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수탁자가 재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재수탁자를 재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기 때문이다(표준지침 제21조). 예를 들어 A회사가 고객정보 관리업무를 B회사에게 위탁을 하고(재위탁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B회사는 위탁된 고객정보 관리업무를 C회사에게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 C회사의 관리업무상 과실로 인해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C회사는 B회사의 직원이므로 정보주체는 B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B회사 역시 A회사의 직원이므로 궁극적으로는 A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져야 한다.

5.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제5항, 제7항)

가 수탁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금지(제5항) —————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이후, 위탁 업무와 별개로 수탁자의 목적으로 마케팅 등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만약, 이와 같이 수탁자의 목적으로도 이용이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관련법에 따른 제3자 제공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등 준용(제7항) —————

수탁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 까지 및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탁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거나 수탁자의 법규 준수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관련 규정이 준용됨을 명시한 것이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라 한다)가 정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17조).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탁에 대하여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마케팅 등 업무 위탁이 아닌 일반적인 위탁의 경우 위탁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 신용정보이용·제공자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 등이 그 업무 범위에서 다른 신용정보회사 등에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시행령 이하 규정에 마련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p>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 및 교육하여야 한다.</p> <p>⑤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p> <p>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p> <p>⑦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p>
신용정보법	<p>제17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p> <p>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그 업무 범위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5조(해당 조문에 대한 별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를 적용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p> <p>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⑥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7.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수탁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26조제5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2호)
업무 위탁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제1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3항제4호)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제2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3항제5호)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을 알리지 아니한 자 (제26조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1호)

8. 질의 응답

Q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예약확인 및 고객 상담업무를 전문 콜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고객 대상 이벤트와 여행상품 홍보 업무도 해당 콜센터에서 모두 진행하려고 한다.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A 본래의 서비스 이행을 위한 처리위탁 업무가 아닌 별도의 이벤트, 홍보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그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Q 병원과 의료정보 전달시스템 관리업체 간에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처리위탁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A 의료법 등에 따른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등의 공유·제공을 위해 관리업체를 활용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동의획득 없이 정보주체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위탁 업무 중 홍보·판매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Q

대리점 직원(수탁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대리점 직원의 행위에 대해 본사(위탁자)도 책임이 있는가?

A

위탁자(본사)는 수탁자(대리점)에 대해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수탁자가 법령을 위반해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탁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점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27조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법률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시행령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 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영업양도자등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영업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때에는 기존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DB 등에 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그 결과 정보주체에게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 시에는 정보주체가 회원탈퇴, 동의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영업양도, 합병 등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영업양도·양수자 등의 통지의무(제1항, 제2항)

가 영업양도자 등의 통지의무(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1항, 영 제29조제1항). 개인정보 이전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대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영업양수자 등의 통지의무(제2항)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양도자등이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양수자등이 대신해서 통지하여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알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영업양도·양수 등의 통지방법(제1항, 제2항, 영 제29조)

영업양도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이 영업양도·양수 등의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제1항 각호, 영 제29조제1항).

서면 등의 방법이란 우편, 전자우편, 팩스, 전화, 인편 등과 같은 개별적 통지방법을 의미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같은 방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양도 시 통지사항(법 제27조제1항)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 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영업양도자등이 과실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영업양도자등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제1항 각호, 영 제29조제1항).

3. 영업양도·양수 등의 통지시기(제1항, 제2항)

영업양도자등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 등을 통지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법문(法文)상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최소한 정보주체가 이전 사실을 확인하고 회원탈퇴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문상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개인정보 DB가 이전되는 시점이 아닌 합병 등 계약 체결 시점에 통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업양수자등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 등을 통지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금지(제3항)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 처리자로 본다.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는 것은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양수자등도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순간 이 법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나 영업양수자등의 법규 준수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이를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영업양수자등이 영업양수·합병 당시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고자 한다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 본조의 적용대상

본조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법」 제530조의2에 의한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회사분할이란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할하고 분할된 영업재산을 자본으로 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것이다. 본래의 회사(분할회사)는 소멸하거나 줄어든 상태로 존속하게 되고,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분할 신설회사(또는 분할 합병회사)의 주식은 분할회사가 취득하거나 분할회사의 주주들이 일정비율대로 나눠 갖는다.

본조는 이처럼 개인정보 DB 등에 관한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상황을 전제로 영업양도 및 합병을 그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적·물적 분할, 자산양수도 등의 거래를 통해 사업부문이 이전되는 등 사실상 영업양도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본조에 준하여 개인정보의 이전과 관련하여 본조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업의 양수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에 개별 규정이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다. 한편,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법」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p>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p>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영업양수자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영업양수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신용정보법	<p>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p>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p> <p>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신용정보법」상으로도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또한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사실 미통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3항제6호)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제27조제3항 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2호)

8. 질의 응답

Q 다른 사업자와 영업을 합병하게 되어서 고객을 대상으로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 및 합병 회사가 모두 다 통지를 해야 하는가?

A 영업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 및 이전받는 자 모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 이전받는자의 성명(명칭)·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동의철회 방법·절차”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제현실상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가 이를 통지하게 되면 비용상의 부담 및 정보주체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사업자)가 관련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 등)는 알리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8조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법률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준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제1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보의 처리

1. 개인정보취급자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차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즉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 제2조제5호).

이에 비해,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표준지침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하도급, 시간제 등 모든 근로형태를 불문한다.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포함된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등을 수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수탁자도 개인정보취급자라고 할 수 있으나,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규정은 이 법 제26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2.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권한 부여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접근 및 유출, 오·남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적절한 관리·감독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직책, 담당 업무의 내용, 업무 숙련도 등에 따라 각기 달라져야 한다. 또한 관리·감독은 1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평가·피드백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들에 의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의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고(표준지침 제18조제1항). 또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18조제2항). 그 외에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안으로 보안서약서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 접근권한의 변경 등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18조제3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사내교육, 외부교육, 위탁교육 등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나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 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직책, 담당 업무의 내용, 업무 숙련도 등에 따라 교육 내용도 각기 달라져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신용정보이용·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질의 응답

Q 업무 처리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도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하는가?

A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 직원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를 열람·처리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열람·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필요한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제32조의2 개인정보보호 인증
-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제34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

제29조 | 안전조치의무

법률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표준지침

제4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다만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제2조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은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5.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11.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1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4. “공개된 무선망”이란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15.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6.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17.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 매체를 말한다.
18.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19.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20.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제3조(안전조치 기준 적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접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별표]의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별표]의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자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별표]의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6항을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 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⑧ [별표]의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⑧ [별표]의 유형1 및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6항을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3.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별표]의 유형1 및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개인정보는 한번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면 원래 상태로의 복구가 곤란하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나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의 가장 기본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고 그 당시의 최신 보안 기술 등을 고려해서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보호조치 기준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 법 및 시행령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1. 안전조치 의무의 이행(영 제30조제1항)

이 법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조직·인력 등에 대한 관리적 보호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 개인정보가 보관된 장소나 매체에 대한 물리적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16. 9. 1. 개정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제3조).

개인정보 처리자의 유형은 (i)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유형1, 완화), (ii)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1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유형2, 표준), (iii)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단체(유형3, 강화)로 구분되며, 개인정보 처리자 유형별로 적용되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조항은 다음과 같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별표).

- 유형1(완화) :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제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 유형2(표준) :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 15호,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 유형3(강화) :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가 관리적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적 안전조치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여기서 ‘내부 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의미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 전체에 통용되는 내부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세부 지침이나 안내서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자 전원이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동일한 기준에 따라 동일한 행동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조직 내부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관련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사적인 계획 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경영층의 방향제시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내부 관리계획에는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유형1의 경우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유형2의 경우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기술적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기술적 안전조치

1.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제한 관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3.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등
5.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1) 접근 권한의 제한·관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의 수는 그 목적달성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그 관리 권한도 이에 따라 통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법 및 고시에서는 접근 권한의 제한·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제5조제1항). 그리고 만약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제5조제2항).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제5조제3항).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제4항). 이를 규제하는 이유는 다수의 개인정보취급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아이디를 공유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Accountability)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제5항). 안전하지 못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경우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비밀번호란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없으며 비밀번호 해킹 등을 통해서도 비밀번호를 얻어낼 수 없거나 얻어내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취급자나 정보주체가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문자 등을 비밀번호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접근통제를 달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밀번호의 최소 길이는 그 비밀번호를 구성하는 문자의 종류에 따라 최소 10자리 또는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하여야 한다.

- 최소 10자리 이상 : 영대문자(A~Z, 26개), 영소문자(a~z, 26개), 숫자(0~9, 10개) 및 특수문자(32개)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
- 최소 8자리 이상 : 영대문자(A~Z, 26개), 영소문자(a~z, 26개), 숫자(0~9, 10개) 및 특수문자(32개) 중 3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

그리고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생성해야 하며,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생성한 비밀번호에 12345678 등과 같은 일련번호, 전화번호 등과 같은 쉬운 문자열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love, happy 등과 같은 잘 알려진 단어 또는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도 포함되지 않아야 함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제6항).

한편 별표 유형 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접근 통제

사업자,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IP 주소를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1항)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2항). 여기에서 가상사설망이라 함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원격으로 접속할 때 암호 프로토콜 기술 등을 통해 안전한 암호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안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P2P 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공개·유출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3항).

또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4항).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6항).

한편,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와 같이 규모가 작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없이 업무용 컴퓨터(PC) 또는 모바일 기기만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의무화에 관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5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6조제6항). 예를 들어 윈도우(Windows)에서 제공하는 방화벽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별표1에 해당하는 유형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접근 통제에 관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2항, 제4항,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기기는 성능이 높아 대량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있으나, 휴대와 이동이 편리하여 기기 분실·도난시 해당 기기에 저장된 또는 해당 기기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제7항).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암호화’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실수 또는 외부 공격자(해커)의 공격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비인가자에게 유·노출되더라도 그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보안기술을 의미한다. 주요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경우,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암호화 등의 안전한 보호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먼저 암호화의 대상과 관련하여,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한다면 보호 수준은 높아질 수 있으나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이 매우 커진다. 이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서는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로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만을 정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제7조 제1항). 단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제7조 제5항)

다음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는 암호화의 기준에 대해, 전송시의 암호화와 저장시의 암호화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개인정보 저장시에는 다시 그 저장대상 개인정보가 어떤 것인지, 저장 구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차등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암호화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제7조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제7조 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제7조 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제7조 제4항).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또한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단순한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는 경우에도 손쉽게 유출·도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6항). 다만 별표 유형1 및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담당자 등의 접속기록은 개인정보의 입·출력 및 수정사항, 파일별·담당자별 데이터접근내역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로그 파일을 생성하여 불법적인 접근 또는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는 접속기록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제8조).

5)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이른바 ‘악성 프로그램’이란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고자 악의적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 및 실행 가능한 코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악성 코드라고 불리기도 한다. 여기에는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 인터넷 웜(Internet Worm), 트로이 목마, 스파이웨어 등의 형태가 있다. 이를 예방·방지하기 위해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3.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6)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관리용 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주 문제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안전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서 확보조치 기준 제10조)

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 악성프로그램 감염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다 물리적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물리적 안전조치

1.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2. 잠금장치의 설치 등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자료보관실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나, 개인정보 저장매체를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리적 저장장소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절도, 파괴 등 물리적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제3항)

라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재난 발생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2조)

2. 시스템구축 등의 지원(영 제30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유출 여부를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원격 점검시스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기술지원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3. 안전성 확보조치 세부기준의 제정·고시(영 제30조제3항)

해킹 등 개인정보침해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3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2011. 9. 30.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고시도록 하여 사업자가 보안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있고, 「신용정보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용정보이용·제공자 등은 각각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p>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p> <p>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p>
--------	---

신용정보법	<p>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들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 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	--

5.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 (제29조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3조제1호)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제29조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6호)

6. 질의 응답

Q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PC에 설치하였다. 더 이상의 보호조치는 필요 없는가?

A 사업자는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백신 소프트웨어는 최초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자동업데이트 기능 사용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코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지문 및 홍채 입력시 이미지가 아닌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문, 홍채의 코드값(식별값)을 입력·저장하는 경우 코드값이 바이오 정보에 해당되므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A 바이오 정보를 코드값(식별값)으로 저장하여 코드화 방식이 다른 시스템에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해당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오 정보에 해당하므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제30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법률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의 파기애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 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신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

표준지침

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삽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개인정보의 파기애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신의 내부 방침을 정해 공개한 자율규제 장치의 일종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된다.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제1항, 영 제31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10개 항목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9. 개인정보의 파기애에 관한 사항
10.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에 언급한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내부방침으로 정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한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면 된다.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개인정보파일 예컨대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공개하게 할 경우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직원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외부에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인트라넷, 사업장 등에 게재하여 직원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등록이 면제된 개인정보파일(법 제32조제2항)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죄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 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기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개인정보주체가 기재사항 각각의 의미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재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18조제1항). 이에 따라 정보주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쉽게 이해하고 개인정보의 제공 내역 등에 관하여 혼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1항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제1원칙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6조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최소수집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명시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표준지침 제18조제2항).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제2항, 영 제31조제2항,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한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영 제31조제2항). 이 경우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표현인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 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20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은 온라인·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영 제31조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함)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때에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20조제2항).

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제2항, 영 제31조제2항, 제3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경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영 제31조제2항). 이 경우에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21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가급적 변경의 이유와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교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어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계약서, 청구서, 간행물, 소식지, 홍보지 등에 지속적으로 실어 보내거나 관보·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영 제31조제2항).

5.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적 효력(제3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 시행령, 고시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반에게 공개한 것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상 의무 이행에 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 제정·권장(제4항)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영세 업종이나 취약분야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에 대하여 표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는 없다.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과는 내용이 상이하므로,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p>제27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처리방침에 포함 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p>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	---

8.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3항제7호)

제31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법률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

표준지침

- 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교육)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설 운영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내용
2.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초 당해연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등의 단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리적·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도 개인정보 법규 준수, 유출 및 오남용 방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율적 규제 장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직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임원 내지 부서장급의 책임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격요건(제1항, 영 제32조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제1항). 분야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영 제32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영 제32조제2항)

1. 공공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마. 시·도 및 시·도 교육청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바. 시·군 및 자치구 :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공공기관 외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이로 인한 제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이거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제2항, 영 제32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이 같은 업무는 총괄책임자로서 지는 업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분야별로 개인정보보호관리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등을 두어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법 제31조제2항, 영 제32조제1항)

1.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의 파기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표준지침 제22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공개 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의무(제3항, 제4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형식적으로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실질적인 권리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리(제3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전사적인 책임을 지는 자이므로 소속 부서에 관계없이 조사를 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제4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라 함은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속해 있는 해당 기관·단체의장을 말한다.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신분보장(제5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독일, 캐나다 등 다수 국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불이익 방지 및 신분보장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인력 등을 지원하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5.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등의 지원(제6항, 영 제32조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자신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정부의 정책과 방침을 정확히 전달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조직 내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표준지침 제23조), 이를 위하여 매년 초 당해연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교육계획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등의 단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표준지침 제24조제2항).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리적·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는 등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24조제3항).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지정하였을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개인정보 관리·보호인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에 규정된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업무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가 상이하므로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추가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p>제2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정보통신망법 시행령」</p> <p>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등)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란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천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p>
신용정보법	<p>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 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4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⑦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선임된 고객정보관리인이 제6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본다.

7.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지정 (제31조제1항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3항제8호)

8. 질의 응답

Q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는데, 어느 정도의 직급을 책임자로 지정하면 되는지 알고 싶다.

A 회사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이거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하고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사항을 자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Q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해당 임원의 전화번호·이메일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였는데, 일반적인 상품·서비스 문의같이 사소한 상담까지도 모두 담당 임원의 전화로 걸려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A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직통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책임지고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면 된다. 또한 실무를 맡고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도 된다.

Q 별도의 직원은 없고 부인과 함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꼭 지정해야 하는가?

A “상시 종업원이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대표자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될 수 있다.

제32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법률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 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3.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4.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5.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 제32조제1항 및 이 영 제33조에 따른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조(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②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34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따른다.

제49조(적용대상) 이 장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제50조(적용제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 가.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라.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지침

- 마.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3.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 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 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4.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5.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업무 취급을 위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제5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특별자치시도,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은 교육부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을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의 확인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에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상위 관리 기관의 확인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4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학교 포함) 등 전국적으로 단일한 공통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② 전국 단일의 공통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은 해당 중앙부처에서 등록·관리해야 한다.

제5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59조에 따라 개인

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한다.

제57조(등록·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53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 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공공기관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 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59조(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 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다.

- 제61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전안전부는 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삭제 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기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파일 보유·변경시 사전협의제’를 규정하고 있었다. 즉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보유목적 등 일정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 사항은 연 1회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전협의 제도는 각급 공공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협의기준이 일정치 않은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를 등록·공개하도록 하였다.

1.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제1항, 영 제33조)

가 파일 등록 의무자(제1항)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은 공공기관만 부담하는 의무이며 민간 부문의 기업·단체 등은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표준지침 제49조).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개인정보파일 등록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것은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다.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특별자치시도,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에 직접 등록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을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은 교육부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51조).

여기서 “통하여 등록한다”는 의미는 상위기관에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등록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등록 방법 및 절차 (표준지침 제52조, 제53조)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등록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행정자치부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교육부의 확인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에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상위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등록 사항(제1항, 영 제33조)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제1항, 영 제33조). 또한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33조제4항)

파일 등록사항(법 제32조1항, 영 제33조)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8.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영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라 등록 시한(영 제34조제1항)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개인정보파일 등록 제외(제2항, 표준지침 제50조)

국가안보, 외교상 비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범죄수사 등 공익 달성을 위한 개인정보파일은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다 공익에 부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정보파일은 등록·공개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가 헌법기관의 개인정보파일(제32조제6항, 표준지침 제50조제1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이를 기관의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이 법 및 표준지침에 따른 등록·공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개인정보파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할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법 제32조제2항).

등록면제 개인정보파일(법 제32조제2항)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죄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 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예시 1 | 공공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파일

- 임직원 전화번호부, 비상연락망, 인사기록파일 등
- 공공요금 정산, 회의참석자 수당지급, 자문기구운영 등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 예시 2 | 다른 법령에 따른 비밀 개인정보파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①공공기관은 비밀 기록물을 생산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비밀 기록물의 원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I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2. II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III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다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다른 공익적 가치의 실현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서 법 제58조제1항은 국가안전보장, 공중위생 등 다른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의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면제 개인정보파일(표준지침 제50조)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라 그 외에 등록 의무가 적용 제외되는 개인정보파일

공공기관에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생성·운용되는 자료는 대부분 시간대별로 일정한 장소를 계속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이는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파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촬영한 자료는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파일 역시 등록·공개 의무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중 공공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금융기관이 ‘금융업무 취급’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도 이 법에 따른 등록 의무 적용이 배제된다.

3.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대한 개선권고(제3항, 표준지침 제57조)

개인정보파일은 그 등록과정에서 등록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흠결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토결과에 따라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먼저, 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표준지침 제57조제1항).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도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사항을 흠결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제32조제3항). 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파일 등록시 개선 권고 사항 〉

1.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5. 기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을 일반 정보주체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표준지침 제57조제4항).

4. 개인정보파일의 관리(표준지침 제58조~제61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대장(표준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5. 개인정보파일의 공개(제4항, 영 제34조제2항)

등록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궁극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그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가 어떤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열람 및 정정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개인정보파일의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영 제34조제3항).

현재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시스템(www.privacy.go.kr)’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각 공공기관이 등록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각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 등록업무를 손쉽고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32조의 2 | 개인정보보호 인증 평가

법률

제32조의2 (개인정보보호 인증)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는 전문성과 경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4조의2(개인정보보호 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의 수립 등을 포함한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 대상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목록
2.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3.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보호대책 구현과 관련되는 문서 목록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는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원이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 개인정보보호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3(개인정보보호 인증의 수수료) ①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개인정보보호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 인증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 심사원의 수 및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4(인증취소)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6(개인정보보호 인증 전문기관) ①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 가.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
 -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지정과 그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고시

제34조의8(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증 심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인증 심사와 관련하여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한 경우
3. 개인정보보호 인증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교육과정의 이수,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란 신청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심사 기준에 부합하다고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2 제5항에 따라 행정 자치부가 정하는 전문기관 및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제3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수행 요건·능력을 별표 2의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증심사”란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별표 5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이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이라 한다)”란 인터넷 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6. “인증심사원”이란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고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신청기관”이란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8. “최초심사”란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서 다시 인증을 신청한 때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9. “사후심사”란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수립하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 유효기간 중에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10. “갱신심사”란 유효기간 만료로 다시 인증을 신청한 때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제3조(인증기관 등)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심사의 실시 및 인증·인증취소
 2. 인증서 발급, 인증마크의 교부 및 인증사실의 관리
 3.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4. 인증심사기준 및 인증심사기법의 연구개발
 5.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정, 교육·승급 및 인증심사 경력의 관리
 6. 인증제도 관련 연구 및 동향 조사·분석, 그밖에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협의하여 지정대상 기관의 수, 업무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심사원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별표 1의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① 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요건·능력을 심사하여 지정 대상 기관의 순위를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의하여 업무수행 요건·능력을 심사하고 지정에 필요한 수만큼 접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선별한다.

④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의하여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인증 기관으로의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⑤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5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의 인증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실적 보고서에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기관 재지정) ①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정자치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협의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 등) ① 인증심사원의 등급별 자격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 수행능력에 따라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①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 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진흥원이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①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서류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서류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청받은 자격 신청자는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심사원 자격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통과한 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① 인증심사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 부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자격 유지를 위해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인증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이 인정하는 대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자격 유효기간이 3년간 연장된다.

제11조(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2. 인증심사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관련 법령의 근거나 신청기관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경우

3. 인증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한 경우

제12조(신청기관의 사전 준비사항) 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심사 실시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를 위한 관련 문서 및 증거자료 등의 열람제공

2. 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시설·장비·기자재 등의 확보
3. 그밖에 인증심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13조(인증 신청 등) ①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 밖의 사업자(유형1)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유형2)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유형3)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유형4)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인증의 대상을 특정 서비스·업무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 및 인증심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범위 내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목록
 2.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3.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보호대책 구현과 관련되는 문서 목록
- ④ 신청기관은 인증범위 및 일정 등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신청기관의 인증심사 준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심사 계약의 체결) 신청기관은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과 협의한 후 심사기간, 심사인원, 인증수수료, 인증범위, 인증 정지 또는 취소 등을 포함하는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한다.

제15조(인증수수료의 산정) ① 인증 수수료는 별표 4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인증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같은 인증대상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신청기관이 있는 경우 또는 하나의 신청 기관이 다수의 인증대상에 대하여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심사 일수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 ④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신청기관의 인증범위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추가 또는 조정된 경우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청기관은 최초심사,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 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인증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신청기관은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 수수료를 인증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기준) ① 신청기관의 인증심사 기준은 신청유형별로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신청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규모,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심사 항목을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인증심사팀 구성)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인증심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팀 구성 시 심사팀장은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 소속의 심사원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컨설팅에 참여한 인증심사원 또는 신청기관의 소속직원은 인증심사팀의 구성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8조(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 ① 인증심사는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한다.

② 서면심사는 별표 5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지침, 절차 및 이행의 증거자료 검토, 개인정보보호대책 적용 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관리적 요소를 심사한다.

③ 현장심사는 서면심사의 결과와 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 면담, 관련 시스템 확인 및 취약점 점검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요소를 심사한다.

④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최대 9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내에 보완조치를 완료하도록 신청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보완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19조(심사중단)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고의로 인증심사의 실시를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신청기관의 규칙 사유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증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3. 인증심사 후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최대 9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및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중단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의 인증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제29조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따라 인증심사를 재개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제20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최초심사 또는 간접심사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사후심사 결과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 그 결과의 적합성 여부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29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위원회는 1명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변호사, 교수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위원이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1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요구로 개최하되, 회의마다 위원장과 인증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인증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제20조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④ 인증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에 참여한 인증심사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터넷 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2조(제척·기피·회피) ① 인증위원회 위원은 신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기관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3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기관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신청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 발급 이외의 전에 대해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제출 받은 때에는 신청기관에게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인증서 관리 및 재발급)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발급된 인증서의 인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 인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취득한 자가 주소, 업체명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변경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의 표시 및 홍보)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7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의 유형과 인증범위 및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사후심사) ① 인증 취득기관은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중 연 1회 이상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사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후심사는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여 진행한다.

제27조(갱신심사) ① 인증 취득기관은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갱신심사는 제4장, 제5장을 준용하여 진행한다.

③ 인증 취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지 않고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인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28조(인증의 취소)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때는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인증 취득기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심사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갱신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인증 받은 내용을 홍보하면서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형과 인증범위

및 유효기간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누락한 경우

5.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 인증 취득 기관에 통지하고, 제23조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를 회수한다.

제29조(이의신청) ① 신청기관 또는 인증 취득기관이 인증심사 결과 또는 인증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기관 또는 인증 취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유지 등)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인증심사원 등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인증심사원 등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인증에 관련하여 일체의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인증업무 지침)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제도의 의의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제32조의2 제1항).

특히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따로 운영하던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 제도(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와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 제도를 2016년1월부터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도의 명칭은 제도가 먼저 도입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사용하고 있다.

2.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 운영 주체

가 개인정보 보호인증 전문기관

개인정보 보호인증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또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을 보유하고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제5항, 영 제34조의6).

인증기관은 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수립·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기간에 발견된 결함사항의 보완조치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기관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한편, 인증취소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인증기관은 인증 위원회 운영,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인증제도 관련 연구 및 동향조사, 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나 인증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위원회는 인증심사 결과(최초심사 또는 갱신심사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인증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변호사, 교수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 인증심사원

인증심사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고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 수행능력에 따라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구분된다. 인증 심사원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자격 기준
심사원보	○ 인증심사원 학력 및 경력요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
심사원	○ 심사원보 자격 취득자로서 인증심사에 4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20일 이상인 자
선임 심사원	○ 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3회 이상 심사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자

인증심사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기본요건 또는 경력 대체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라 신청기관

신청기관은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기 위해 이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신청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반드시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담당기관별 책임 및 역할 〉

담당 기관	책임 및 역할
정책기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심사 신청 접수 인증심사 수행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인증서 부여 및 인증마크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관리 인증심사팀 구성·운영
인증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심사 결과 심의·의결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인증 취소에 대한 심의·의결
인증심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심사 실시 인증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신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 취득 및 유지관리

3. 인증심사 대상

가 신청기관의 유형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해당하는 유형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 밖의 사업자(유형1)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유형2)
-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유형3)
- 4)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유형4)

나 인증기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은 개인정보보호 관리과정(16), 생명주기 및 권리보장(20), 개인정보보호조치(50) 총3개 분야 86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적용 유형별 인증기준			
	공공기관	대기업·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정보보호 관리과정(16개)	16	16	15	4
생명주기 및 권리보장(20개)	20	19	19	19
개인정보보호조치(50개)	50	48	40	24
총 계	86	83	74	47

기준은 신청기관 유형별(공공기관, 대기업·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소기업, 소상공인)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된다. (자세한 인증기준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5 참조)

유형	항목수	적용기준
공공기관	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요구사항 ▶ PIMS 수립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흐름분석을 통한 위험분석 및 위험관리
대기업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 참여 및 의사결정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보호대책
중소기업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요구사항 ▶ PIMS 수립 및 이행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보호대책
소상공인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요구사항

4. 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i) 준비단계, (ii) 심사단계, (iii) 인증단계, (iv) 사후관리 단계로 이루어진다.

- ① 준비단계 : 인증 신청서 접수, 예비점검, 계약 협의 및 체결
- ② 심사단계 : 인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서면 및 현장 심사
- ③ 인증단계 : 인증심사의 결과를 근거한 인증 적합성 심의
- ④ 사후관리단계 : 인증취득 후 매년 유지 상태에 대한 점검

가 준비단계

1) 구축 및 운영

신청기관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한 증적을 준비해야한다. 특히 신청기관은 인증 받고자 하는 인증범위를 정할 때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Life-Cycle(수집·보유·이용·제공·폐기)에 따른 개인정보 흐름을 고려하여 증적을 준비하는 한편, 해당 증적에는 모든 서비스, 인력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증 받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이용자 중심의 대외 서비스만 포함할 것인지 임직원이 이용하는 내부 서비스 까지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인증심사 신청 및 접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신청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 ① 인증신청공문
- ②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
- ③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
- ④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범위서
- ⑤ 법인등기부등본
- ⑥ 인증신청기관이 인증수수료 할인 대상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 양식은 홈페이지(pims.or.kr) 참조

인증신청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의 미비로 인증기관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서류를 재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심사부터 인증심사까지 예비점검, 계약, 심사원 모집 등 업무처리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희망심사일 기준 최소 6주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http://pims.kisa.or.kr>)로 안내하고 있으며, 이메일(pims@kisa.or.kr)을 통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3) 예비 점검

예비점검이란 인증기관의 심사팀장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개인정보시스템의 규모, 개인정보 흐름도, 위험분석보고서, 대책명세서 등 인증심사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비 유무, 인증심사 준비상태 및 운영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점검 기간에 신청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인증심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심사일정을 조정한다. 특히 신청기관의 담당자는 인증범위의 설명과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기관의 심사팀장은 신청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 또는 담당자와 예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인증범위를 고려하여 심사일정을 확정한다.

4) 계약 및 수수료 납부

인증기관은 신청기관과 인증의 범위, 심사 기간, 심사 인원, 심사팀 구성, 인증 수수료(홈페이지 참고) 등을 협의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기관은 인증심사계약이 완료되면 계약에 따라 정해진 심사수수료를 인증심사 이전(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은 최초심사,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 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인증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증심사 수수료는 신청기관이 인증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인증심사 신청접수 및 계약, 예비점검, 심사원 자문료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의미한다. 인증심사 수수료는 직접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기술료의 합으로 산정한다.

나 심사단계

1) 인증심사(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인증심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인증심사팀 구성 시 심사팀장은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 소속의 심사원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한편 신청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컨설팅에 참여한 인증심사원 또는 신청기관의 소속 직원은 인증심사팀의 구성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인증심사는 개인정보보호 관리과정과 생명주기 및 권리보장, 개인정보보호대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기준을 신청기관이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하는 것으로, 신청 기관을 방문하여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서면심사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운영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책, 지침, 절차 및 이행의 증적자료 검토, 개인정보보호대책 적용 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관리적 요소를 심사한다.

현장심사는 서면심사의 결과와 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 면담, 관련 시스템 확인 및 취약점 점검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요소를 심사한다. 인증기관은 인증 심사 후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게 보완조치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인증심사 보완조치 제출

신청기관은 보완조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완조치를 하고 보완조치 사항에 대해 보완조치 내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기관이 신청기관이 제출한 보완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거나, 신청기관 스스로 보완조치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문을 통해 최대 60일까지 보완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4항) 보완조치 기한 연장 시 보완조치요약서 및 완료된 결합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내역서를 공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최대 90일의 보완조치 기간은 심사팀장이 보완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점검까지 끝낸 시점까지를 포함한다.

인증기관은 신청기관의 보완조치 결과를 문서 및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하며, 보완조치 확인 결과를 보완조치 완료확인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보완조치 확인을 마무리한다. 보완조치 내역은 조치전·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인증심사 유의사항 | 심사중단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i) 신청기관이 고의로 인증심사의 실시를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i) 신청기관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증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iii) 인증심사 후 보완조치를 최대 9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또는 (iv) 천재지변 및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다 인증단계

1) 인증위원회 심의 · 의결

최초 또는 갱신심사의 경우 보완조치가 완료된 기관에 대하여 인증기관은 인증심사팀이 수행한 심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및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인증위원회에 심사 결과보고서를 상정한다.

인증위원회는 인증기관의 요구로 개최되며 인증심사 기간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판단의 적합성과 보완조치 확인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인증적합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의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보완조치사항을 전달받은 신청기관은 해당사항의 보완 완료 후 심사팀장에게 수정된 “보완 조치 내역서”를 제출하고 다음 회기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인증부여 여부를 의결받아야 한다. 인증위원회에서 의결이 완료되면 인증위원장은 인증심의 결과서와 심의의견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인증의 효력은 3년이다(법 제32조의2 제2항).

2) 인증결과 통보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신청기관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증취득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 동안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후관리 단계

1) 사후심사

사후심사란 인증취득기관이 수립하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수준에서 지속적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사후심사는 인증발급일 기준으로 매 1년 이전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인증유효기간 내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2) 갱신심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인증취득기관이 인증의 효력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갱신심사를 신청하여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심사 신청은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만일 인증취득기간이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지 않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인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5. 인증의 표시 및 홍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취득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인증표시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인증명판 제작방법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 6 이하 참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사실의 홍보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의 사실을 과장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한편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에 대한 홍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인증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유형, 유효기간, 인증범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인증유형을 기재할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신청기관 유형 중 인증받은 기관에 해당되는 유형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인증취소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때는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인증 취득기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 심사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갱신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인증 받은 내용을 홍보하면서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형과 인증범위 및 유효기간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누락한 경우,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 인증 취득기관에 통지하고, 제23조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를 회수한다. 신청기관 또는 인증 취득기관이 인증심사 결과 또는 인증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3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

법률

-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협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영향평과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국회, 법원, 현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현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⑧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령

-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2. 개인정보 보유기간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법인
 - 가.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축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의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 보호 대책의 제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 보호산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2. 별표 1에 따른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3. 다음 각 목의 사무실 및 설비를 갖춘 법인
 - 가.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 나.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3.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평가기관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평가기관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 법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시행규칙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영향평가서에 제3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 운용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
 2.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요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영향평가 수행 인력 및 비용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 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③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2.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4호서식
 -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현황: 별지 제5호서식
 3. 영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④ 법 제33조제6항 및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⑤ 법 제33조제6항 및 영 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 기관의 장이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공공기관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대상시스템”이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라 한다)”이란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관 지정절차) ① 영 제37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절차는 지정신청 공고, 지정신청 서류 접수 및 검토, 현장실사, 종합심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보 등을 통해 15일 이상 지정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 관리가드
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
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기술자산 보유목록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현장실사와 종합심사를 통해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증하고,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평가기관을 확정한다.
- ⑥ 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 ⑦ 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3조에 따른 지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개인정보보호 연구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체, 기관 또는 단체(협회, 조합)에서 8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지정심사위원회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한 법인의 자격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토한다.

- ③ 지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지정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소집한다.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 ① 영향평가 수행인력은 일반수행인력과 고급수행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일반수행인력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영 제37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 자격을 갖춘 사람
 - 나. 한국CPO포럼이 시행하는 개인정보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급수행인력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제1호의 일반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후 5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수행인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영향평并将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영향평가 전문교육의 운영 및 실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 ②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영향평가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한다.

- ④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계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수 여부에 따라 전문인력 인증서를 갱신하여 교부한다.

1.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매 2년이 경과한 경우
2. 법령 또는 평가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4항의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인증서를 갱신하지 못한 경우 기존 인증서의 효력을 상실된다.

제7조(영향평가 수행능력심사의 세부평가 및 지정기준) ① 평가기관의 영향평가 수행 능력심사의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1과와 같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영향평가 수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심사결과가

총점 75점 이상인 경우 신청한 법인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사후관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영 제37조제1항의 평가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영 제37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별표 3과 같이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1. 영향평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2. 영향평가 수행 인력에 대한 보호대책
3.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4. 일반 관리적 보호대책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영 제37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이전에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평가절차)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 준비, 영향평가 수행, 이행 단계로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1.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영향평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평가 기관을 선정한다.
2. 영향평가 수행 단계에서는 평가기관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3. 이행 단계에서는 영향평가서의 침해요인에 대한 개선계획이 반영되는지를 점검한다.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영 제38조제1항의 영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영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대상기관이 1년 이내에 다른 정보시스템의 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평가항목) ① 평가기관은 별표 4에 따라 적합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영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이 당해 연도에 1년 이내에 이미 평가받은 항목은 그 변경이 없는 때에는 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

② 별표 4에 명시되지 않은 특정 IT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영향평가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영향평가서의 제출)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대상 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 영향평가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영향평가 수행안내서) 행정자치부장관은 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평가항목 등을 구체화하는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영향평가서 개선계획의 이행)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 현황을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을 새로 구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파일의 내용에 법령 위반 소지는 없는지 또는 해당 파일에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잠재되어 있지는 않는지 등을 미리 조사·평가하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정보주체의 신뢰를 확보하고 개인정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 된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의(제1항)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Privacy Impact Assessment)란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시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잠재되어 있지 않는지를 조사·예측·검토하고 개선하는 제도이다.

법 제33조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제1항).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은 평가대상 시스템 활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은 「2002년 전자정부법」 제208조에 전자정부 구현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명문화 하였고, 캐나다도 2002년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밖에 뉴질랜드·홍콩·호주 등에서도 공공·민간부문에 대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권장하고 있다.

〈 국가별 PIA제도 비교 〉

구 분	미 국	캐나다	뉴질랜드
시행대상	연방정부기관	연방정부기관 및 일부 지방정부	민간·공공 자율
관련근거	전자정부법(2002), 관리예산처 지침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침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침
평가주체	사업 수행기관 (자체평가)	사업 수행기관 (자체평가)	외부평가 중심
감독 및 평가결과 제출처	관리예산처	프라이버시 감독관	-
강제성 유무	의무사항	의무사항(의료분야)	권고사항
평가결과 활용	웹사이트, 관보, 그 밖의 다른 수단으로 공개	웹사이트, 책자를 통해 두 개 이상의 공식 언어로 요약해 공개	-

2.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영 제35조)

공공부문의 경우 전자정부 추진으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시스템화하여 상호 연동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으므로 행정정보 공유 및 전자정부 추진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구축·운용·변경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한하여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영 제35조)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에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2.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 :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3. 일반적인 개인정보 파일 :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에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4. 영향평가를 받은 후 개인정보 검색 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 해당 개인정보파일 중 변경된 부분

3. 영향평가의 실시방법 등(제2항, 영 제36조)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이란 영향평가 수행에 필요한 업무수행실적, 전문인력, 안전한 사무실·설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지정절차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 영향평가 시 평가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주관적인 견해를 배제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거짓으로 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평가기관은 다른 법인(업체)에게 평가기관의 상호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향평가시 고려사항(법 제33조제2항, 영 제36조)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5. 개인정보 보유기간

4.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의 활용(제3항 및 제4항)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제3항).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제4항).

5. 영향평가 활성화 기반 마련(제5항, 영 제37조)

가 전문가 육성 등 활성화 기반 마련(제5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영 제37조)

1) 평가기관 지정요건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정은 사실상 ‘허가’의 의미를 갖는다. 즉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법인의 신청이 있으면 무조건 지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 정보보호 컨설팅,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시 정보보호컨설팅, 정보시스템 감리시 정보보호 컨설팅 등의 영향평가 수행실적이 2억원 이상이며, 10인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평가기관 지정요건(영 제37조제1항)

1.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법인
 - 가.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축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 대책의 제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 2. 별표 1에 따른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 3. 다음 각 목의 사무실 및 설비를 갖춘 법인
 - 가.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 나.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 도입이나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등 시스템의 구축·운영·변경 등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보보호컨설팅 업무란 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정보자산의 취약점 분석 등을 통해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로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축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로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 보호 대책의 제시 업무,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가 포함된다.

정보시스템감리업무란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업무를 말한다.

평가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전문인력은 일반수행인력과 고급수행인력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수행인력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가 해당된다(영향평가 고시 제5조).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전문가(SIS: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으로서,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기술 및 실무경험을 갖춘 능력을 검정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시행된 자격제도이다.

-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른 감리원(ISA)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시스템감리사(ISA : Information Systems Auditor)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으로 국가 주요 정보사업에 대한 감리체계의 확립과 실제 감리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 실시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 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통신 기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정보관리기술사·정보처리기사·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정보통신기술사·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개인정보 취급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용·유지·보수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는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ISACA)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정보시스템 지배, 통제, 보안 및 감사 분야의 공인 전문 자격증'으로 경영 전략과 조직관리, 정보시스템 기반 기술, 정보시스템 보안 및 위험관리, 정보 시스템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 BPR과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는 ISC2(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으로 이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기업이 견고한 보안 수행을 구현하고, 위험분석을 수행하고, 필요한 대책을 파악하고, 그리고 전체 조직이 사설,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정보를 보호하는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적 능력, 지식, 경험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격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의 임직원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암호기술, 인증기술 등을 말한다), 시스템·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해킹·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을 말한다) 또는 응용서비스 보호(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 분석, 설계, 개발, 운영, 유지·보수, 감리, 컨설팅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한국CPO포럼이 시행하는 개인정보관리사(CPPG)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 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인정보관리사(CPPG)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대처 방법론에 대한 지식 및 능력을 검정하기 위해 개발·시행된 자격제도로써 한국CPO포럼이 주관하는 자격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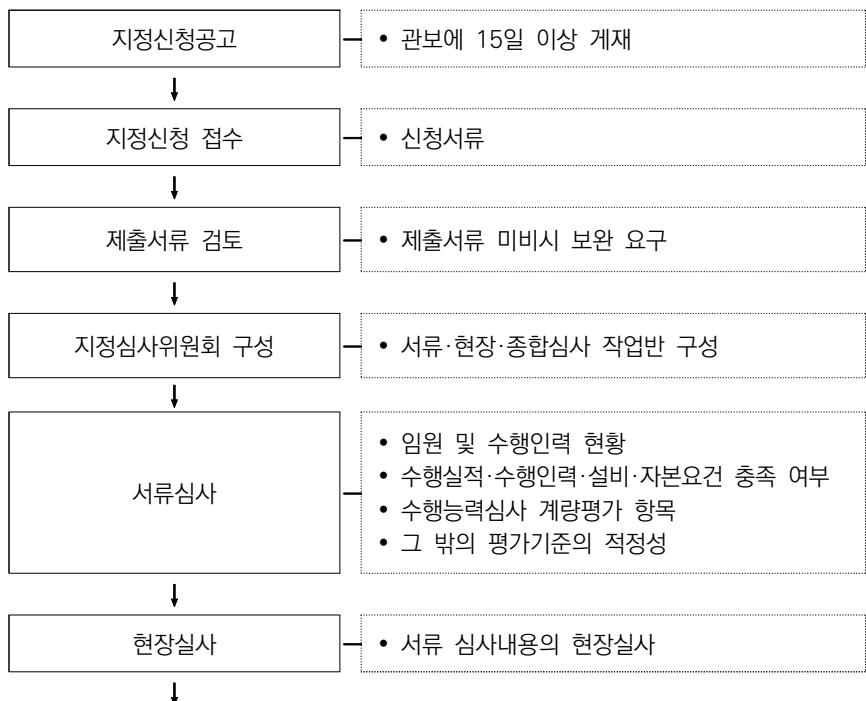
고급수행인력의 자격은 ① 일반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후 5년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관리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정보통신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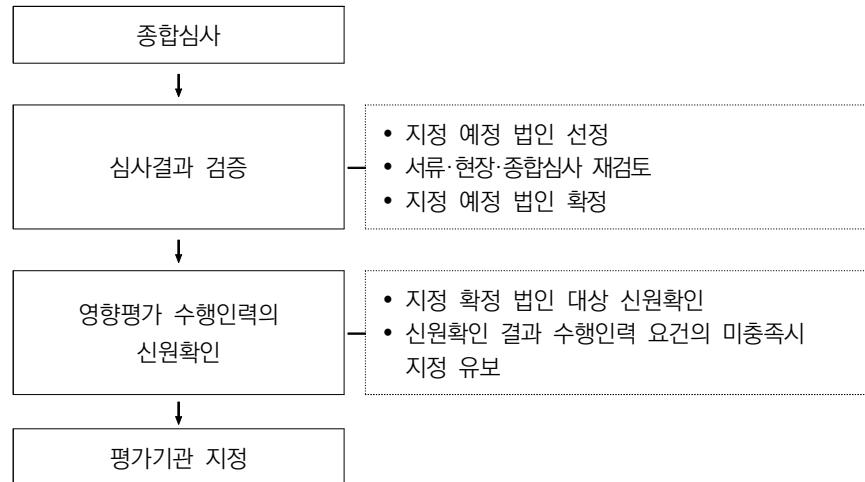
한편 영향평가 수행인력은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문교육이수자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영향평가 고시 제5조제2항, 제6조).

2) 평가기관 지정 절차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절차 〉

① 지정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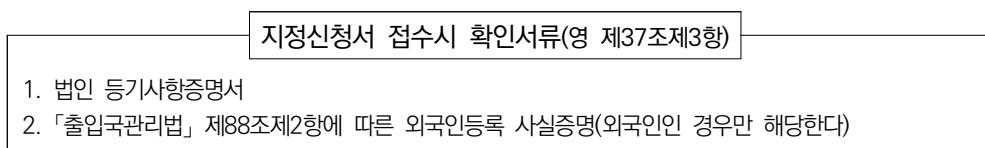
행정자치부장관은 관보에 지정신청 공고에 대한 사항을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은 지정 신청 목적,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신청 서류, 신청방법, 접수 시기 및 문의처 등 접수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포함한다(영향평가 고시 제3조제2항).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정관,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규칙과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서류 〉

시행규칙에 따른 제출서류	고시에 따른 제출서류
①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현황	①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명세서 ②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을 관리카드 ③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④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 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⑥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기술자산 보유목록

② 지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



지정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도록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청법인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 지정심사위원회는 지정심사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15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구성·위촉하며, 지정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개인정보보호 연구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체, 기관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8년 이상 개인정보보호 유관 분야에 근무한 사람
-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정심사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지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지정심사위원회는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자, 연구자, 실무자, 유관기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되며, 서류심사·현장실사·종합심사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검증한다. 지정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중심으로 평가기관의 적격 여부, 수행실적·수행인력·자본·설비 등의 지정요건 층족 여부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적정성 및 준수여부 등 확인·점검할 수 있다. 지정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책임자의 자질 및 경험, 업체의 컨설팅 방법론 등 업무수행능력 요건 등을 심사한다.

④ 평가기관의 영향평가 수행능력 심사(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정심사위원회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기관이 지정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청법인의 객관적인 업무수행능력이 총점 75점 이상을 취득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종합심사를 거쳐 평가기관으로 지정한다. 영향평가 수행능력 심사 세부 평가기준은 정량평가(60점)와 정성평가(40점)로 구분되며,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정량·정성적 측면에서 ① 경험, ② 전문화 정도, ③ 신뢰도, ④ 영향평가 수행역량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경험(25점)은 지정신청법인이 최근 5년간 수행한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15점)과 최근 2년간 수행한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영향평가 실적(1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 최근 5년간의 영향평가 수행실적의 평가지표는 계약금액 총액으로 설정하여 최근 영향평가 수행실적의 계약금액을 모든 합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점 부여하고, 5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을 5억원으로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부여한다.

전문화 정도(25점)은 고급수행인력 수(15점)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교육 인증시험 합격자수(10점)로 구분하여 평가된다. 즉 고급수행인력은 일인당 1점씩 배점하여 최대 15점까지 부여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교육 인증시험 합격자수는 10점에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인증시험 합격자수를 전체 평가기관 인증시험 평균 합격자 수로 나눈 개인정보영향평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부여한다.

신뢰도(10점)은 신용평가 등급에 근거하여 평가하되, 기업신용평가서의 제출하는 경우 역시 신용평가 등급에 근거하여 평가된다.

정성평가와 관련하여 영향평가 수행역량(40점)은 영향평가 수행실적의 질적 평가(20점), 영향 평가 수행인력의 자질 및 경험(10점), 지정신청법인의 자체 개인정보영향평가대책(10점)으로 평가된다. 영향평가 수행실적의 질적 평가는 영향평가 품질제고 활동, 영향평가 수행 대상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자질 및 경험은 신청서류, 현장실사 등을 통해 평가한다.

지정신청법인의 자체 개인정보 영향평가대책은 지정신청법인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 등을 검토하여 평가하며 위험분석의 타당성,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적절성,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효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외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최대 5점 가점), 지방소재 기업, 즉 본사 위치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위치하는 경우(최대 5점 가점)와 최근 3년간 조달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경우(제한월수 1개월 당 0.5점 감점)는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 >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 기준
I. 정량 평가 (60)	1. 경험 (25)	최근 5년간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	15	계약금액 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억원 이상: 배점의 100% • 5억원 미만: 배점의 x% ※ $x = (\text{계약금액총액}/5억원) \times 100$
		최근 2년간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	10	수행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건 이상: 배점의 100% • 5건 미만: 배점의 x% ※ $x = (\text{수행건수}/5건) \times 100$
	2. 전문성 (25)	고급수행인력의 수	15	인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수 × 1점(최대 15점)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교육 인증시험 합격자 수	10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점 ×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인증시험 합격자 수 / 전체 평가기관 인증시험 평균 합격자 수*) ※ 평가기관 인증시험 합격자수 평균
		3. 신뢰도 (10)	신용평가등급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 등급에 근거하여 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1의 불임기준
	II. 정성 평가 (40)	영향평가 수행실적의 질적 평가	20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평가 품질제고 활동 • 영향평가 수행 대상기관 • 영향평가 수행방법의 우수성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자질 및 경험	10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류, 현장실사 등을 통해 평가
	영향평가 수행역량 (40)	지정신청법인의 자체 개인정보영향평가대책	10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분석의 타당성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적절성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실효성
III. 기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가점	확인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 확인기업: 가점 5점
		지방소재(수도권제외) 기업	가점	확인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 위치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위치하는 경우 : 가점 5점
		최근 3년간 조달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가 제한을 받은 기간	감점	입찰참가 제한월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월수 1월당: 감점 0.5점

비 고

- 위 표 각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세부 평가기준 중 신뢰도 항목은 기업신용평가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점기준은 [불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 '최근'의 기산일은 지정공고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⑤ 지정서 교부 및 고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증하고 수행인력의 신원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① 평가기관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과 ②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해당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평가기관 지정 취소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이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 지정취소 사유(영 제37조제5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지정요건 변경 등의 신고의무(영 제37조제6항)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지정요건 등 변경 신고의무

지정된 평가기관은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등의 사유(영 제37조제6항)

1. 제1항 각 호(평가기관 지정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4항제1호(평가기관 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평가기관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상당한 수준의 경험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적정 수준의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후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지정된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실평가 업무수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후 인력 변동, 휴업·폐업, 양도·양수, 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3)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절차(영향평가 고시 제9조)

영향평가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영 또는 변경하거나 연계하려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침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대상기관이 대상시스템을 구축·운영 또는 변경하거나 연계하려는 경우 사업의 방향 설정 및 업무 정의 단계, 시스템 제안 단계, 시스템의 예비 설계 및 모형 설정 단계 등에서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영향평가는 대상시스템의 개발 또는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영향 평가의 계획에 따른 실제 구현 형태를 대상으로 위험 분석 및 개선방향이 도출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 〉



사전준비단계는 ① 영향평가의 필요성 검토 ② 영향평가 수행주체의 구성 ③ 평가수행계획의 수립 순으로 진행된다. 영향평가의 필요성 검토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신규 수집·이용·연계 또는 취급절차상의 변경 등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사전평가 질문서’ 작성을 통해 영향평가 필요성을 판단한다.

영향평가 수행주체는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기관 내의 유관 부서, 외부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평가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있도록 업무체계(영향평가팀)를 마련하여 구성한다. 영향평가팀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정보화사업(구축·운용·변경·연계하려는 시스템) 담당자, 외부 컨설턴트(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의 영향평가 수행인력) 및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평가수행계획은 대상기관의 시스템개발부서 또는 사업부서(영향평가 주관부서)에서 평가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내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세부적인 평가절차 등을 마련하여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평가수행계획서에는 대상시스템의 개요, 개인정보 수집목적, 취급규모, 개인정보 수집 현황 등의 개인정보파일 개요,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다.

〈 평가수행계획서의 작성방향 〉

목차	주요 내용	참고자료
1. 사업 개요	• 대상시스템명, 사업목적 및 일정, 주요내용 등	• 제안요청서(RFP) • 사업계획서 등
2. 개인정보 개요	• 개인정보 수집목적, 취급규모, 개인정보 수집현황 등의 개인정보파일 개요	
3. 평가 목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필요성 및 추진배경 등	• 필요성 검토 질의서
4. 평가기관 및 평가팀 구성	• 평가기관 선정 및 영향평가팀 구성	•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5. 평가 기간	• 영향평가 착수부터 완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6. 평가 절차(방법)	• 영향평가 절차, 단계별 주요 수행사항 및 기간 등	
7. 주요 평가사항	• 중점적으로 평가 되어야 하는 사항	
8.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영향평가수행안내서에서 표준적으로 요구되는 평가항목과 특정 IT기술의 활용여부에 따라 도출한 항목	• 영향평가 수행주체 선정시 결과물 및 협의내용,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참고
9. 자료 수집 및 분석계획	• 영향평가 수행시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참고자료, 해당기관과 관련 있는 자료 등 파악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법규검토단계의 산출물 참조
10. 평가결과의 활용방향	• 영향평가 결과로 도출된 결과물(영향평가서)과 이를 통해 당해 사업 간 적용방안 등을 기술	영향평가팀 회의 내용 등 참조

영향평가의 수행단계는 ① 평가자료의 수집, ② 개인정보의 흐름 분석, ③ 개인정보의 침해 요인분석, ④ 위험도 산정, ⑤ 개선사항의 도출 순으로 진행한다. 평가자료의 수집은 평가 대상 사업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외부 정책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와 대상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상위기관의 지침과 해당기관의 내부 규정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시스템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취합·분석한다.

〈 분석 대상 자료 〉

항목	수집 목적	수집 대상 자료
내부 정책 자료	• 기관 내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규정, 조직 현황 등을 분석	•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 규정 • 기관 내 정보보안 관련 규정 • 기관 내 직제표 등
	• 개인정보취급자(정보시스템 운영자, 처리자자 등), 위탁업체 등에 대한 내부 규정 및 관리·교육체계 확인	•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권한 •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 위탁업체 관리 규정 등 •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
	• 시스템 구조와 연계된 개인정보보호 기술 현황 파악	•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시스템 구조도 등
외부 정책 자료	•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경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지침 등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 대상시스템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환경 분석	• 대상시스템의 추진 근거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대상시스템 설명 자료	•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양과 범위가 사업 수행을 위해 적절한지 파악	•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 제안서
	• 정보시스템의 외부연계 여부 검토	• 위탁 계획서 • 연계 계획서

개인정보의 흐름분석이란 영향평가팀 구성원간의 사업과 개인정보 흐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상시스템 내에서의 개인정보의 흐름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대상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하여 평가 범위를 명확히 한다.

개인정보의 침해요인 분석은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흐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도출하기 위한 단계이다.

위험도 산정은 개인정보를 자산가치로 산정하여 자산가치, 개인정보 침해 발생 가능성, 법적 준거성을 조합하여 위험도를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자산가치 및 개인정보의 침해요인의 발생가능성이 높을수록,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일수록 해당 침해요인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침해위험도가 크다고 본다.

개선사항의 도출은 영향평가과정에서 도출한 침해요인별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말하며, 위험정도에 따라 단기,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평가결과의 정리단계는 ① 개선계획서의 작성, ② 영향평가서의 작성 순으로 진행된다. 개선 계획은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대상기관의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 수행,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영향평가서의 작성은 영향평가의 모든 과정 및 결과물을 정리하여 종합적인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다. 대상기관은 수립된 개선방안이 대상시스템의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거나 연계가 완료(사업 종료) 전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대상시스템의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거나 연계가 완료(사업 종료)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도출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기록하고 향후 조치를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영향평가 기준(영 제38조제1항 각 호)

평가기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기관은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성질, 데이터의 양(규모), 시스템 환경, 침해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평가기준(영 제38조제1항)	
1.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성질 및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	법 제24조제3항, 법 제25조제6항 및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필요적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

평가기관은 다음 표에 따라 적합한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영향평本来 수행하여야 한다(영향평가 고시 제10조, 제11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평가 영역	평가 분야	세부 분야
I. 대상 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1.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수행
	2. 개인정보보호 계획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3. 개인정보 침해대응	침해사고 신고 방법 안내 유출사고 대응
	4. 정보주체권리보장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5.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II. 대상시스템의		

평가 영역	평가 분야	세부 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6.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개인정보파일 등록
	7.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III. 개인정보처리단계 별 보호 조치	8. 수집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동의 받는 방법의 적절성
	9. 보유	보유기간 산정
	10.이용·제공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공시 안전성 확보
	11. 위탁	위탁사실 공개 위탁 계약 수탁사 관리·감독
	12. 파기	파기 계획 수립 분리보관 계획 수립 파기대장 작성
	13. 접근권한 관리	계정 관리 인증 관리 권한 관리
	14. 접근통제	접근통제 조치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업무용 모바일기기 보호조치
	15.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시 암호화 전송시 암호화
	1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 보관 접속기록 점검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17.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백신 설치 및 운영 보안업데이트 적용
IV.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 조치	18. 물리적 접근방지	출입통제 절차 수립 반출·입 통제 절차 수립
	19. 개인정보의 파기	안전한 파기
	20.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개발 환경 통제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출력시 보호조치
	21. 개인정보처리구역보호	보호구역지정
	22. CCTV	CCTV 설치시 의견수렴 CCTV 설치 안내 CCTV 사용 제한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23. RFID	RFID 이용자 안내 RFID 태그부착 및 제거
	24. 바이오정보	원본정보 보관시 보호조치
V. 특정 IT기술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25. 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안내사항

평가기관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이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향평가 시 모든 침해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동일 대상기관이 같은 해에 여러 영향평가를 수행할 경우, 중복된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선평가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O기관이 A시스템의 영향평가(평가 완료)와 B시스템의 영향평가(평가 개시)를 같은 해에 진행하게 되어,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변화가 없을 경우 먼저 수행한 A시스템의 영향평가에서 도출된 결과내용을 B시스템의 영향평가시스템에 사용하여 중복평가를 하지 않도록 한다.

특정 IT기술 활용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평가영역에서는 CCTV, RFID, 바이오 정보, 위치 정보로 구분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그러나 각각의 특정 IT기술은 그 특성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요인도 다를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야 한다. 표에 명시된 특정 IT기술 외에 활용하려는 IT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IT기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에 따른 침해요인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5) 영향평가서 작성·송부(영 제38조제2항 각 호)

공공기관으로부터 영향평가의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후 단계별 결과물을 포함한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영향 평가서에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요,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영향평가 수행 인력 및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기관은 대상기관과의 계약 해지 및 평가 완료 후에는 평가수행을 위해 대상기관이 제공한 서류, 도구, 장비 등 일체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승인 하에 관련 자료 등을 안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6) 영향평가서의 제출(영 제38조제2항 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영향평가서를 송부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구축·운용에 앞서 해당 영향평가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영향평가서에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내용도 포함하여야 한다.

7) 사후관리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기관 지정 후 인력변동, 휴업·폐업, 양도·양수, 합병 등으로 인한 변동 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평가기관이 심사 당시의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장실사,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업무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인원에 대한 보호대책,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등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영향평가 업무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 평가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업무수행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개인정보 영향평가 분석자료를 처리·전송·저장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위험분석에 따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영향평가 수행인원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평가기관은 영향평가 수행인력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포함한 제반 의무사항, 수행인력 채용 시 적격심사와 퇴직 시 퇴직 관리, 수행인력이 평가기관의 보안대책 위반 시 제재 및 처리, 임직원의 정기적인 내·외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 수행 및 이수 등의 제반사항에 관한 지침·절차를 강구하여야 한다.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평가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분석자료(부수자료 포함)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법 제12조의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보호대책 마련
- 수행 인력 외에 분석자료에 접근·열람, 편집·반출·폐기하지 못하도록 통제
- 정보통신망 이용 시 분석자료에 대한 위험분석에 따른 통제
- 출력물 형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분석자료에 대한 보관·복사·배포·폐기 등에 관한 통제

그밖에 일반관리대책으로는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침을 대표자가 공표하고 영향평가 수행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숙지하도록 하며, 영향평가업무에 대한 위험분석 및 통제대책에 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I. 영향평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구역은 해당 영향평가 수행인력이 아닌 자의 출입이 제한되어야 한다. 영향평가 분석자료를 처리·전송·저장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위험분석에 따른 통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트북 컴퓨터, 그 밖에 휴대용 정보처리기기에 대한 통제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II. 영향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평가 수행인력이 관계법령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포함한 제반의무를 숙지하고 이의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항 목	주 요 내 용
수행인원에 대한 보호대책	<p>4. 영향평가 수행인력을 채용할 때의 적격 심사와 퇴직할 때의 퇴직자 관리를 위한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p> <p>5. 영향평가 수행인력이 평가기관의 보안대책을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및 처리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p> <p>6. 영향평가 수행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업체 내부 및 외부의 개인정보 영향 평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III.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p>7. 영향평가 분석자료(부수자료를 포함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 표준개인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8. 영향평가 수행인력이 아닌 자는 영향평가 분석자료에 접근·열람하거나 편집·반출·폐기하지 못하도록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9.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전송·저장하는 영향평가 분석자료에 대하여 위험분석에 따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10. 서면, 도면, 마이크로필름·전산출력물 등 출력물을 형태의 영향평가 분석자료에 대한 보관·복사·배포·파기 등에 관한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IV. 일반 관리 대책	<p>11. 영향평가에 관한 평가기관의 기본방침을 대표자가 서면으로 공표하고 영향평가 수행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p> <p>12. 영향평가업무에 대한 위험분석 및 통제대책의 관리·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p>

8)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영향평가고시 제13조)

행정자치부장관은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는 영향평가에 관한 일반적인 개요, 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개인정보의 침해요인 분석, 개선사항의 도출,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6. 헌법기관 등에 대한 특칙(제7항, 제8항)

가 헌법기관의 영향평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들 헌법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이들 기관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나 민간기관의 영향평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개인정보 취급 양상이 분야별로 다양하여 일률적인 기준으로 개인정보 영향 평가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판단하기 곤란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제34조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법률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①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표준지침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3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 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제26조(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27조(유출 통지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개인정보 유출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영 제39조제2항의 전문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6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 통지·조회 절차, 영업점·인터넷회선 확충 등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특히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유출 여부를 알기 어려우며,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제2, 제3의 피해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인터넷 명의도용, 전화사기(피싱), 스팸발송 등 다양한 피해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 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주체로 하여금 유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관련기관에의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제1항)

가 통지의무의 발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 ‘유출’이란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를 말한다. 즉 ‘개인정보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상실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①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②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그 밖의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④ 그 밖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를 말한다(표준지침 제25조).

즉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당해 개인정보를 모르는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이때 제3자가 개인정보의 내용을 취득하여야만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 수준의 제3자가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본다.

참고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에 대한 판례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서버와 연동하는 사이트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피고 B의 CP(Contents Provider)인 주식회사 C로부터 서버와 연동할 수 있는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인 ‘○○○○○○○’를 임시로 부여받은 사실, A는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G 서버와 연동하는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지만, 그 시스템 점검 후에도 사이트에서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삭제하지 아니하여 엠샵사이트와 2G 서버가 계속 연동하고 있었으나, 원고들의 휴대폰번호가 사이트의 ‘폰정보 조회’ 페이지에 입력되어 피고 A의 서버로부터 사이트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전송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누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바, 어느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 하에 있고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실제 열람되거나 접근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3자가 인터넷상 특정 사이트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판결)

유출된 개인정보의 수량, 종류, 시기 등은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단 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더라도 해당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암호화 되어 있는 때에는 통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나라(미국 등)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이므로, 유출사실이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인지한 시점에서 유출통지 의무가 발생한다.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이에 해당한다.

나 통지 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사항(법 제34조제1항)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다 통지 시기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체없이’란 ‘5일 이내’를 의미한다. 따라서 최초로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발견한 때로부터 유출현황, 사건경위, 잠정원인 등을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표준지침 제26조제1항 본문).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실제 유출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27조제3항).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즉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영 제40조제1항 단서, 표준지침 26조제1항 단서).

라 통지 방법

통지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영 제40조제1항 본문). 즉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한 개별적 통지 방법이면 된다. 그러나 웹사이트 게재, 관보 고시 등과 같은 집단적인 공시만으로는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확인사실의 우선통지

개인정보의 유출을 알게 된 때 또는 유출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취한 후에도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시점 및 그 경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영 제40조제2항, 표준지침 제26조제2항).

2.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영 제40조제3항)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7일 이상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유출 통지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면 된다(영 제40조제3항).

3. 피해 최소화 등의 조치의무(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스템 일시정지, 암호 등의 변경, 유출 원인 분석, 기술적 보안조치 강화, 시스템 변경, 기술지원 의뢰 및 복구 등과 같은 임시 대응조치에서부터 유사사고 발생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등과 같은 장래의 피해 예방조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지체없이 피해고객에게 통지하고, 피해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현황을 접수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야기한 직·간접적인 사고발생 원인을 즉시 제거하고, 미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보완하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악용 또는 도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29조제1항). 개인정보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통지·조회 절차, 영업점·인터넷회선 확충 등 고객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29조제2항).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29조제3항).

4.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무(제3항, 영 제39조)

일정 규모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정부 및 관계 전문기관에 알림으로써 체계적·조직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무와 더불어, 통지 결과 및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지체없이’란 5일 이내를 의미한다.

이 법은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할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하고 있다(영 제39조제2항). 개인정보유출신고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서’(표준지침 별지 제1호 서식)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28조제1항). 다만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전화를 통하여 먼저 신고한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표준지침 제28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은 유출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유출신고 〉

신고기관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시기	5일 이내(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 신고)
신고내용	기관명, 통지여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규모, 유출시점·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등
신고방법	전자우편, 팩스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출사고 신고 및 신고서 제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전화를 통하여 통지내용을 신고한 후, 유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1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통지 및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 위반 (제34조제1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8호)
조치 결과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4조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9호)

7. 질의응답

Q 여러 명의 민원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공문발송시 수신자 각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A 공문 수신자의 성명과 주소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 수신자별로 공문발송이 이루어 지도록 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회원 대상으로 단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수신자의 이름과 메일주소, 첨부파일 상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

Q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였으나 정보주체의 연락처 정보가 없어 유출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연락처가 없어 정보주체에게 유출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령제28조제2항 및 제31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거나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유출사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제34조의 2 | 과징금의 부과 등

법률

-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⑤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제40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0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015년 1월 1일
2.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2015년 1월 1일
- 2의2. 제37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요건 등: 2016년 1월 1일
3.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2015년 1월 1일
4. 제52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2015년 1월 1일
5. 제63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주민등록번호는 금융거래, 공공서비스와 같은 중요한 법적 거래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확인 등을 위해 활용된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유출 내지 오남용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주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2013. 8. 6.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법령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제24조의2),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34조의2).

1. 과징금의 성격

과징금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의미한다. 이는 형사법상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벌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행정적인 금전적 제재수단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과는 달리 일반적인 과징금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주민등록번호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 규정을 두고 있다.

2. 과징금 부과의 내용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4조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i)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ii)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iii)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과징금의 부과 절차 및 기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영 제40조의2제2항).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영 제40조의2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영 30조의2제4항). 한편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과징금의 부과기준(영제40조의2제1항, 별표 1의2)〉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의 위반 정도에 따른 산정기준액에 나목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다목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을 거쳐 라목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

위반 정도	산정기준액	비 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5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이하 “분실등”이라 한다)된 경우를 말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2억 3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 및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일반 위반행위	1억원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나. 1차 조정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다. 2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따른 추가적 피해 발생 여부, 평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산정

개인정보처리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제39조 손해배상책임
- 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35조 | 개인정보의 열람

법률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시행규칙

표준지침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②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⑥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제6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및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에 따른다.

⑦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및 일부 열람의 통지,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연기 및 거절의 통지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에 따른다.

제31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협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2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 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영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

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⑥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46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44조 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에 관하여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는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을 이룬다.

1.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권(제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열람에는 사본의 교부를 포함한다. 정보주체가 직접 제공한 개인정보 이외에

제3자 또는 공개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가 생산한 개인정보(신용 평가, 인사평가, 거래내역, 진료기록 등), 서비스제공 등의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개인정보(수발신내역, 입출기록, 쿠키, 로그기록 등) 등도 열람요구의 대상이 된다.

2. 열람요구의 방법·절차(제2항, 영 제41조제1항, 제2항)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서의 제출(영 제41조제1항)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열람요구 항목(영 제41조제1항)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 및 내용

나 공공기관에 대한 특례(제2항, 영 제41조제2항)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3. 열람조치 등(제3항, 영 제41조제2항, 3항 및 제4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일시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포함한다)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받았지만 10일 이내에 열람을 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31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4. 열람의 제한 및 거절(제4항, 영 제42조제1항,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열람 제한·거절사유(법 제35조제4항)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다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에 대한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의적으로 열람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만약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제3자 제공현황이 수사대상자에게 노출된다면 증거인멸 등 수사 활동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하는 당해 수사기관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에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표준지침 제31조제2항).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보유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외에도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현황에 대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요청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열람청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도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정보이용·제공자 등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열람청구 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p>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p>
신용정보법	<p>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p> <p>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조회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신용조회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정보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정보제공 중지 및 통지 방법, 통지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무료 열람권) 신용조회회사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6.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거절 (제35조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10호)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제3항·제4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3항제9호)

7. 질의 응답

Q 고객이 현재까지 부가서비스 가입내역 등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전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분량이 매우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가?

A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열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열람 제한·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이용내역 산출 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송료 등을 정보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Q 고객에게 서면으로 멤버십 가입 신청서를 받은 뒤 포인트 적립이나 신메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런데 어떤 고객이 자신은 멤버십 가입신청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확인을 요구해 왔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회원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동의 기재란의 자필서명 여부 등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법률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규칙

제3조(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⑥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4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제6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및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에 따른다.

⑧ 법 제36조제6항 및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와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표준지침

제32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 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로부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잘못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일방적인 정정·삭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행사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1.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권(제1항)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해당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정정·삭제 등의 조치(제2항, 제5항)

가 증거자료의 조사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정정·삭제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정정·삭제 등 필요 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조사결과 정보주체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영 제43조제3항 전단).

다 정정·삭제 요구서의 통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자체 없이 송부하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영 제43조제2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삭제 거부의 통지(제1항, 제4항, 영 제43조제3항)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삭제의 요구에 따르지 않기로 한 사실, 근거 법령의 내용 및 그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사례 법령에 의한 개인정보 보존의무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등)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12개월 다만, 시외·시내전화 역무와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2. 법 제2조제11호마목 및 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3개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열람·보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가 이루어진 해당 사이버몰(법 제2조제4호의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형태로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2.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와의 거래기록을 그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거래기록 중에 「저작권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저작권법」에 따라 복사할 수 있는 저작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복사는 거부할 수 있다.
 3. 사업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소비자의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와 별도로 보존할 것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한편,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 정정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p>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p>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p> <p>제32조의3(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 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	--

신용정보법	<p>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p> <p>①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 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	--

5.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제2항 위반 후 이용·제공)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3조제2호)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요구에 따라 필요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제36조제2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11호)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 (제36조제2항·제4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3항제9호)

6. 질의 응답

Q 잠재고객들에 대하여 우리 회사 서비스의 광고 메일 및 전화(TM)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고객이 수신거부를 요청하였다. 이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A 정보주체가 광고메일 및 전화 TM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에 사업자는 10일 이내 (시행령 제43조)에 발송 중지 및 리스트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법률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자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자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규칙

제3조(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⑥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4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제6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및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에 따른다.

⑦ 법 제36조제6항 및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표준지침

결과의 통지와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33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제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처리정지 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 활동에 대한 정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동의 철회권보다는 그 개념이 넓다. 동의 철회권은 정보주체 자신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처리정지 요구권은 정보주체 자신이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처리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정보주체는 처리정지 요구의 이유를 댈 필요가 없으며 언제든지 요구가 가능하다.

한편,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에 포함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각 호의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처리정지요구 제외 개인정보파일(법 제32조제2항)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 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제2항 본문, 제4항, 영 제44조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예외 혹은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를 하여야 하는데, 처리정지를 요구받은 대상 처리 유형만을 정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특정 처리 유형의 정지만으로는 그 처리정지 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정지 조치를 한 사실 및 그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파기 이외의 필요한 조치로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해당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별도의 개인정보파일(예를 들면, 처리정지 개인정보파일)에 분리·보관하는 것이나 해당 개인정보가 처리정지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 설정 등이 있으며, 개별적인 사안에서 정보주체가 요구한 처리정지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최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처리정지 요구의 거부(제2항 각호, 영 제44조제2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기로 한 사실 및 그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처리정지요구 거부사유(법 제37조제2항)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정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5.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3조제3호)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제4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2항제12호)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 (제37조제3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제3항제9호)

제38조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삭제의 요구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낸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p>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p>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p>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관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표준지침	<p>제3조(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⑨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의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p> <p>제34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p> <p>② 제1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영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p>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과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정보주체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가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수준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대리인에 의한 권리행사(제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등의 권리행사를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제1항). 대리인의 범위에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이외에 정보주체로부터 위임계약 등에 기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임의대리인도 포함된다(영 제45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 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요구권을 대리인을 통해 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절차적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여부의 결정은 정보주체만이 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의 권리행사(제2항)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은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 제22조제5항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3. 신원확인 의무와 방법(영 제46조)

가 신원확인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 정정·삭제요구, 처리정지요구 등을 받은 때에는 열람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자신에 관한 신원확인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와 대리인 사이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및 인감 또는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신원확인 방법

신원확인의 방법은 별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인터넷의 경우에는 전자서명, 아이핀, 이동전화번호와 생년월일 등의 방법에 의해서 확인하면 되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에 의하면 된다. 즉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에 의해서 하면 된다.

다 공공기관의 특례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신분확인이 가능하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열람수수료 등의 청구(제3항, 영 제47조)**가 부과기준(영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을 요구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정정·삭제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납부방법**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그밖의 개인정보처리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수수료 납부 방법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한다.

다 징수권 상실(영 제2항)

개인정보를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하게 된 사유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열람등을 요구하게 된 사유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잘못(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자신에게 그 처리의 이익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단지 ‘궁금하다’ 또는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열람등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나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권리행사의 방법과 절차(제4항 및 제5항, 영 제48조)

가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제4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수의 정보주체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는 최소한 개인정보 수집절차 또는 회원가입 절차에 준해서 알기 쉽고 편리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해서는 안된다(표준지침 제34조제1항). 또한, 정보주체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다양한 권리행사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웹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이의제기 절차(제5항)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는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제5항). 이 경우 이의제기 절차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내부의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다 열람등 지원시스템 구축(영 제48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의 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그 밖의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등의 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관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열람등 청구에 한하고 있으므로, 이용자 이외의 자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에는 정보주체의 열람등 청구에 관하여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정보이용·제공자 등은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정보통신망법	<p>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p> <p>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p>
--------	---

	<p>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p> <p>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②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p>
신용정보법	<p>제39조(무료 열람권) 신용조회회사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7. 질의응답

Q | 민간사업자의 수수료 청구 기준은?

A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을 요구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에 따른 조치시 필요한 인쇄비, 공공요금, 인건비 등을 계산하여 최소한의 실비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 | 손해배상책임

법률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별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일반적인 ‘정보’ 유출 사건 또는 오남용 사건이 그러하듯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사건의 경우에도 언제, 어느 단계에서,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나 오남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게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권리 중 하나인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적인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지 효과, 악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의 강화 등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도입하였다.

참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침해행위가 존재하고 위법할 것
-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이 있을 것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제1항 전단)

가 이 법 위반행위가 있을 것

이 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을 위반한 사실(침해행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곧장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 위반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충돌하는 경우 즉 위법성(違法性)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책임을 진다.

통상적으로는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단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위반행위가 특정한 사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허용될만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시 말해 공서양속(公序良俗), 조리(條理), 사회통념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이 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거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것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야 한다. 손해는 재산적 손해 또는 경제적 손해에 한정하지 않고 비재산적 손해 즉 정신적 손해도 포함한다. 예컨대 재산적 손해라 함은 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유출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 불법대출 등으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정신적 손해라고 하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유출에 따라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스팸메일, 마케팅광고 등이 수신됨으로써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손해액에 대해서는 원고인 정보주체가 증명책임을 진다.

다 손해와 법 위반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 법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이론에 따라 손해 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즉 행위(원인)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한 모든 손해를 배상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여 배상하면 된다. 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보주체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 제763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인 정보주체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참고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

어떤 원인(행위)이 있으면 경험칙상 통상적으로 그러한 결과(손해)가 발생하리라고 인정되는 관계를 법률상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한다. 상당인과관계는 그 판단의 기준을 누구로 할 것이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행위자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인가 또는 일반인(보통인·평균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과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그리고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로 나누어져 있다. 인과관계는 원래 자연현상에 속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인간의 행위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전혀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인과관계는 객관적인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정도 참작하는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이 현재 통설적 지위에 있다.

민법 제393조 및 제763조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라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이 존재할 것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에게 고의 또는 과실과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고의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 위반을 알면서도 감히 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일정한 행위를 하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감히 그 행위를 하는 소위 미필적 고의도 역시 고의에 포함된다.

과실이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경력·경험·직업 등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였기 때문에 이 법에 위반함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계약책임의 경우에는 신의칙상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과 동일시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예컨대 근로자, 종업원, 임시직, 위촉직, 아르바이트생 등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선임·지휘·감독을 받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개인정보처리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본다(민법 제391조). 나아가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고의·과실도 개인정보처리자 자신의 소속

직원의 고의·과실로 본다(법 제26조제6항).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는 자기책임의 원칙 상 개인 정보처리자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기타 대표자의 가해행위는 법인 자신의 가해행위로서 법인 자신의 책임이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용자 또는 감독자로서 그의 감독 하에 있는 피용자나 피감독자에 대한 선임 또는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 자신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법 제26조제6항).

2.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제1항 후단)

채무불이행(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을 피고(채무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원고(피해자)인 정보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계약불이행에 의한 것이든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든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책임은 피고인 개인정보처리자 자신이 부담한다. 즉 개인정보 처리자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일개 개인에 불과한 정보 주체가 기업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고의·과실을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정보주체로 하여금 고의·과실을 증명하게 하면 사실상 정보주체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게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 중 하나인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법률 준수율도 제고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3항 및 제4항)

일반적인 실손해 배상에 관한 제1항의 규정에 더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별성이 큰 악성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악성 위법행위의 억지와 예방,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제재, 정보주체의 피해구제의 강화를 위하여 실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되는 위법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침해행위의 가별성이 더 심각한 유형으로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악성 위법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일반적 손해

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악성 위법행위의 존재, 그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실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원칙인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한 불합리한 훠손을 막고, 책임이 가중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불합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적극적인 방어,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실손해의 3배까지 증액하여 손해배상을 허용하기 때문에 징벌적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으로써 불합리하게 과도한 배상이 되지 않도록 법원이 의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시 의무적 고려사항(법 제39조제4항)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개인정보 보호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의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일반적 손해배상책임(제1항)이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제3항)이든 정보주체(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가해자(개인정보 처리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이 중에서 3년의 기간은 시효기간이고 10년은 제척기간이다. 여기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각각 손해배상책임(일반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및 신용정보이용·제공자, 신용정보회사 등은 각 해당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보통신망법	<p>제32조(손해배상)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산상태 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신용정보법	<p>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재산상태 7.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분실·도난·누출 후 해당 개인정보 회수 노력의 정도

8.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④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 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⑥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⑦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의 2 |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법률

-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대량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인정보 유출 혹은 오남용으로 정보주체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통해 구제가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인 정보주체가 손해를 증명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 혹은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로 구분할 수 있지만, 재산적 피해는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불법대출을 받거나 불법적인 거래로 정보주체의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신적 손해의 경우에도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 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정신적 손해의 인정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을 증명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피해구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정보주체의 보호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롭게 손해액의 증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정손해배상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참고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청구요건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있을 것
-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것
-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이 있을 것

1. 손해배상청구권의 청구요건(제1항 전단)

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있을 것

이 조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과 함께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라고 하는 침해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분실이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도난이란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군가에게 도둑맞은 것을 의미하며, 누출이란 개인정보가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잃어버리는 경우, 누군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빼앗거나 훔치는 경우, 개인정보가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야 한다. 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새롭게 생성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는 권한 없이 기존 개인정보에 변경을 가하는 일을 의미하고, 훼손이란 개인정보를 못 쓰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나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것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 손해액의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손해배상은 피해자인 정보주체에게 손해액의 증명 곤란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기초하여, 정보주체는 구체적인 손해액의 증명을 할 필요는 없다.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300만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구체적인 손해액이 아님)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거나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피해 배상을 받아내고자 한다면 법원에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비롯하여 손해액의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 위법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있을 것

법정손해배상은 제39조의 실손해배상을 대체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배상의 범위는 실손해의 범위로 한정된다. 즉, 법원이 법정손해배상으로서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조에서 열거된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 따라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여 법원이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면 된다. 손해배상의 범위 또는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의 증명의 곤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만큼 정보주체는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393조, 제763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인 정보주체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민법 제393조 및 제763조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라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이 존재할 것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에게 고의 또는 과실과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고의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 위반을 알면서도 감히 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일정한 행위를 하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감히 그 행위를 하는 소위 미필적 고의도 역시 고의에 포함된다.

과실이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경력·경험·직업 등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였기 때문에 이 법에 위반함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수탁자의 고의·과실도 개인정보처리자 자신의 소속 직원의 고의·과실로 본다(법 제26조제6항).

2.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제1항 후단)

채무불이행(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을 피고(채무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원고(피해자)인 정보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정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계약불이행에 의한 것이든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든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은 피고인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3. 법정손해배상청구의 행사 시기(제3항)

정보주체가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라도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이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반대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같은 취지에 근거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실손해를 증명함으로써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법」과는 달리 이 법은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서 일반법인 민법상의 채권 소멸시효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한이 정해진다. 즉,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법정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법정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766조 제2항).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각각 법정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및 신용정보이용·제공자, 신용정보회사 등은 각 해당 법률에 따라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제32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용자는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43조에 따른 청구를 한 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제40조 설치 및 구성
- 제41조 위원의 신분보장
- 제4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 제44조 처리기간
- 제45조 자료의 요청 등
- 제46조 조정 전 합의 권고
- 제47조 분쟁의 조정
- 제4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9조 집단분쟁조정
- 제50조 조정절차 등

제40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법률

-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개인정보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제48조의2(당연직위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위원은 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및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시간·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정부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조정부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50조(사무기구)**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 접수 및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수행한다.
- 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시간·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정신적인 피해가 대부분이라서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소송에 의할 경우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침해사실, 손해 발생, 손해액, 손해와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여전히 정보주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낮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승소액)보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은 사건이 대부분이라서 정보주체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구제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도 소송절차에 준해서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로써 개인정보 피해구제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쟁조정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제1항)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조정은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서 해결하는 자주적 분쟁해결 절차로써 당사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조정위원회는 권고만 하고 그 권고에 동의할지 안 할지는 양 당사자의 자유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권고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제2항~제5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제2항). 당연직위원은 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및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영 제48조의2). 위촉위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제3항). 공익 대표, 교수·법조인 등 전문가, 소비자(정보주체) 대표,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 대표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제4항),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의 자격(제3항)

1. 개인정보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개인정보 분쟁조정부의 설치 및 구성(제6항, 영 제49항)

가 조정부의 설치(제6항)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나 조정부의 구성(영 제49조제1항, 제4항)

조정부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한다(영 제49조제1항). 조정부의 장은 조정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영 제49조제4항).

다 조정부의 소집(영 제49조제2항, 제3항)

조정부의 소집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한다(영 제49조제2항).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정부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영 제49조제3항).

라 조정부의 구성·운영규칙(영 제49조제5항)

이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개의 및 의결(제7항)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7항).

4.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처리 및 조정부의 운영(제8항, 영 제50조)

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 및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법 제40조제8항).

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

보호위원회 사무기구는 분쟁조정 접수 및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 접수 및 사실확인 등에 필요한 사무처리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수행한다(영 제50조). 그 밖의 사무기구에서 수행하는

사무로는 분쟁조정사건 접수창구의 운영, 조정전 합의권고, 조정결정서의 송달, 의사록의 작성·보관 등이 있다.

5.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제9항, 영 제51조)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의 소집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하며, 그 의장이 된다(영 제51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영 제51조제2항).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 사건은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것이다(영 제51조제3항).

제41조/제42조 | 위원의 신분보장 등

법률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4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 (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분쟁조정제도는 준사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은 위원의 신분보장을 통해 분쟁조정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1. 분쟁조정의 독립성 보장(제41조)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종류에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유기징역, 유기금고가 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는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이 정지되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형법 제43조). 따라서 별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을 이유로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하거나 해촉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분쟁조정의 공정성 보장(제42조)

가 제척사유(제1항)

'제척'이라 함은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분쟁조정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분쟁조정 제척사유(제1항)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나 기피사유(제2항)

'기피'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특정 위원을 배제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 회피사유(제3항)

'회피'란 위원이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정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스스로 빠지는 것을 말한다. 위원은 특정 사건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3조~제48조 | 분쟁조정의 신청 및 효력 등

법률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 등(제43조)

가 분쟁조정의 신청(제1항)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보주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사유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사유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충분하다.

신청의 내용은 법령 위반행위의 금지·중지일 수도 있고 손해배상의 청구일 수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정정요구권, 삭제요구권 등과 같은 적극적인 이행의무도 포함된다.

나 조정신청사실의 통지 등(제43조제2항)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가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각각 통지하여 조정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공기관의 특례(제43조제3항)

분쟁조정은 강제적 조정절차가 아니므로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자유롭게 조정절차에 참여할지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절차에 응해야 한다. 민간 기업이나 단체와 달리 공공기관은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행정기관이 민원사항을 신청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2. 분쟁조정의 처리 기간(제44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자료제출·출석 등의 요청(제45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조정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는 영업비밀 보호, 타인의 사생활 보호, 국가 안보 및 외교상 이익 등이 있을 수 있다.

4. 조정 전 합의 권고(제46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분쟁은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후유증도 적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자주적 분쟁해결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5. 분쟁의 조정(제47조)

가 조정안의 작성 및 제시(제1항, 제2항)—————

사실조사, 의견청취, 전문가자문 등이 끝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①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②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③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 어느 사항의 하나를 포함한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조정안의 수락 및 거부(제47조제3항, 제4항)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제3항). 양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거부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이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 분쟁조정 성립의 법적 효력(제47조제5항)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의미하므로 조정안 수락으로 분쟁은 최종적으로 종료되고 조정조서에 의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즉 추후에 조정 내용에 대해서 불복사유가 발견되더라도 소송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고, 그 효력은 오로지 존재심의 절차에 의해서만 다투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6. 조정의 진행 거부 및 중지(제4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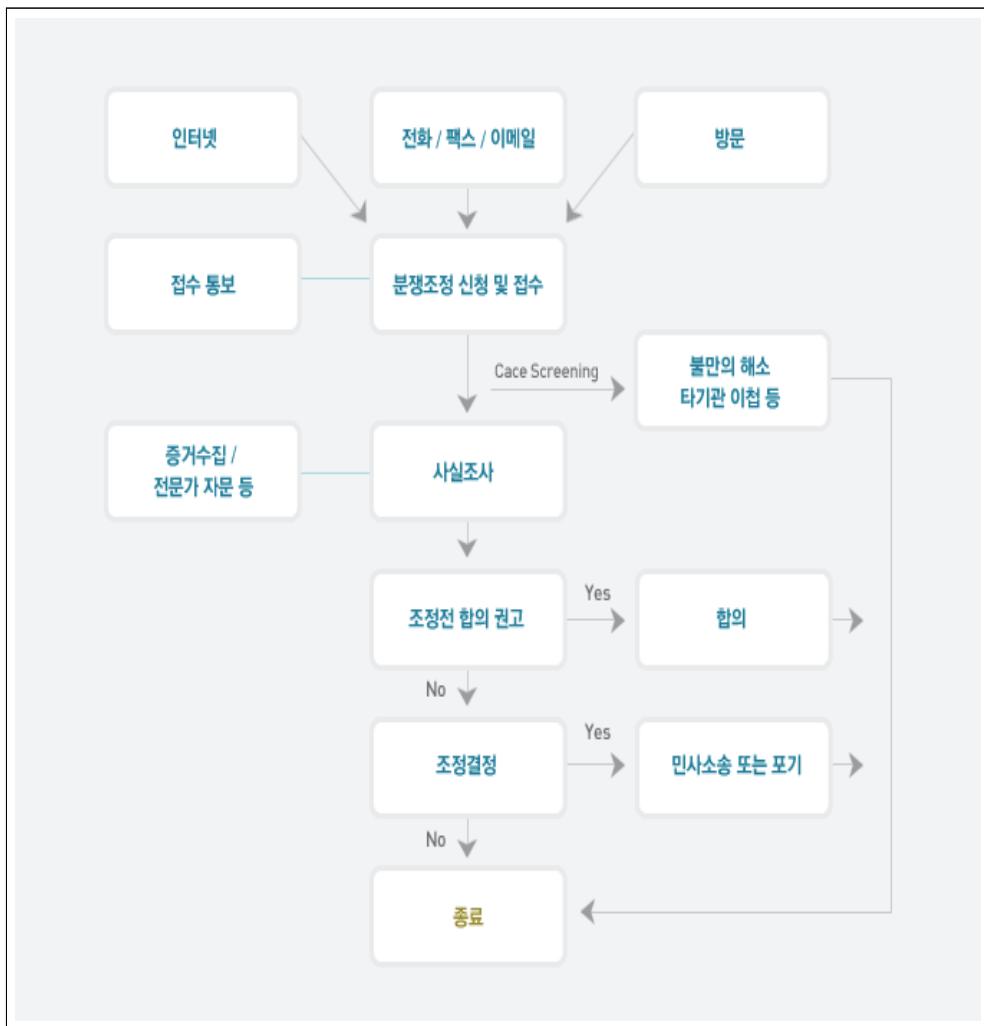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사례 조정 거부 사례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분쟁이 아닌 경우, 신청자가 악의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해 계속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관계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실상 조정절차에 따를 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분쟁조정 절차도 〉



제49조 | 집단분쟁조정

법률

- 제49조(집단분쟁조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⑥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법 제49조 제2항 후단의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52조제1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정보주체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오·남용사고는 대부분 집단성을 띠고 있고,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개인정보의 항목이나 피해의 유형도 같거나 비슷하다. 이처럼 작게는 수천 건에서 많게는 수천만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건을 개별적인 분쟁조정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낭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집단적 분쟁사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분쟁 조정절차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1.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및 신청

가 집단분쟁조정의 의뢰자 및 신청자(제49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자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 개인정보보호단체 및 기관, ③ 정보주체, ④ 개인정보처리자이다. 집단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단체 및 기관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은 누구든지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설립한 개인정보보호단체나 국가·지자체 등이 설립한 공공기관도 가능하다.

나 집단분쟁조정 신청대상 사건(제49조제1항, 영 제52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했어야 하며(제49조제1항),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이어야 한다(영 제52조).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 (영 제52조)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 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 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2.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및 공고

가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공고(제49조제2항, 영 제53조)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제49조제2항 전단).

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공하여야 한다(제49조제2항 후단, 영 제53조제1항).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영 제53조제2항).

나 집단분쟁조정의 추가신청(제49조제3항, 영 제54조)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 기간 내에 문서로 참가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으면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기간(참가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영 제54조제2항).

다 대표당사자의 선임(제49조제4항)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3. 당사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보상(제49조제5항)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집단분쟁조정절차의 제외(제49조제6항, 영 제55조)

법 제48조제2항(소제기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의 중지)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를 제기한 정보주체들은 그 절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제49조제6항).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이 영 제5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당사자 중 일부가 집단분쟁조정 신청 결격사유(영 제5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중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집단분쟁조정 신청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사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영 제55조제1항).

5. 집단분쟁조정 성립의 법적 효력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의 법적 효력은 일반 분쟁조정의 경우와 같다. 즉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만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수락한 사람에 한해서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

6.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제49조제7항)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7. 유사입법례

「소비자기본법」

-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④ 삭제
- ⑤ 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⑥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소비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 ⑦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8조의2(대표당사자의 선임 등)** ① 집단분쟁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그 중 3명 이하를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대표당사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거부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대표당사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대표당사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당사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제50조 | 조정절차 등

법률	<p>제50조(조정절차 등) 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p>
시행령	<p>제56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7조(분쟁조정 세칙)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집단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1. 「민사조정법」의 준용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2.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영 제56조).

3. 「분쟁조정세칙」의 제정

이 법 및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집단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영 제57조).

〈 유사분쟁조정위원회 현황 및 비교 〉

구 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설립 목적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
위상	-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한국소비자원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 1인 포함 25명 이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
위원 임기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 공무원은 재직기간동안 재임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3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위원 임명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위원장 임명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위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상임위원 중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상임 여부	1명은 상임위원	1명은 상임위원	위원장과 포함한 2인은 상임
조정의 험력	재판상 화해	재판상 화해	재판상 화해
조정전 합의권고	有	有	無(소비자원 등의 합의권고가 전제된 사건에 한 해 신청 가능)
사무국	보호위원회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소비자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기간 : 60일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위원의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기간 : 30일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위원의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기간 : 30일 - 조정의 중지 - 위원의 신분보장, 제척·기피·회피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
- 제51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
 - 제52조 전속관할
 - 제5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 제54조 소송허가신청
 - 제55조 소송허가요건 등
 - 제56조 확정판결의 효력
 - 제57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51조~제53조 |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 관할 등

법률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나. 정관에 개인정보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의의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IT의 급격한 발달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의 확산 속도는 빨라져 가고 그 피해규모 또한 점차 대형화되고 있음에 반해 피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은 여전히 비조직화·파편화된 상황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침해유발자와 침해 피해자 사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피해구제를 정보주체인 개인에게만 맡겨두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집단적 피해의 발생·확대 방지 및 집단적 해결을 위한 소송제도로는 크게 미국식의 ‘집단소송제도’와 유럽식의 ‘단체소송제도’가 있다.

집단소송(Class Action)은 피해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여 그로 하여금 집단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고, 단체소송(Verbandsklage)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로 하여금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집단소송은 주로 소액다수의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그 장점을 발휘해 왔고, 단체소송은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금지·중단시키기 위한 금지·중지청구소송제도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체소송에서도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표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입법례도 나타나는 등 두 제도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소비자기본법에 단체소송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또한 유럽식의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에게만 개인정보 단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단체소송의 청구범위도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에 한정하고 있다.

〈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의 차이 〉

구 분	단체소송(Verbandsklage)	집단소송(Class Action)
청구권자	일정 요건을 구비한 소비자단체 등 (단체가 소송수행)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집단 (대표당사자가 소송수행)
소송목적	위법행위의 금지·중지	금전적 피해구제(손해배상청구)
기대효과	피해의 확산방지 및 예방	피해의 사후적 구제
판결의 효과	다른 단체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침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과가 미침 (단, 제외 신청을 한 사람은 제외)

개인정보침해 단체소송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법 제51조부터 제57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법원 규칙으로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대법원 규칙 제2358호, 2011. 9. 28. 제정, 2011. 9. 30. 시행)」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2. 분쟁조정 전치주의(제51조 본문)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불필요한 소송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개인정보단체소송의 대상 및 청구범위

가 개인정보단체소송의 대상

개인정보단체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반드시 이 법 위반에 따른 권리침해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발생한 권리침해행위는 모두 단체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만 청구취지 자체가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소제기 당시 권리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야 하고 과거의 행위로서 소제기 당시 종료된 권리침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나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청구범위

개인정보단체소송은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청구만을 그 내용으로 한다. 예컨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의 침해 중지 등과 같이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만 청구가 가능하다(제51조 본문).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같이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나 권리침해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은 단체소송을 통해서 제기할 수 없다. 정보주체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4.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원고적격(제51조 각호)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등록 소비자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되어 있다.

소비자단체가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①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며, ②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이고, ③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가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①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고, ② 정관에 개인정보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 실적이 있으며, ③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으로, ④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5.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전속관할(제52조)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그러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피고가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전속관할을 정한다.

6. 소송대리인의 선임(제53조)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원고가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집단분쟁조정의 경우에는 청구인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제49조제4항)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각하 사유가 된다.

한편, 원고의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에는 원고가 새로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된다. 이와 같이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원고가 이러한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위 소각하 결정에 대해 원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11조제4항).

참고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한다. 통상의 항고는 불복신청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에, 즉시항고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불복신청기간을 기각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일로 제한하고 있다.

제54조/제55조 | 소송허가신청 및 허가요건 등

법률

제54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험결이 없을 것
-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1. 소송허가의 신청(제54조제1항)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①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② 피고, ③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송허가 신청시 첨부서류(제54조제2항)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는 단체가 관할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허가신청서에는 ①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단체 소송 원고적격)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체소송 원고적격 소명자료는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누구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다.

〈 소송허가 신청시 첨부서류(개인정보 단체소송 규칙 제6조) 〉

구분	소비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소명 자료	1. 단체의 정관 2.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소비자단체로 등록한 사실 및 등록일자를 소명하는 서면	1. 단체의 정관 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활동 실적 3.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5.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정보주체의 이름·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팩스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6. 제5호의 정보주체들이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서면(각 정보주체별 침해의 내용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참고 1 청구의 변경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에는 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단체소송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결정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13조).

참고 2 변론의 병합

동일한 법원에 청구의 기초와 피고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여러 개의 개인정보 단체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된다. 다만, 심리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병합심리가 타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리 심의한다(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14조).

3. 소송허가의 요건(제55조)

신청서의 기재내용이나 첨부서류에 흡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흡결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불허하게 된다. 소송불허가결정서의 이유에는 흡결이 있는 소송 허가요건이 명시된다.

법원은 ①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흡결이 없고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하여야 한다. 법원은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대표자, 피용자, 회원 또는 구성원, 피고 및 정보주체 등을 심문할 수 있다.

소송허가결정 및 소송불허가결정의 경우 그 결정등본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소송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단체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와 같이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56조 | 확정판결의 효력

법률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 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1. 청구기각 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단체도 다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즉 단체소송의 확정판결 효과는 다른 단체에게까지 미친다(제56조 본문). 원고 패소 판결뿐만 아니라 승소 판결의 경우에도 판결의 효과는 전체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단체에 미친다. 그러나 개별 정보주체들은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 확정판결 효력의 정지

원고가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더라도 ①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②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다른 단체가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56조 단서).

제57조 | 민사소송법 적용 등

법률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민사소송법」의 적용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즉시 항고의 기간·방법 등 다수의 민사소송 규정이 개인정보 단체소송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민사집행법」의 적용

법원의 단체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관련 규정은 활용될 여지가 없고 가처분관련 규정만 활용이 가능하다.

3.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의 제정·운용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에는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자료, 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 소송허가신청서부본의 송달, 소송허가신청의 심리, 소송허가여부에 대한 결정, 소송대리인의 사임, 공동소송참가, 청구의 변경, 변론의 병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2358호, 2011.9.28 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청구의 취지와 원인

제5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4.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제6조(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자료) ① 법 제51조제1호에 규정된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붙여야 한다.

1. 단체의 정관
2.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소비자단체로 등록한 사실 및 등록일자를 소명하는 서면
- ② 법 제51조제2호에 규정된 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붙여야 한다.
 1. 단체의 정관
 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활동실적
 3.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5.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정보주체의 이름·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6. 제5호의 정보주체들이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한 서면(각 정보주체별 침해의 내용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소제기단체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7조(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 ①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소송허가신청서에 붙일 서류에 흠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② 원고가 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불허가한다.

제8조(소송허가신청서 부분의 송달) 소송허가신청서의 부분은 소장부분과 함께 피고에게 송달한다.

제9조(소송허가신청의 심리) 법원은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대표자, 피용자, 회원 또는 구성원, 피고 및 정보주체 등을 심문할 수 있다.

제10조(소송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 ① 소송허가결정서 및 소송불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주문
 4. 이유
- ② 소송불허가결정서의 이유에는 흠결이 있는 소송허가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소송허가결정 및 소송불허가결정은 그 결정등본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소송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단체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① 원고의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에는 원고가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소송참가) ① 법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단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계속 중인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른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소송참가신청서와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는 법 제54조제1항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 제54조제2항제2호,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청구의 변경)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때에는 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변론의 병합) 동일한 법원에 청구의 기초와 피고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여러 개의 개인정보 단체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병합심리가 타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보칙

-
-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 제59조 금지행위
 - 제60조 비밀유지 등
 - 제6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제62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제64조 시정조치 등
 - 제65조 고발 및 징계권고
 - 제66조 결과의 공표
 - 제67조 연차보고
 -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 | 적용의 일부 제외

법률

-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프라이버시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이다. 또한 프라이버시권은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유재산 보호 그 밖에 우리 사회가 개인의 자유 및 사적 자치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가치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과 질서 등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와 언론의 자유, 선교활동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 다른 헌법상의 권리들이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다른 헌법적 가치들과의 균형을 위하여 일정한 목적·일정한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법률의 일부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1. 통계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제1항제1호)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법 제3장부터 제7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통계법」에 따라 작성된 통계는 국가는 물론 민간에서도 각종 의사 결정을 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로 활용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경제·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므로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통계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통계법 제34조),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고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통계법 제33조),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통계법 제30조제2항).

2. 국가안보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이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테러분자의 추적, 간첩 색출, 국가전복 기도 방지, 국가기밀 누출방지 등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사기관들의 정보 수집, 분석 및 관리 업무는 비밀리에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Q | 통합관제센터의 CCTV영상정보를 수도방위사령부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지자체가 설치한 CCTV의 영상정보를 군사작전 및 재난대응 용도로 군부대에서 상시 사용할 수는 없으며 보안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도방위사령부 병커에서 구청의 CCTV 영상정보를 상시 관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의 일부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방사가 이에 해당되는 사유로 구청의 CCTV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하다할 것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구청 내에 설치된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군부대 요원 등이 CCTV 영상을 관제하는 것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해당되므로 상기한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공중위생등 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제1항제3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법 제3장부터 제7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종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환자 격리, 감염원 추적 등의 활동과 천재지변·긴급재난 등으로부터 이재민을 구조·구호하기 위한 활동은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에 따른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곤란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해서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4. 언론, 종교단체, 정당 등에 대한 적용 제외(제1항제4호)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그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3장부터 제7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한하여 이 법의 일부가 적용 배제되며, 언론기관, 종교단체, 정당 등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언론기관의 인물DB사업,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정당의 여성정치인 육성사업은 언론기관·종교단체·정당 등의 고유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언론의 취재 또는 보도 등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취재란 언론이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기사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하며, 보도란 언론이 취재를 통하여 얻어진 것을 신문, 잡지, 방송 또는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간행물의 종류 〉

종류	내용
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신문으로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
인터넷 신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잡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잡지 및 기타간행물

‘언론’이라 함은 다음의 기관들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으로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로 송신하는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뉴스통신이라 함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의 전파를 목적으로 행하는 유무선을 포함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
4. 그밖에,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이 규정한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

‘종교단체’에는 천주교, 개신교, 대종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천도교 등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교단·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 종교단체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개별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한 법인인 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종교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단체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종교단체가 선교 등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1) 교단정리, 교단내부규율 정리, 소속종교단의 등록, 교역자의 신상관리, 소식지 제작, 홍보, 종교단체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행하는 각종 회의소집, 교단 홈페이지 관리 등 종교단체의 교단유지업무, 2) 종교단체의 교리를 전파하거나 전쟁이나 재해를 입은 주민의 재건과 화해를 위한 선교활동(현재 2008.6.26. 2007현마1366), 3) 종교의 교리를 전달하고 종교를 전파할 목적을 행하는 교육, 그밖에 종교를 선교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 행하는 청소년운동, 부정부패추방시민운동, 환경운동 등과 같은 공익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이 있다.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정당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정당이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는 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정당이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 등이 포함된다.

5.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단체에 대한 적용 제외(제3항)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및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목단체는 업무적 성격보다는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법의 일부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따라서 친목단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친목단체의 설립 목적을 벗어난 이용·제공에 대해서는 제15조,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일정한 법정 단체(법령상 친목 단체)에 대해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친목단체의 회비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거나 「공직선거법」상의 규제대상인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친목단체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념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사전적으로는 ‘학교, 지역, 기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단위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동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으로 파악되는 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친목단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해당 영리단체 등 친목단체가 아닌 단체의 구성원도 단체 내에서는 자유롭게 친목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법령 상 친목단체 관련 규정 〉

법 명	내 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고엽전우회’를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등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을 명시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제1항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함. 예외적으로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허용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2호 마목은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 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를 기부금에서 제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은 위 법률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서 배제

〈 친목단체 관련 판례 〉

판례 구분	내용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4084 판결	친목단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통제의 성격을 갖는 외부 활동행위에 대한 규제는 친목도모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5954 판결	친목단체의 구성원이 해당 친목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등 자치규범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회비 등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일정한 비용의 지출이 내부구성원을 상대로 하여 구성원간 관계의 원활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면 친목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친목도모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광고 선전비에 해당한다.

친목단체의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의무, 개인정보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등의 규정은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

6.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의 강구(제4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고충처리를 포함하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외국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외 사례 〉

구분	내용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수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국가주권, 국가안보, 공공정책(Public Policy)을 위한 경우
EU 「개인정보보호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수하게 사적이고 가사목적의 활동을 위한 경우 공공의 안전, 방위, 국가안보를 위한 활동의 경우 형사법 영역의 국가활동(수사 등) 보도 목적, 문학적·예술적 창작활동이나 표현을 위한 경우
독일 「연방개인정보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의 수집, 생산, 이용이 오직 개인적이거나 가족적인 활동 영역에 속하는 경우(제3조제3항) 법률의 규정, 정보주체의 동의, 공공복리 및 공공안전침해 방지, 형사상·행정상 집행을 위한 경우(제14조제2항) 계약목적, 정보주체의 중요한 법적 이익, 광고·시장조사·여론조사, 학문연구, 과학적 연구(정보주체의 이익보다 크고, 기타 방법이 없는 경우), 제3자의 법적 이익 또는 공익보호, 정치·철학·종교 또는 노동조합 목적(제28조)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 (제7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 목적(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기타 보도기관) 저술활동 목적(저술을 업으로 하는 자) 학술연구 목적(대학 기타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그 구성원) 종교활동 목적(종교단체) 정치활동 목적(정치단체)

7. 질의 응답

Q |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도 친목단체에 포함되나?

A 해당 블로그의 운영형태, 회원규약 등으로 판단하여 볼 때, 순수하게 친목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미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면 친목단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친목, 취미를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 상품판매, 공동구매, 수강생 모집, 광고 수주 등 영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친목단체로 볼 수 없다.

제59조 | 금지행위

법률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1. 금지행위의 의무대상자(제59조 본문)

이 조에서 금지행위의 의무대상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소속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한 적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파견직, 수탁자 등이 해당된다.

2.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및 처리동의 획득(제1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이란 사기 또는 기망과 같은 의미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말하고,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공갈, 협박 등을 비롯하여 착오·오인의 유발 등이 포함된다. 사기, 공갈, 협박 등의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언어·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為)에 의하든 이를 불문한다. 최근 금융기관, 경찰청, 세무서, 우체국, 법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하여 정보주체로부터 카드번호,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인터넷 피싱(인터넷사기)과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부당 이용·제공(제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란 넓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알게 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누설’이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시키는 행위이다. 한마디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다.

4.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정보의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제3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권한 없이’란 처음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부여받은 권한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한 행위를 말하고,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란 권한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부여받은 권한 이상을 행사는 것을 말한다.

참고 용어해설

- 훼손 :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직하거나 일부를 지우거나 다르게 만들어서 본래의 개인정보의 특성, 효용 및 사회적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침해하는 행위
- 멸실 : 개인정보를 삭제·폐기·소각 등을 하여 없애버리는 행위
- 변경 : 개인정보의 내용을 본래의 것과 다르게 바꾸는 행위
- 위조 :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드는 행위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법」에 의한 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이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신용정보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정보회사들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법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들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59조제2호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2조제2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59조제2호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5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한 자 (제59조제3호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6호)

제60조 | 비밀유지 등

법률

-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제8장

보
칙

이 법에 따른 조사, 검사, 심의, 평가, 조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영업비밀을 다룰 기회가 많다. 따라서 본 조는 그들에게 업무상 비밀보장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료제출, 의견개진, 시설공개 등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 비밀보장 등의 의무대상자

이 조에 따른 비밀보장 등의 의무대상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업무,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이다. 예컨대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전·현직 위원 및 임직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등이 해당된다. 이들 기관의 전·현직 위원이나 임직원은 아니지만 이들 기관에서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의 신분으로 업무에 참여하거나 감정평가, 기술자문, 법률자문 등의 업무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된다.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란 각종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은 물론 사회 통념상 비밀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즉 해당 개인·기업·국가의 입장에서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된다.

예컨대 개인의 사생활, 기업의 영업비밀, 그밖에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취급해야 할 사항은 모두 이에 포함될 수 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그 조직의 정보시스템의 보안상 취약점을 알아내 강연·발표 등에서 이를 누설하거나 해킹·협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란?

보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정보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이나 수사과정이 진행 중인 수사 관련 내용,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누설 및 목적 외 이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컨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또는 감정을 요구받은 경우, 「형사소송법」(제146조, 제221조)에 의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을 받은 경우 등이다.

참고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참고 2 형사소송법

- 제147조 (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직무상 목적 외 사용 (제60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2조제3호)

제61조 |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법률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58조(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① 법 제61조제2항·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법 제6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징계권고는 권고 사항, 권고 사유 및 조치 결과 회신 기간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조례에 대한 의견제시(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시의 예로는 타부처 법령 제·개정안, 지자체 조례 및 부처별 소관분야 지침 등에 대한 의견 제시, 조약 및 협약의 제·개정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있다.

의견제시의 상대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하여는 의견제시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개인정보 처리실태 개선권고(제2항, 제3항)

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개선권고(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관행, 내부규칙,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정보처리방침, 거래약관, 안내문, 내부교육자료 등이 개선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집행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개선권고를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통신사업자 등 다른 부처 소관의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개선권고 및 법 제6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징계권고는 권고 사항, 권고 사유 및 조치 결과의 회신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소관 법률」에 의한 개선권고(제3항)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개별법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권고를 하려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별도의 소관 법률이 있어야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개선권고는 할 수 없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권을 부여한 것은 그 분야만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다 조치결과의 통보의무(제2항, 제3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선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58조).

3. 소속기관 등에 대한 의견제시 및 지도·점검(제4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헌법기관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62조 | 침해 사실의 신고 등

법률	<p>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p>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2.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p>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p>
시행령	<p>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p>
표준지침	<p>제30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2.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대한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실 안내 및 시정 유도 4. 사실 조사 결과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의 종결 처리 5. 법 제43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내 등을 통한 고충 해소 지원

1. 개인정보 침해피해의 신고(제1항)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정보주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도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제2항 및 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영 제59조),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접수된 사건에 대한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 의견청취, 그 밖에 이들 업무에 딸린 부수적 업무를 수행한다.

3. 소속 공무원의 파견(제4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접수된 사건에 대한 사실 조사·확인 등의 업무(제3항제2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 〉

제63조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법률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시행령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3조의 자료제출 요구는 법 위반행위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11조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제출과 구분된다.

1. 물품·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제1항, 제3항)

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위반혐의를 포착한 경우, 법위반에 대한 신고·민원을 접수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의 발생(개인정보 유출·사고 등)하는 경우, 향후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통신사업자 등 다른 부처 소관의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법 집행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소관 법률」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개별법(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는 할 수 없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한 것은 그 분야만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2. 사무소·사업장 등의 출입 및 검사(제2항, 제3항)

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출입 및 검사(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출입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통신사업자 등 다른 부처 소관의 민간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출입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법 집행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소관 법률’에 의한 출입 및 검사(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소관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출입 및 검사를 할 수는 없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한 것은 그 분야만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다 관계인에 대한 증표제시 의무(제2항 후단)――

공무원이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등의 권리(제4항)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협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서류·자료 등의 제공·공개 금지(제5항)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의 보호(제6항)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서류·자료 등의 제공·공개 금지(제7항)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는 부처간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7. 기술자문 등 전문기관의 지원(영 제60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8.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은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1천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는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 법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p>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신용정보법	<p>제45조(감독·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p> <p>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면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요구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p>제5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3.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제64조~제66조 |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권고 등

법률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1조(결과의 공표)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
- ②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호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신고, 조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정 명령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바로 잡고,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징계하게 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사후 구제 및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1. 시정조치 명령(제64조 제1항, 제2항, 제3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 조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해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시정조치 등을 명하기 위해서는 이 법 위반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그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는 개인정보 유출사이트 차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약관의 개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이나 단체·개인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지방공단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시정조치 권리(제64조제4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호위원회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그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기 위해서는 이 법 제8조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위반자의 고발 및 징계권고(제65조)

가 수사기관에 고발(제1항, 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별도의 소관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고발할 수 없다.

나 소속기관 등에 대한 징계권고(제2항, 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그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소관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소관 법률에 따라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징계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별도의 소관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징계를 권고할 수 없다.

법 제6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징계권고는 권고 사항, 권고 사유 및 조치 결과의 회신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징계권고를 받은 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시정조치 명령 등의 결과 공표(제66조제1항, 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개선권고(제61조), 시정조치 명령(제64조), 고발 또는 징계권고(제65조), 과태료 부과(제75조)의 내용과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선권고(제61조), 시정조치 명령(제64조), 고발 또는 징계권고(제65조), 과태료 부과(제75조)의 내용과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소관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개선권고(제61조), 시정조치 명령(제64조), 고발 또는 징계권고(제65조), 과태료 부과(제75조)의 내용에 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5. 결과 공표의 방법·절차 등(제3항)

가 결과 공표의 방법(영 제61조제1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조치 명령 등의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행위를 한 자,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나 결과 공표시 고려사항(영 제61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조치 명령 등의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결과 공표의 절차(제1항, 영 제61조제3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조치 명령 등의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제1항). 또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영 제61조제3항).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요구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p>제64조(자료의 제출 등)</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신용정보법	<p>제45조(감독·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p> <p>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면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p> <p>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리·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요구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p>제5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3.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제67조 | 연차 보고

법률

제67조(연차보고) 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
3. 개인정보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4.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5.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시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

[시행일 : 2017.3.30.] 제67조제2항제5호

제67조(연차보고) 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
3. 개인정보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4.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5.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제정·개정 현황
6.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시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

연차보고서란 개인정보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매년 작성되는 보고서를 말한다. 연차보고서에는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 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 개인정보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시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차보고서는 보호위원회가 관계기관 등(행정자치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제68조 | 권한의 위임·위탁

법률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탁) ① 삭제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대체가입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기관·단체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4.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상담과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5.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위임(제1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에 대한 권한 위탁(제3항, 영 제62조)

행정자치부장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다음의 권한을 위탁한다. 다만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은 현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해서만 위탁되어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기관	위탁 권한 내용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
한국인터넷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상담과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3. 위임·위탁업무 처리 결과의 통보(제2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 | 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률

제69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을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를 공무원으로 본다. 그 수탁업무의 특성상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행위일지라도 그를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겠다는 의미이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을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9장 벌 칙

제70조 벌칙

제71조 벌칙

제72조 벌칙

제73조 벌칙

제74조 양벌규정

제74조의2 몰수·추징 등

제75조 과태료

제7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0조~제73조 | 벌칙

법률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호 법의 중요성,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및 사회적 비용 등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형사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재이유
제70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p>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의 각종 공적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처리의 오류 발생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업무방해라는 고의적·악의적 목적이 있으므로 강력 제재 ☞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여 불법 유통시킴으로 인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 제기
제71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은 자 포함) 2. 불법정보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은 자 포함) 3. 민감정보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4.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5.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은 자 포함) 6.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한 자 	<p>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는 유출시 정보주체의 사생활 등 권리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유출, 누설 등은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되어 정보주체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고, 개인정보의 전전유통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
제7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p>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확대·회전하거나 녹음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규제 필요

조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재이유
제73조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를 포함)		☞ 피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얻는 행위는 목적 외 이용·제공보다는 가별성이 약하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규정함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 이 법의 규율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의 비밀누설 등 행위와는 달리, 위원회 위원 등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규정
제73조	1.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당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므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누출 등이 된 경우 형사처벌로 엄격 제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정보주체의 정정요청에 따른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이용·제공할 경우, 정보주체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엄격 규제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행위에 반대하여 처리정지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이용·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가 크므로 엄격 규제

개인정보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의무의 수범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하고 이들에게 법률위반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인 등일 것을 감안하여 담당 업무로 개인정보를 실제 처리한 자에게도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일례로 일부 입주민들의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 서명 등이 기재된 동대표 해임서를 보관하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를 해임대상자인 동대표에게 열람하도록 제공한 사안에서, 원심은 아파트 관리소장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므로 법률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실제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법 제71조 제5호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판결).

판례 1 법 제71조 제5호의 형사책임 대상자 범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판례 2 법 제71조 제5호의 형사책임 대상자 범위(2)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뉴스 사이트에 甲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甲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더라도 제71조 제5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정1144판결)하였다.

참고로 위 사안에서 인터넷 신문 기자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언론이 취재, 보도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언론의 특성상 개인정보의 ‘이용’이라는 것은 취재 과정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①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예외 규정은 법 제3장에서부터 제7장까지 적용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제8장에 속하는 규정인 점, ②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예외 규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한정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수집’, ‘이용’과 ‘제공’, ‘공개’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언론이 취재·보도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에 개인정보를 일반 공중에게 보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판례 1 법 제71조 제5호의 형사책임 대상자 범위(3)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 丙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방 조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丙으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은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서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丙은 피고인 甲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일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17판결).

판례 2 법 제72조 제2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열람 또는 제공받기 위하여 행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처리정보 열람 또는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법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때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제74조 | 양벌규정

법률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을 과한다.

이는 임직원, 대리인 등의 범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행위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도 처벌함으로써 임직원, 대리인 등의 업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 수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형사책임

법원은 A택배회사와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고객들에게 운송하는 일을 담당한 甲이 A社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에서, 甲은 「정보통신망법」 제66조에서 정한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A社가 甲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 제24조제2항 및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A社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다.(수원지법 2005. 7. 29. 선고 2005고합160 판결)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직원, 대리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무조건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형사벌을 부과할 경우 과중한 제재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법인 또는 개인)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고 양벌규정 위헌사례

종업원의 업무 관련 무면허의료행위가 있으면 이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한다. (현재 2007.11.29.자,결정)

제74조의 2 | 몰수·추징 등

법률

제74조의2(몰수·추징 등)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5년 7월 법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몰수와 추징 제도를 도입하였다.

몰수(沒收)라 함은 범죄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을 말한다. 몰수의 종류에는 ① 임의적 몰수와 ② 필요적 몰수가 있으며, 몰수는 임의적 몰수를 원칙으로 한다(형법 제48조). 특별법의 각 규정에 따른 몰수·추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법 제4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형법의 일반규정에 따른 임의적 몰수·추징도 가능하다(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352 판결 등).

추징(追徵)은 몰수의 대상인 물건은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사법처분을 말한다(형법 제48조제2항). 추징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이를 몰수의 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법처분”이나 실질적으로는 몰수에 갈음하는 “부가형”的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등).

판례 몰수 요건 및 한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할 것이다.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물건 (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제75조 | 과태료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 4의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 7의2.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흥보한 자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11.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법률

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과태료와 벌칙의 차이점

‘과태료’란 일정한 기준이나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정관청이 직접 부과하는 ‘행정 질서벌’로서 이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벌칙’(형벌)은 형법이나 기타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형사벌을 말하며, 여기에는 징역, 벌금 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지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공개 등 일정 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동의없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을 벌칙 대상이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과태료 부과대상은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고 있고, 형사처벌은 행위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인데 반하여 과태료는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재를 과하는 것이므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형사처벌과 과태료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원칙(原則)”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刑罰權)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處罰)”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課罰)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制裁)나 불이익처분(不利益處分)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4. 6. 30.자 92헌바38 결정)

2. 과태료 부과·징수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공공기관도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3. 과태료 내용

조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재이유
제75조 제1항	1. 개인정보의 수집기준을 위반한 자 2.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의무를 위반한 자 3. 탈의실·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5천만원 이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질서 확립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므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75조 제2항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획득시,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획득시, 직접 마케팅 업무위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정보주체 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자 4.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4-2. 법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파기의무, 안전조치 의무, 주민 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의무,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청시 필요조치 이행의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부과된 의무사항이므로 단순한 절차규정 위반행위보다 높은 과태료 부과 ☞ 법집행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조치 불응은 단순절차규정 위반보다 높은 과태료 부과

조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재이유
	4-3. 암호화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기준 위반한 자 7-2. 거짓으로 인증내용을 표시 또는 홍보 8.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개인정보 유출사실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부당하게 제한·거절한 자 11. 정보주체의 정정요구에 따라 필요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3. 시정명령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5조 제3항	1. 미파기 개인정보의 별도 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2. 동의획득 방법을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 3.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적법한 문서에 의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한 자 5. 업무위탁시 공개의무를 위반한 자 6.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거부시 통지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관계물품·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로 제출한 자 11.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고지·공개·통지의무, 지정의무 등 단순 절차 사항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범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의 세부적인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영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과징금·과태료 합리화 방안」(법제처,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9년)에 따라 위반횟수 3차, 횟수에 따른 가중비율 1:2:4로 정하였다.

〈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63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라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1호	1000	2000	4000
나. 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호	600	1200	2400
다. 법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호	600	1200	2400
라.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3호	600	1200	24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바.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1호	200	400	800
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2호	200	400	800
아.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2호	1000	2000	4000
자.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의2	600	1200	2400
차.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의3	600	1200	2400
카. 법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5호	600	1200	2400
타.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파.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7호	600	1200	2400
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3호	1000	2000	4000
거.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3호	200	400	800
너.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4호	200	400	800
더.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5호	200	400	800
러.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 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6호	200	400	800
머.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7호	200	400	800
비.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8호	500		
서. 법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흉보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7호의2	600	1200	2400
어.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8호	600	1200	2400
저.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9호	600	1200	2400
처.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0호	600	1200	2400
커. 법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법 제75조	200	400	8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제3항제9호			
터.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1호	600	1200	2400
퍼.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	600	1200	2400
허.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10호	100 200	200 400	400 800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고.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11호	200	400	800
노.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3호	600	1200	2400

제76조 |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법률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경우와 관련된 처벌은 아래와 같다.

구분	제재 내용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 및 주민번호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억원 이하의 과징금

그런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형벌, 과징금, 과태료의 세 가지 제재를 병과할 경우 이 중 형벌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서로 법적 성격이 다른 형벌과 행정벌을 병과하는 것이므로 이중 처벌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 제재로 인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과태료와 과징금은 의무위반에 대한 동일한 행정벌 성격의 금전적 제재이므로 이 경우에도 중복 제재로 인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하여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참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8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7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 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및 지침 별표/서식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014.11.19.>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른 감리원(ISA)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조작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공인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 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격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의 임직원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암호기술, 인증기술 등을 말한다), 시스템·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해킹·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을 말한다) 또는 응용서비스 보호(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계획, 분석, 설계, 개발, 운영, 유지·보수, 감리, 컨설팅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신설 2014.8.6.>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0조의2제1항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의 위반 정도에 따른 산정기준액에 나목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다목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을 거쳐 라목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가. 기본 산정기준

위반 정도	산정기준액	비 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5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이하 “분실등”이라 한다)된 경우를 말한다.
중대한 위반행위	2억 3천만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 및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일반 위반행위	1억원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등이 된 경우를 말한다.

나. 1차 조정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다. 2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따른 추가적 피해 발생 여부, 평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산정

개인정보처리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2] <개정 2016. 9. 29.>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 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라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1호	1000	2000	4000
나. 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호	600	1200	2400
다. 법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2호	600	1200	2400
라.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3호	600	1200	2400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바.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1호	200	400	800
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2호	200	400	800
아.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2호	1000	2000	4000
자.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의2	600	1200	2400
차.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의3	600	1200	2400
카. 법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5호	600	1200	2400
타.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파.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7호	600	1200	2400
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제3호	1000	2000	4000
거.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3호	200	400	800
너.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4호	200	400	8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더.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5호	200	400	800
러.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6호	200	400	800
머.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7호	200	400	800
버.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8호	500		
서. 법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7호의2	600	1200	2400
어.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8호	600	1200	2400
저.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9호	600	1200	2400
처.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0호	600	1200	2400
커. 법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9호	200	400	800
터.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1호	600	1200	2400
퍼.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2호	600	1200	2400
허.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10호	100 200	200 400	400 800
고.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제3항제11호	200	400	800
노.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3호	600	1200	2400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input type="checkbox"/> 목적외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m²]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1.19.>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	----	------	------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1.19.>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법인 설립일
신청인	소재지	전화번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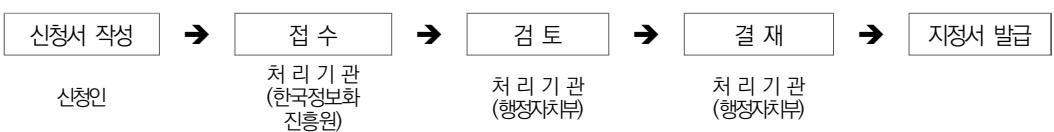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다음의 서류<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 현황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처리절차



210mm × 297mm [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소재지	

①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 있음 [] 없음

②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 설비

명칭	설비 등의 세부사항	수량	비고

③ 기록 및 자료의 안전관리 설비

명칭	설비 등의 세부사항	수량	비고

작성방법

①의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있음'란에 [] 표시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없음'란에 [] 표시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1.19.>

제 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

1. 대 표 자 :
2.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3. 법 인 명 :
4. 주 소 :
5. 전화번호 :
6. 지정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하였으므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직 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m²]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1.19.>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일			
구분	종 전	변 경	
수행 인력			
사무실 및 설비			
평가 기관 양도·양수 또는 합병 등	종 전	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변 경	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법인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대표자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대표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양수·합병 등의 경우 양도·양수 또는 합병 계약서 등 사본 1부 2. 그 밖의 변경사항 증명서류 각 1부
------	---

유의사항

위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 · 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	-----	-------------

정보주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요구내용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정정·삭제 <input type="checkbox"/>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귀하

작성방법

-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란에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란에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란에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② 우송료	계(①+②)			
	원	원	원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요구 내용	
<input type="checkbox"/> 정정·삭제 <input type="checkbox"/> 처리정지 조치 내용	
<input type="checkbox"/> 정정·삭제 <input type="checkbox"/>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34g/m²]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표 1호서식]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 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2호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청구서					처리기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1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2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3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4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5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6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7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4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5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6호서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대장

구분	주요내용
① 개인정보파일명	
② 이용·제공받는 기관	
③ 이용·제공일자	
④ 이용·제공주기	
⑤ 이용·제공형태	
⑥ 이용·제공목적	
⑦ 이용·제공근거	
⑧ 이용·제공항목	
⑨ 비고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협·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협·단체 설립일
	주소	전화번호
협·단체 사항	협·단체 소관부처	소관부처 담당자
	소관부처 담당자 전화번호	전체 회원사 (개인정보처리자) 수 업종
관리능력 단체역량	담당 조직·인력	개인정보 가용 예산 규모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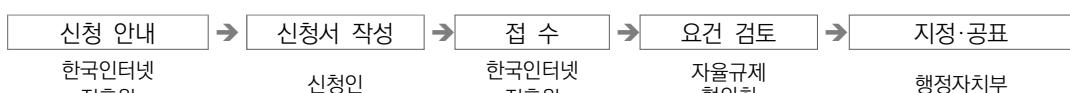
신청인

년 월 일
(회사 직인 또는 인감)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수행 계획(추진의지, 실행조직및재원, 활동실적 및 계획 등)
------	---

처리절차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서

1. 협회(단체)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주 소 :

4. 대 표 자 :

5. 지정조건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귀 협회(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m²]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별표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유형	적용 대상	안전조치 기준
유형1 (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 :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 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제7조 :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유형2 (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1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 :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5호,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6조 :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7조 :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유형3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 (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제 출 서 류
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참여 실적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	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참여실적 명세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인증심사 참여통지 문서 등) 나. 인증심사원 자격 증빙 자료
2.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가.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 이익률의 계산내역 (회계결산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 나. 인증심사 업무 운영체계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기관의 운영체계 및 인증의 품질관리 ○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운영관리 등의 내부규정 ○ 인증심사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2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 관련)

가. 업무수행 요건 심사 세부기준

평가 항목	세부 평가기준
1. 인증심사원 5명이상 상시 고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함 - 다만, 심사팀장급 선임심사원 1명 이상 확보해야 함
2. 인증기관 공정성 확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인증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함

나. 업무수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지표	세부 평가방법								
1. 조직내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성 (30)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문성	10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원 이상 인력 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심사원 수</td> <td style="width: 50%;">점수</td> </tr> <tr> <td>5명 이상</td> <td>배점의 100%</td> </tr> <tr> <td>5명 미만</td> <td>배점의 x%</td> </tr> <tr> <td colspan="2">$\text{※ } x = (\text{심사원 수}/5명) \times 100$</td> </tr> </table> 	심사원 수	점수	5명 이상	배점의 100%	5명 미만	배점의 x%	$\text{※ } x = (\text{심사원 수}/5명) \times 100$	
심사원 수	점수											
5명 이상	배점의 100%											
5명 미만	배점의 x%											
$\text{※ } x = (\text{심사원 수}/5명) \times 10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지표	세부 평가방법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참여실적	10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상시 고용하고 있는 인증심사원이 최근 3년간 참여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참여 실적을 인정하고 평가점수는 개별 참여 실적을 합한 총 참여일 수에 따라 산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padding: 2px;">총 참여 일수(단위 : 일)</td> <td style="padding: 2px;">점수</td> </tr> <tr> <td style="padding: 2px;">200일 이상</td> <td style="padding: 2px;">배점의 100%</td> </tr> <tr> <td style="padding: 2px;">200일 미만</td> <td style="padding: 2px;">배점의 x%</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2px;">※ x = (총 참여일수/200일) × 100</td> </tr> </table>	총 참여 일수(단위 : 일)	점수	200일 이상	배점의 100%	200일 미만	배점의 x%	※ x = (총 참여일수/200일) × 100																	
총 참여 일수(단위 : 일)	점수																											
200일 이상	배점의 100%																											
200일 미만	배점의 x%																											
※ x = (총 참여일수/200일) × 100																												
2. 시설(10)	사무공간·인증심사 서류 보관 장소 및 보안설비·시설 확보	10	평가 점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padding: 2px;">세부 평가요소</td> <td style="padding: 2px;">점수</td> </tr> <tr> <td style="padding: 2px;">o 인증심사의 상담, 인증심사 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실</td> <td style="padding: 2px;">2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o 사무 관련 장비 확보</td> <td style="padding: 2px;">2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o 사무실 출입자에 대한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td> <td style="padding: 2px;">2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o 기록물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관 장소</td> <td style="padding: 2px;">2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o 인증심사 서류의 분실, 도난 등 예방을 위한 보안 시설</td> <td style="padding: 2px;">2점</td> </tr> </table>	세부 평가요소	점수	o 인증심사의 상담, 인증심사 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실	2점	o 사무 관련 장비 확보	2점	o 사무실 출입자에 대한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2점	o 기록물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관 장소	2점	o 인증심사 서류의 분실, 도난 등 예방을 위한 보안 시설	2점												
세부 평가요소	점수																											
o 인증심사의 상담, 인증심사 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실	2점																											
o 사무 관련 장비 확보	2점																											
o 사무실 출입자에 대한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설비	2점																											
o 기록물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관 장소	2점																											
o 인증심사 서류의 분실, 도난 등 예방을 위한 보안 시설	2점																											
3. 신뢰도 및 재정상태 건설도 (10) ※비영리기관 평가제외	부채비율 자기자본 이익률	5 5	비율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padding: 2px;">비율</td> <td style="padding: 2px;">점수</td> </tr> <tr> <td style="padding: 2px;">50%미만</td> <td style="padding: 2px;">5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50%이상 ~ 100%미만</td> <td style="padding: 2px;">4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100%이상 ~ 150%미만</td> <td style="padding: 2px;">3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150%이상 ~ 200%미만</td> <td style="padding: 2px;">2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200%이상</td> <td style="padding: 2px;">1점</td> </tr> </table> o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자기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padding: 2px;">비율</td> <td style="padding: 2px;">점수</td> </tr> <tr> <td style="padding: 2px;">20%이상</td> <td style="padding: 2px;">5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20%미만 ~ 15%이상</td> <td style="padding: 2px;">4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15%미만 ~ 10%이상</td> <td style="padding: 2px;">3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10%미만 ~ 5%이상</td> <td style="padding: 2px;">2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5%미만</td> <td style="padding: 2px;">1점</td> </tr> </table> 	비율	점수	50%미만	5점	50%이상 ~ 100%미만	4점	100%이상 ~ 150%미만	3점	150%이상 ~ 200%미만	2점	200%이상	1점	비율	점수	20%이상	5점	20%미만 ~ 15%이상	4점	15%미만 ~ 10%이상	3점	10%미만 ~ 5%이상	2점	5%미만	1점
비율	점수																											
50%미만	5점																											
50%이상 ~ 100%미만	4점																											
100%이상 ~ 150%미만	3점																											
150%이상 ~ 200%미만	2점																											
200%이상	1점																											
비율	점수																											
20%이상	5점																											
20%미만 ~ 15%이상	4점																											
15%미만 ~ 10%이상	3점																											
10%미만 ~ 5%이상	2점																											
5%미만	1점																											
4. 인증업무 운영 체계 (50)	인증기관의 운영 체계 및 인증 품질 관리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운영·관리 등의 내부 규정	20 10	평가 점수 평가 점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padding: 2px;">세부 평가요소</td> <td style="padding: 2px;">점수</td> </tr> <tr> <td style="padding: 2px;">o 인증기관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독립성 보증 방안</td> <td style="padding: 2px;">5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o 인증기관의 내부감사 실시 및 검토 등에 대한 방안</td> <td style="padding: 2px;">5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o 인증의 품질 보증 및 관리방안</td> <td style="padding: 2px;">5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o 인증업무의 기록 및 문서화 관리체계의 적절성</td> <td style="padding: 2px;">5점</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padding: 2px;">세부 평가요소</td> <td style="padding: 2px;">점수</td> </tr> <tr> <td style="padding: 2px;">o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규정 보유 및 동 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의무와 책임 등 준수사항 -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자체 보안관리 및 감독 요령 </td> <td style="padding: 2px;">5점</td> </tr> <tr> <td style="padding: 2px;">o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교육 및 평가 등에 대한 방안 및 그 방안의 적절성과 타당성</td> <td style="padding: 2px;">5점</td> </tr> </table>	세부 평가요소	점수	o 인증기관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독립성 보증 방안	5점	o 인증기관의 내부감사 실시 및 검토 등에 대한 방안	5점	o 인증의 품질 보증 및 관리방안	5점	o 인증업무의 기록 및 문서화 관리체계의 적절성	5점	세부 평가요소	점수	o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규정 보유 및 동 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의무와 책임 등 준수사항 -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자체 보안관리 및 감독 요령 	5점	o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교육 및 평가 등에 대한 방안 및 그 방안의 적절성과 타당성	5점								
세부 평가요소	점수																											
o 인증기관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독립성 보증 방안	5점																											
o 인증기관의 내부감사 실시 및 검토 등에 대한 방안	5점																											
o 인증의 품질 보증 및 관리방안	5점																											
o 인증업무의 기록 및 문서화 관리체계의 적절성	5점																											
세부 평가요소	점수																											
o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규정 보유 및 동 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의무와 책임 등 준수사항 -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자체 보안관리 및 감독 요령 	5점																											
o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교육 및 평가 등에 대한 방안 및 그 방안의 적절성과 타당성	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지표	세부 평가방법									
	인증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5	평가 점수	<table border="1"> <thead> <tr> <th>세부 평가요소</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인증 업무 수행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 인증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 인증심사팀 구성 원칙 - 인증심사 사후관리방안 등</td> <td>5점</td> </tr> </tbody> </table>	세부 평가요소	점수	○ 인증 업무 수행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 인증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 인증심사팀 구성 원칙 - 인증심사 사후관리방안 등	5점					
세부 평가요소	점수												
○ 인증 업무 수행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 인증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 인증심사팀 구성 원칙 - 인증심사 사후관리방안 등	5점												
	인증업무 지원체계	15	평가 점수	<table border="1"> <thead> <tr> <th>세부 평가요소</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운영자금 법인통장 보유 및 유지 수준</td> <td>5점</td> </tr> <tr> <td>○ 지정취소, 부도·해산 등에 따른 신청기관 피해보상 관련 대책마련 여부</td> <td>5점</td> </tr> <tr> <td>○ 인증의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td> <td>5점</td> </tr> </tbody> </table>	세부 평가요소	점수	○ 운영자금 법인통장 보유 및 유지 수준	5점	○ 지정취소, 부도·해산 등에 따른 신청기관 피해보상 관련 대책마련 여부	5점	○ 인증의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5점	
세부 평가요소	점수												
○ 운영자금 법인통장 보유 및 유지 수준	5점												
○ 지정취소, 부도·해산 등에 따른 신청기관 피해보상 관련 대책마련 여부	5점												
○ 인증의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5점												
5. 가점 및 감점	인증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증심사원 보유수	5 (가점)	보유 인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그 전담조직에 속한 직원에 대해 인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10명 이상</td> <td>5점</td> </tr> <tr> <td>10명 미만 ~ 5명 이상</td> <td>배점의 x%</td> </tr> <tr> <td>5명 미만</td> <td>없음</td> </tr> </tbody> </table> <p>※ $x = (\text{인원수}/10명) \times 100$</p> 	구분	점수	10명 이상	5점	10명 미만 ~ 5명 이상	배점의 x%	5명 미만	없음	
구분	점수												
10명 이상	5점												
10명 미만 ~ 5명 이상	배점의 x%												
5명 미만	없음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취득 및 유지	2 (가점)	인증 취득 및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고, 인증을 유지하고 있을 때 									
	자격취소 사실	5 (가점)	취소 사실 및 취소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행정자치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여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수행 자격이 취소된 경우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안전진단 수행기관 등 <p>※ 취소 1회당 : 감점 5점</p>									

〈비 고〉

- 평가항목에 대한 각 평가요소별 세부평가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항목에 대한 각 평가요소별 평가점수는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다만, 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다.
- 가점을 합한 점수가 100점을 초과해도 만점 100점으로 표기한다.
- ‘시설’, ‘인증업무 운영체계’에 대한 각 평가요소별 세부평가 점수 부여기준은 각 평가요소의 평가결과에 평가등급(계수)를 곱하여 나온 점수를 합산한다.

평가요소별 세부평가 점수	평가등급(계수)
100점 이하 ~ 90점 이상	우수(1.0)
90점 미만 ~ 80점 이상	보통(0.6)
80점 미만 ~	미흡(0.2)
미 제출	점수없음(0)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3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 (제7조 관련)

1.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

기본요건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정보기술 유관경력 또는 정보보호 유관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이 중 개인정보보호 실무경력 2년 이상을 보유

- 가. “동등학력”이란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 업무경력을 말한다.
- 나. “정보기술 유관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방송서비스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을 말한다) 또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패키지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정보기술 관련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 다. “정보보호 유관경력”이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 기술(암호기술, 인증기술 등) 분야, 시스템·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해킹·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 분야, 응용서비스 보호(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 보호 표준화 등)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 개발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경력을 말한다.
- 라. “개인정보보호 실무경력”이란 공공기관·기업체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마.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경우에는 6년의 정보기술 유관경력 또는 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 바. 모든 해당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하며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경력 대체 요건

구 분	경력 인정요건 해당 자격	인정기간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유관경력 인정 요건 (중복경력인정 불가)	가.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의 ‘정보기술’ 직무분야 기술사 다. 정보시스템감리사(ISA)	2년
	가.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의 ‘정보기술’ 직무분야 기사 다. 정보보안기사(정보보호전문가) 라.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마.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1년
개인정보보호 실무경력 인정 요건 (중복경력인정 불가)	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2년
	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나. 개인정보보호 관리사(CPPG)	1년

2. 인증심사원 등급별 자격 요건

구 分	자격 기준
심사원보	○ 인증심사원 학력 및 경력요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
심사원	○ 심사원보 자격 취득자로서 인증심사에 4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20일 이상인 자
선임 심사원	○ 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3회 이상 심사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자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4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산정기준 (제15조 관련)

1. 인증 수수료 산정 방식

$$\text{인증 수수료} = \text{직접인건비} + \text{직접경비} + \text{제경비} + \text{기술료}$$

- ① 직접인건비는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산정한다. 인건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정보보안 컨설팅비를 준용한다.

인증심사원 등급	컨설턴트 등급
선임심사원	전임 컨설턴트 이상
심사원	
심사원보	컨설턴트

- ② 직접경비는 인증심사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대 등 인증심사업무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산정한다.
- ③ 제경비는 최대 ($\text{직접인건비} \times 120\%$) 로 산정한다.
- ④ 기술료는 최대 $\{(\text{직접인건비} + \text{제경비}) \times 40\%\}$ 로 산정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5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제16조 관련)

인증기준			상세내용			적용 유형					
개인 정보 보호	1. 관리 체계 수립 (7)	1.1 정책 및 범위	1.1. 1 정책의 수립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시행문서를 수립하여 조직의 개인정보보호 방침과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관리) 책임자 등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유형 (4) 공공 기관	○	○	○	○
			1.1. 2 정책의 유지관리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시행문서는 관련 법·규제를 준수하고, 상위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개정 및 이력관리하고 운영기록을 생성·유지하여야 한다.			유형 (3) 대기업	○	○	○	
			1.1. 3 범위설정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요한 업무, 서비스, 조직, 자산 등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유형 (2) 중소 기업	○	○	○	
		1.2 경영진의 책임	1.2. 1 경영진의 참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등 조직이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 결정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유형 (1) 소상공인	○	○		
		1.3 조직	1.3. 1 개인정보 보호(관리) 책임자의 지정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활동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유형 (4) 공공 기관	○	○	○	○
			1.3. 2 조직의 구성	조직 전반의 중요한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을 검토 및 의사결정할 수 있는 조직(협의체)을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형 (3) 대기업	○	○	○	
			1.3. 3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관리(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각 부서의 책임자, 담당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정의하여야 한다.			유형 (2) 중소 기업	○	○	○	
관리 과정	2. 실행 및 운영 (5)	2.1 개인정보 식별	2.1. 1 개인정보 식별	조직의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관련 자산을 식별하고 중요도를 결정하여 보안등급을 부여한 후 그에 따른 취급절차를 정의·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자산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유형 (4) 공공 기관	○	○	○	○
			2.1. 2 개인정보 흐름 파악	조직의 개인정보 관련 서비스 및 업무에서 개인정보 흐름을 파악하여 개인정보 흐름도(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유형 (3) 대기업	○	○	○	
	2.2 위험 관리	2.2. 1 위험관리 방법 및 계획 수립	위험관리 방법에 대하여 위험식별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위험관리 방법을 선정하고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형 (2) 중소 기업	○	○	○		
		2.2. 2 위험식별 및 평가	위험관리 방법 및 계획에 따라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연 1회 이상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위험수준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유형 (1) 소상공인	○	○	○		
		2.2. 3 이행계획 수립 및 보호대책 구현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립된 이행계획에 따라 보호대책을 구현하여야 한다.			유형 (4) 공공 기관	○	○	○		
3. 검토 및 모니터링(2)	3.1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검토	3.1. 1 법적요구 사항 준수검토	조직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유형 (3) 대기업	○	○	○		
		3.1. 2 내부 감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내부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내부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유형 (2) 중소 기업	○	○	○		

인증기준					상세내용	작용 유형			
4.교정 및 개선 (2)	4.1 교정 및 개선 활동	4.1.1 개인정보 보호 개선 활동				유형 (4) 공공 기관	유형 (3) 대기업	유형 (2) 중소 기업	유형 (1) 소상공인
	4.2 내부 공유 및 교육	4.2.1 내부 공유 및 교육	개인정보 관리계획을 운영 또는 이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	○	○
생명 주기 및 권리 보장	5.개인 정보 생명주기 관리 (16)	5.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 조치	5.1.1 개인정보 수집 제한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문서화하여 그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	○	○	
			5.1.2 정보 주체의 동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해야 한다.		○	○	○	○
			5.1.3 법정 대리인 동의 및 고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	○	○	○
			5.1.4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의 수집 제한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할 수 없다.		○	○	○	○
			5.1.5 주민등록 번호 수집·이용 제한	법령에서 정보주체(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	○	○	○
			5.1.6 주민등록 번호 대체수단	법령에서 정보주체(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	○	○
			5.1.7 간접수집 보호조치	시스템에 의한 수집 또는 개인정보 처리를 통해 생성한 간접 수집 개인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	○	○	○
			5.1.8 개인정보 처리(취급) 방침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을 수립하여 정보주체(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	○	○
	5.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5.2.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 관련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획득한 후 제공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절차에 따라 통제해야 한다.		○	○	○	○	○
		5.2.2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관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	○	○	○
		5.2.3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고지·동의받은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용하여야 하며, 만약 등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추가 동의를 획득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5.2.4 개인정보의 이전	영업의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적절한 보호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	○	○	○	○
	5.3 개인정보 보유 시 보호 조치	5.3.1 개인정보 품질 보장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 하여야 하며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		○	○	○	○	○
		5.3.2 개인정보 파일관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은 그 현황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인증기준					상세내용				적용 유형			
유형 (4) 공공 기관	유형 (3) 대기업	유형 (2) 중소 기업	유형 (1) 소상 공인									
개인 정보 보호 대책	6. 정보 주체 권리 보장 (4)	5.4	개인 정보 파기 시 보호 조치	5.4. 1	개인정보 파기 규정 및 절차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수립하고, 파기 관련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기록은 탈퇴 전까지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4. 2	개인 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달성된 경우, 안전한 방법으로 자체없이 파기하고 관련 사항은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달성을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보유가 필요하다면 정보주체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최소한의 항목을 보유해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1	권리 보장	6.1. 1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 방법 및 절차를 제공하고, 정보주체 (이용자)가 요구 시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1.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 요구 시 자체없이 처리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1. 3	개인정보 처리 정지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 방법 및 절차를 제공하고, 처리정지 요구 시 자체없이 처리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1. 4	권리 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정보주체(이용자)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관리적 보호조치 (10)	7.1	교육 및 훈련	7.1. 1	교육 및 훈련 시행 평가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임직원 및 외부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개인 정보 취급자 관리	7.2. 1	개인정보 취급자 감독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 및 외부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의 충실향 이행 여부에 대해 상별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3		7.2. 2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임시직원, 외부자 등에게 보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2. 3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개인정보취급자의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자산반납, 계정 및 권한 회수·정정, 결과 확인 등의 개인정보취급자 인사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3. 1	외부 위탁 계약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요구사항, 관리감독, 법규정 위반의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에 문서화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4	침해 사고 관리	7.3. 2	정보주체 고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수탁자, 수탁 목적 등 관련사항을 정보주체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3. 3	위탁자 관리·감독	위탁 업체가 계약서 및 서비스 수준 협약, 관련 법·규정 등에 명시된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는지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4. 1	침해사고 대응절차 및 체계구축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수립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외부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조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4. 2	침해사고 훈련 및 개선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임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의훈련 결과는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4. 3	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신속히 복구를 수행하고, 사고분석 후 발견된 취약점을 관련 조직 및 임직원과 공유하며,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침해사고 대응 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기술적 보호조	8.1	접근 권한 관리	8.1. 1	접근통제 정책 수립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인증기준						상세내용				작용 유형			
치 (32)	접근 제한 관리	접근 기록 관리	8.1.	개인정보 취급자 등록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개인정보 취급자 등록 및 해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 PC의 보안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규정화하고 인식시켜야 한다.				유형 (4) 공공 기관	유형 (3) 대기업	유형 (2) 중소 기업	유형 (1) 소상 공인	
			8.1.	개인정보 취급자 권한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업무수행자에게만 부여하고 권한변경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	○	○	○	
			8.1.	특수권한 관리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 통제하여야 한다.				○	○	○	○	
			8.1.	개인정보 취급자 접근 권한 검토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	○		
			8.1.	개인정보 취급자 인증 및 식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시 안전한 인증 절차에 따라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	○	○	○	
			8.1.	비밀번호 관리	법적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및 사용자, 정보주체(이용자)의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	○	○	
			8.2.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보관하고, 접속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장비 및 시스템을 표준시간으로 동기화하여 해야 한다.				○	○	○	○	
			8.2.	접속기록 모니터링	접속기록은 위·변조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사후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			
8.3	접근 통제 영역 관리	접근 접근	8.3.	네트워크 접근	유·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네트워크 접근통제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서비스, 사용자 그룹, 개인정보 자산의 중요도, 법적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를 분리하여야 한다.				○	○	○	○	
			8.3.	서버 접근	서버별로 접근이 허용되는 사용자, 접근제한 방식, 안전한 접근수단 등을 정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	○	○	
			8.3.	응용 프로그램 접근	사용자의 업무 또는 직무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	○	○	○	
		접근 통제 영역 관리	8.3.	데이터 베이스 접근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허용하는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직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응용프로그램 및 직무별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	○	
			8.3.	원격 운영접근	내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경우 특정 단말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외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허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			
			8.3.	인터넷 접속 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취급자의 PC는 인터넷 접속 또는 서비스를 제한 및 통제하고, 필요시 인터넷 접속내역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			
8.4	운영보 안	운영보 안	8.4.	운영절차 수립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동작에 문제 발생 시 재 동작 및 복구, 오류 및 예외사항 처리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			
			8.4.	직무분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적용하고, 직무 분리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 별도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인증기준			상세내용			적용 유형			
						유형 (4) 공공 기관	유형 (3) 대기업	유형 (2) 중소 기업	유형 (1) 소상 공인
			8.4. 3	악성코드 통제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정보시스템과 개인 정보취급자 단말기(PC, 노트북 등)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4. 4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시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적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들은 조치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4. 5	개인정보 표시제한	개인정보 조회, 출력 등을 수행할 경우, 마스킹 기술 등을 통해 개인정보 표시를 제한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4. 6	보안 시스템 설치·운용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차단 및 탐지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시스템 운영질차를 수립하고 보안시스템별 정책적용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4. 7	공개 서버 보안	웹사이트 등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보 수집, 저장, 공개에 따른 허가 및 계시절차를 수립하고 공개서버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4. 8	모바일 기기 관리	업무 목적으로 모바일기를 내·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모바일기기 접근통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4. 9	백업 관리	데이터의 무결성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백업 절차를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백업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4. 10	패치 관리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등에 대하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주기적으로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5	암호화 통제	8.5. 1	암호화 정책 수립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5. 2	암호화 적용	암호화 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원격접속 시 암호화를 수행하고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개발 보안	8.6. 1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8.6. 2	개발 시 보안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발·변경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수행 결과를 보안 요구사항에 포함하여 개발하고, 안전한 코딩방법에 따라 구현 및 시험을 수행하며, 취약성에 대한 노출여부를 점검하여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5. 3	개발과 운영환경 분리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운영 환경으로의 이관은 통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실행코드는 시험과 인수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5. 4	시험 데이터 및 소스 프로그램 보안	운영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할 시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스 프로그램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하도록 통제하고 운영환경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5. 5	외주개발 보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을 외주 위탁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보안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 물리적 보호 조치 (8)	9.1	영상 정보 처리 기기 관리	9.1. 1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설치 목적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 (안내판 설치 등)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1. 2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적절한 위탁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인증기준						상세내용	작용 유형			
							유형 (4) 공공 기관	유형 (3) 대기업	유형 (2) 중소 기업	유형 (1) 소상 공인
9.2	물리적 보안 관리	9.2. 1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	주요 설비 및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의 작업 절차를 포함하여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의 특성에 따라 보호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련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2. 2	출입통제 및 사무실 보안	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출입 및 접근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기기 등에서 중요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9.2. 3	개인 업무 환경 보안	책상 위에 중요 문서나 저장매체를 남겨놓지 않고, 중요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9.3	매체 관리	9.3. 1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저장매체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저장매체 관리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폐기 및 재사용 시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복구 불가능하도록 원전히 삭제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3. 2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휴대용 저장매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거나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3. 3	이동 컴퓨팅 관리	보호구역 내 임직원 및 외부자의 이동컴퓨팅에 대하여 반·출입을 통제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6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표시 (제25조 관련)

1. 도안모형



2. 인증 표시에 대한 유의사항

- 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사실의 홍보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에 대한 홍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나. 인증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유형, 유효기간, 인증범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다. 인증유형을 기재할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신청기관 유형 중 인증받은 기관에 해당되는 유형을 기재하여야 한다.
- 라.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의 사실을 과장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3. 인증 표시의 사용 방법

- 가. 인증 표시는 지정된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 흑백으로 사용하거나 표시된 인쇄물의 주된 단일색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 나. 인증 표시의 크기는 표시물 대상의 크기나 표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다. 일반문서, 편지의 상단, 송장, 홍보 책자 등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 사실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4. 인증명판 제작 시 유의사항

- 가. 소재는 가급적 동판으로 제작한다(전체 두께 1.0cm, 바탕 0.4cm, 테두리 폭 0.5cm)
- 나. 바탕색은 가급적 연마하지 않은 황동색으로 한다.
- 다. 도안 모형은 인증의 표지를 중앙에 둔다.
- 라. 글씨 및 도형은 양각으로 한다.
- 마. 크기는 사각형으로 하며 가로와 세로 비율을 3 : 2로 하여 일정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서식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개월 이내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총 직원 수	인증심사원 직원 수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지정
인증에 관한 업무범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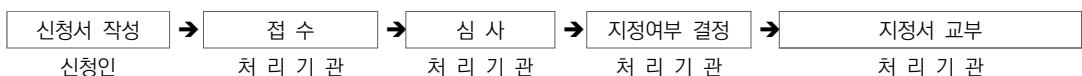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자치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별표 1의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서식2

인증심사원 보유현황

(제1쪽)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직원 수	인증심사원 직원 수

일련 번호	성명	주소		최종학력	해당요건
		생년월일	입사일		

유의사항

- 「해당요건」란에는 선임심사원, 심사원, 심사원보 요건을 기재한다.
- 기재된 최종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직원의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 3의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은 기술자격증 사본 등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 유관경력 또는 정보보호 유관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근무부서 또는 담당업무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와 해당 직원이 신청업체에 현재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서식3

인증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보유현황

(제2쪽)

210mm × 297mm [백상지(80g/m²)]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서식4

인증실적 보고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실적 총계	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	등 등 등

일련 번호	인증 번호	대상기관(기업)명	인증범위	유효기간	구분		
					최초 심사	사후 심사	갱신 심사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자치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제출서류	1. 상세 인증실적 보고서 1부.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서식5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진
	소속					
	주소	(우:)				
	휴대전화					
	이메일					
신청분야						
학력사항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대졸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박사
경력사항 ※ 서류로 증명가능한 내용만 기술	총 경력	총 년 개월 (①+②)		①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유관경력	총 년 개월 (대체 경력 : 년 포함)	
		※중복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경력대체 내역	<input type="checkbox"/>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 대체사항		②개인정보보호 유관 경력	총 년 개월 (대체 경력 : 년 포함)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보호 경력 대체사항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 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별표3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내역서	
	2. 자격 증빙서류	
	① 학위증명서	
	② 관련 경력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상세 경력증명서 또는 상세 재직증명서	
	③ 기술실적증명서(해당 시)	
	④ 자격 증명서(해당 시)	
	3. 정보보호 서약서	
	4.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서식6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

발급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취득자격 :

유효기간 : ~

위 사람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m²)]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서식7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증신청의 구분	<input type="checkbox"/> 최초심사	<input type="checkbox"/> 사후심사	<input type="checkbox"/> 간선심사
신청기관 유형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 밖의 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input type="checkbox"/>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의 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의 수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명)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80g/m²)]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서식8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서

인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인증 유형 :

인증의 범위 :

유효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증합니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장

직인

**CERTIFICATE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ertificate Number :

Name of Organization :

Name of Representative :

Address :

Certification Type :

Scope of Certification :

Period of Validity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organization is compliant to the assessment standard for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2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또는,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organization is compliant to the assessment standard for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7-3 Paragraph 1 of 「Act on Inform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Data Protection, etc.」 and Article 4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Date of Issuance :

Signed by the
President of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또는, certification body

210mm×297mm[백상지(120g/m²)]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서식9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	------	-----	------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재발급 사유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二〇一〇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명) 귀중

제출서류	해당없음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서식10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	------	-----	------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변경 내용	변경전	(국문)
		(영문)
	변경후	(국문)
		(영문)
변경사유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명) 귀중

제출서류	해당없음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1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심사 세부평가기준 (제7조 관련)

(제1쪽)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 기준
I. 정량 평가 (60)	1. 경험 (25)	최근 5년간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	15	계약금액 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억원 이상: 배점의 100% 5억원 미만: 배점의 x% ※ $x = (\text{계약금액총액}/5억원) \times 100$
		최근 2년간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	10	수행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건 이상: 배점의 100% 5건 미만: 배점의 x% ※ $x = (\text{수행건수}/5건) \times 100$
	2. 전문성 (25)	고급수행인력의 수	15	인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원수 × 1점(최대 15점)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교육 인증시험 합격자 수	10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점 ×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인증시험 합격자 수 / 전체 평가기관 인증시험 평균 합격자 수*) ※ 평가기관 인증시험 합격자수 평균
II. 정성 평가 (40)	3. 신뢰도 (10)	신용평가등급	10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평가 등급에 근거하여 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1의 불일기준
	영향평가 수행역량 (40)	영향평가 수행실적의 질적 평가	20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평가 품질제고 활동 영향평가 수행 대상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의 우수성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자질 및 경험	10	비계량	※ 신청서류, 현장실사 등을 통해 평가

(제2쪽)

II. 정성 평가 (40)	영향평 가 수행역 량 (40)	지정신청법인의 자체 개인정보영향평가대책	10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분석의 타당성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적절성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실효성
III. 기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가점	확인 여부	※ 벤처 확인기업: 가점 5점	
	지방소재(수도권제외) 기업	가점	확인 여부	※ 본사 위치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위치하는 경우 : 가점 5점	
최근 3년간 조달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가 제한을 받은 기간					※ 제한월수 1월당: 감점 0.5점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표 각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세부 평가기준 중 신뢰도 항목은 기업신용평가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점기준은 [붙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최근’의 기산일은 지정공고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2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갱신 세부평가기준 (제7조 관련)

(제1쪽)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세부 평가 기준
I. 정량 평가 (60)	1. 경험 (30)	최근 2년간 영향평가 수행실적	10	계약금액 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억원 이상: 배점의 100% • 3억원 미만: 배점의 x% ※ $x = (\text{계약금액총액}/3억원) \times 100$
		최근 2년간 영향평가 수행건수	10	수행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건 이상: 배점의 100% • 5건 미만: 배점의 x% ※ $x = (\text{수행건수}/5건) \times 100$
		최근 2년간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	5	계약금액 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억원 이상: 배점의 100% • 5억원 ~ 2억원: 배점의 x% • 2억원 미만: 자격미달(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 $x = (\text{계약금액총액}/5억원) \times 100$
			5	수행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건 이상: 배점의 100% • 5건 미만: 배점의 x% ※ $x = (\text{수행건수}/5건) \times 100$
		고급수행인력의 수	10	인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명 이상: 배점의 100% • 10명 미만: 배점의 x% ※ $x = (\text{고급인력 총수}/10명) \times 100\%$
	2. 전문성 (20)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교육 인증시험 합격자 수	10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점 ×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인증시험 합격자 수 / 전체 평가기관 인증시험 평균 합격자 수*) ※ 평가기관 인증시험 합격자수 평균
	3. 신뢰도 (10)	신용평가등급	10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 등급에 근거하여 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1의 불임기준
II. 정성 평가 (40)	1. 영향 평가 수행 역량 (40)	영향평가 수행실적의 질적 평가	20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평가 품질제고 활동 • 영향평가 수행 대상기관 • 영향평가 수행방법의 우수성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자질 및 경험(인터뷰)	10	비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류, 현장실사 등을 통해 평가

(제2쪽)

II. 정성 평가 (40)	1.영향 평가 수행 여량 (40)	지정신청법인의 자체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책	10	비례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분석의 타당성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적절성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실효성
III. 기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가점	확인여부	※ 벤처 확인기업: 가점 5점	
	지방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 건수	가점	확인여부	※ 수행 건수 당 : 가점 1점	
	무자격자를 활용한 영향평가 수행 (고시 제5조 위반 건수)	감점	확인여부	※ 수행 건수 당 : 감점 1점	
	최근 3년간 조달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가 제한을 받은 기간	감점	입찰참가 제한월수	※ 제한월수 1월당: 감점 0.5점	
비 고					
<p>1. 위 표 각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p> <p>2. 세부 평가기준 중 신뢰도 항목은 기업신용평가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점기준은 [붙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른다.</p> <p>3. '최근'의 기산일은 지정공고일자를 기준으로 한다.</p>					

[붙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기업신용평가 등급	10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6.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0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3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 (제8조 관련)

항 목	주 요 내 용
I. 영향평가 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구역은 해당 영향평가 수행인력이 아닌 자의 출입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영향평가 분석자료를 처리·전송·저장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위험분석에 따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트북 컴퓨터, 그 밖에 휴대용 정보처리기기에 대한 통제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II. 영향평가 수행인력에 대한 보호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영향평가 수행인력이 관계법령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를 포함한 제반의무를 숙지하고 이의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영향평가 수행인력을 채용할 때의 적격 심사와 퇴직할 때의 퇴직자 관리를 위한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영향평가 수행인력이 평가기관의 보안대책을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및 처리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영향평가 수행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업체 내부 및 외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II.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7. 영향평가 분석자료(부수자료를 포함한다)를 보호하기위하여 법 제12조의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영향평가 수행인력이 아닌 자는 영향평가 분석자료에 접근·열람하거나 편집·반출·폐기하지 못하도록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전송·저장하는 영향평가 분석자료에 대하여 위험분석에 따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서면, 도면, 마이크로필름·전산출력물 등 출력물을 형태의 영향평가 분석자료에 대한 보관·복사·배포·폐기 등에 관한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IV. 일반 관리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영향평가에 관한 평가기관의 기본방침을 대표자가 서면으로 공표하고 영향평가 수행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12. 영향평가업무에 대한 위험분석 및 통제대책의 관리·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4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10조 ~ 제11조 관련)

(제1쪽)

평가 영역	평가 분야	세부 분야
I. 대상 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1.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수행
	2. 개인정보보호 계획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3. 개인정보 침해대응	침해사고 신고 방법 안내
		유출사고 대응
	4. 정보주체권리보장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5.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6.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개인정보파일 등록
	7.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II.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8. 수집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동의 받는 방법의 적절성
	9. 보유	보유기간 산정
	10. 이용·제공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공시 안전성 확보
	11. 위탁	위탁사실 공개
		위탁 계약
		수탁사 관리·감독
	12. 파기	파기 계획 수립
		분리보관 계획 수립
		파기대장 작성

IV. 대상시스 템의 기술적 보호 조치	13. 접근권한 관리	계정 관리
		인증 관리
		권한 관리
	14. 접근통제	접근통제 조치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업무용 모바일기기 보호조치
	15.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시 암호화
		전송시 암호화
	1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 보관
		접속기록 점검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17.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백신 설치 및 운영
		보안업데이트 적용
	18. 물리적 접근방지	출입통제 절차 수립
		반출·입 통제 절차 수립
	19. 개인정보의 파기	안전한 파기
	20.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개발 환경 통제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출력시 보호조치
	21. 개인정보처리구역보호	보호구역지정
V. 특정 IT기술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	22. CCTV	CCTV 설치시 의견수렴
		CCTV 설치 안내
		CCTV 사용 제한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23. RFID	RFID 이용자 안내
		RFID 태그부착 및 제거
	24. 바이오정보	원본정보 보관시 보호조치
	25. 위치정보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안내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서식1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 명세서

(제1쪽)

업체명						
기간						
수행실적 총계						
일련 번호	프로젝트명 (대상기관 (기업)명)	수행기간 (종참여 M/M)	과제책임자	금액 (천원)	참여인력 (개인별 참여율 (M/M), 전문참여분야)	비고 (기반시설 여부, 영향평가 지분 등)
비고						
<p>1.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실적 중 정보보호컨설팅 비율(별도 금액대비 %로 표기), 감리수행실적 중 정보보호컨설팅 비율(별도 금액대비 %로 표기) 등을 말한다.</p> <p>2.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 명세서는 영향평가 관련 분야를 수행하였던 대상기관에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상기관과의 계약서, 사업완료보고서, 납품증명서, 준공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3.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 세부사항은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을 간략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금액규모를 구분하여 영향평가 수행실적, 정보보호컨설팅 수행건수 및 금액(또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실적 중 정보보호컨설팅 건수 및 금액비율, 감리수행실적 중 정보보호컨설팅 건수 및 금액 비율)을 표기한다.</p>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 세부사항						
영향평가 실적 금액규모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건수 (합계)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금액 (합계)	영향평가 수행건수	영향평가 수행금액	영향평가 건수비율	영향평가 금액비율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계/평균비율						

비고

-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실적 중 정보보호컨설팅 비율(별도 금액대비 %로 표기), 감리수행실적 중 정보보호컨설팅 비율(별도 금액대비 %로 표기) 등을 말한다.
-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 명세서는 영향평가 관련 분야를 수행하였던 대상기관에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상기관과의 계약서, 사업완료보고서, 납품증명서, 준공조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 세부사항은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을 간략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금액규모를 구분하여 영향평가 수행실적, 정보보호컨설팅 수행건수 및 금액(또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실적 중 정보보호컨설팅 건수 및 금액비율, 감리수행실적 중 정보보호컨설팅 건수 및 금액 비율)을 표기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서식2

비고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이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 평가결과보고서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서식3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 이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 지정심사에 활용됨

인적 사항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경력 사항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실적 사항	프로젝트명	수행기간	대상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본 증명서의 기재 사항에 일체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허위 사실 기재로 인한 불이익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서식4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

(제1쪽)

법인명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명					
주소					
입사일		인력등재일			
퇴사일		인력삭제일			
인력구분 : 일반 / 고급		등급 취득일 :	등급 변경기록 :		
학력 및 이력 사항	기관명(학교명)	기 간	소 속 부 서 (직위, 직책)	자 격 명 (취득일)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서식5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I. 총매출액 대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매출액의 비율

- (1) 지정신청직전 결산회기의 총매출액: 천원
 (2) 지정신청직전 결산회기의 개인정보영향평가 관련 분야의 매출액: 천원
 (3) 총매출액 대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매출액의 비율: %

II. 부채비율 및 자기자본이익률

- (1)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100 = %
 (2) 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평균자기자본) × 100 = %

III. 기타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여부 (○, ×)
 (2) 조달관계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경험 여부 (○, ×)

비고

1. I 항, II 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지정신청업체 회계담당자가 서명날인한 계산내역을 첨부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매출액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산한 금액으로 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서식6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서식7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							
공공기관 명							
평가 대상 시스템 개요	시스템명				추진 일정		
	추진개요 및 목적						
	추진성격	대상여부			추진예산		
		추진주체					
		추진근거			비고		
주요내용							
개인 정보 파일 개요	개인정보 수집 목적						
	평가대상 파일		파일명	정보주체수	파일 및 범위 설명		
			주요 개인정보 수집 현황		
총 ()개 항목 :							
영향 평가 항목	필수 수집 :						
	선택 수집 :						
(수행안내서 78개 지표 활용 내역 기술)	주요 평가항목 변경 내역		주요내용				
	지표추가 항목		-				
	지표삭제 항목		-				
평가 결과 및 개선 계획	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주 요 내 용	<input type="radio"/>				
			침해요인 도출건수	개선대책 도출건수	개선계획 수립건수	조치완료 건수	조치예정 건수
			건	건	건	건	건
	주요개선 계획 및 일정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평가기관			평가기간			평가예산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서식8

2016 개인정보보호법령 해설서 집필진·자문단

연 구 책 임 자 이창범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

개 인 정 보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보 호 법 학 회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주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외부자문위원단	김진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 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오병철	연세대학교 교수
	정명현	고려대학교 교수
	황창근	홍익대학교 교수
	권건보	아주대학교 교수

2016년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발 행 일 2016년 12월

발 행 처 행정자치부

홈 페 이 지 www.moi.go.kr

제작·편집 한국인터넷진흥원

※본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게시

